

최 종
연구보고서

주요 농자재의 표시실태와 문제, 개선방안

Improvement in Management Institution of Agricultural Input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지역농산업경영경제연구소

농 립 부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주요 농자재의 표시실태와 문제, 개선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6월 24일

주관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총괄연구책임자: 강 창 용

연 구 원: 김 연 중

연 구 원: 한 혜 성

연 구 원: 이 응 연

협동연구기관명: (사)지역농산업경영·경제연구소

협동연구책임자: 강 창 식

연 구 원: 장 동 현

연 구 원: 황 정 욱

연 구 원: 장 수 용

요 약 문

I. 제 목

주요 농자재의 표시실태와 문제, 개선방안

II.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표시의 목적은 상품 정보를 제공하여 ① 수요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를 유인하고, ② 대상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하고, ③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 합의된 요건과 달리 임의적으로 하거나, ③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시장의 교란, 신뢰의 추락, 불안전성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결국 당초 표시제도가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표시가 갖는 위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달리 표현하면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시제도를 잘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현행의 농자재 표시제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농자재 포장에 표시된 내용과 크기 등이 적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표시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관리운영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농자재 사용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표시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농민들은 스스로 표시내용을 확인하는지 등 표시제도의 관리주체와 수요자의 입장에서 표시에 대한 대응태도 등을 살펴서 그들에게 가장 용이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표시제도를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농자재 표시에 대한 연구는 주요 농자재인 농약, 비료, 종자에 대한 현재 표시제도와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농자재의 표시에 관련된 법, 시행령, 규칙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과거에 있던 법이 없어지거나 완화되어 오히려 수요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둘째, 표시제도에 따라 표시를 잘하고 있으나, 직접 사용자인 농민에게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셋째, 농자재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규제가 너무 많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지를 조사 분석했으며, 넷째, 일본의 표시 제도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농자재 표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요자인 농가가 표시의 잘 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농약, 비료, 종자로 한정했으며, 사료와 농기계는 제외하였다. 특히 낙하실험 등 공학적으로 접근해야하는 포장재 재질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농자재 사고발생 원인

농약, 비료, 종자 등 농업용자재로 인한 사고 및 피해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농약의 경우 음독사고, 검증되지 않은 농약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부정확한 표시 내용(정보전달의 미흡)으로 인한 사고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비료의 경우에도 미흡한 표시 내용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농약성분이 섞인 비료의 유통에 따라 농작물의 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수입비료에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등 다양하다.

종자의 경우에도 검증되지 않은 신품종 도입에 따른 피해와 이로 인해 종자업체와 농업인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허위표시나 용량미달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 그리고 버섯종균의 박스단위 품질표시로 인한 종균의 불량 등 사건과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농자재로 인한 피해나 사고가 발생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명확한 원인규명과 피해금액 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체와 농업인간의 분쟁으로 이어졌을 때 결국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아내기란 쉽지 않고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농자재 사고나 피해의 1차적인 예방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자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표시에 대한 내용이다.

2. 농자재 표시관련 법·제도의 운영체계 및 평가

농약관리법에 의하면 농촌진흥청은 농약 제조업, 원제업, 판매업 등의 등록 및 등록 취소를 비롯하여 농약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관할하며, 수출입식물에 관한 방제업의 신고 등은 국립식물검역기관에서 담당한다. 동법에 의하면 각 시·군·구의 장은 영업등록의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적 처분 권한을 갖으며,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에 대한 유통 조사가 농진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이뤄지고 있다. 농약의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따르며 '농약의 포장지 표기 형식에 관한 권장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이 기준의 설정 및 수정은 농약생산업자들의 단체인 '(사)한국작물보호협회'가 맡고 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 '비료공정규격심의위원회'를 두어 비료의 공정규격의 설정·변경 및 폐지와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우량비료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사항들을 관할하고 있다. 비료의 생산업, 수입업 등의 등록 및 신고, 정지 및 폐지 등의 업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담당하며, 농촌진흥청과 함께 품질검사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국립종자관리소에서는 품종보호, 주요농작물의 우량종자 생산·공급 및 종자 유통관리 등 종자에 관한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종자업의 등록 및 취소 등은 시·도지사에게 하는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입개방화 대응 추세에 따라 종자산업법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는 종자업의 등록대상과 자체보증이 확대되고, 종자업 등록기준도 완화되고 있다.

농약 표시에 관한 조사결과, 농민의 반응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인식은 '내용이 어렵다' 50%, '글씨와 바탕색이 구별되지 않는다' 32%,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표시가 되어있다' 14%로 나타났다. 특히 표시내용이 전문용어가 많아 어렵다고 응답했다.

농약 표시의 문제점은 유효성분의 일반명·함유량, 기타성분의 함유량 등 정보의 공개원칙에 의한 유효성분의 표기를 구체화하고, 제품간의 특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상호 보호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에 있어서는 농약이 인체에 치명적이므로 색깔이나 글씨를 현재보다 더 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용방법(혼합가능 여부)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에 있어서는 사용시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시기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에서는 농약명을 농민들이 알기 쉽게 한글명칭으로 되어 있으면 하는 점과 누구나 알기 쉽고 편리하게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 등을 지적하였다. 농약표시에 대한 글씨의 크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설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현재 표기되어 있는 농약의 글씨의 크기가 너무 작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비료 표시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실중량 또는 실용량에 대한 정확한 표시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농작물에 있어서 과비의 원인이 되므로 사용자는 품종과 사용량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바라고 있었다. 둘째, 원료 및 배합비율에 있어서 특히 원료에 있어서 유박 등과 같은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셋째, 보증성분량이다. 이는 비료를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에 대한 성분표시로서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 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분량에 대한 세부적인 공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료의 유효기간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비료의 유효기간에 대한 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종자표시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표시에 대한 글씨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원산지 표시가 없고, 시험결과에 의한 발아율 표시, 권장 사용량, 종자의 유효기간, 지역별, 시기별 재배방법, 소비자 가격 등의 표시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3. 일본의 농자재 표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일본의 농약과 비료에 대한 표시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단 일본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농약 품목등록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10년으로 되어 있어 너무 길다 이는 실제로 병해충의 내성으로 3~5년 이상의 사용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종자부문에서 일본은 '생산지 표시'와 '종묘에 대한 약제 처리 및 종균에서의 유해 균류의 의무표시'이다. 일본 종묘법에서 '생산지'를 품질 표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종자 생산지에 따라 품질 수준의 차이가 날 수 있고, 종자 사고나 종자 품질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품 수거 등 조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지'에 대한 품질표시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4. 농자재 표시제도의 개정 및 신규제도 도입방안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농약, 비료, 종자법에서 삭제되었거나, 완화된 법을 다시 논의를 통

해 필요하다면 강화 내지 부활해야 한다. 그리고 농약에는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이 있는데 권장기준보다는 의무규정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비료와 종자에는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조차 없어 이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농약 표시에는 농민이 이해하기 쉬운 의장표시와 표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표기를 할 때, 농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농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비료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표시하는 보증표시 내용을 농업인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민이 “보증표시”를 보면 그 제품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다 알아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표시사항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표기형식 권장기준 또는 표기형식 의무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농자재에 가격 표시는 농업인에게 물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판매업소간 가격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농업인의 합리적인 제품선택을 도와준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판매가격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농민이 공감하고 있으나 유통업자는 이를 어기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농가판매가격 표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SUMMARY

I . Title

Improvement in the Management Institution of Agricultural Inputs

II . Necessity and Objectives of the Study

The purpose of product labeling i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products to enable consumers to select appropriate products, protect consumers from possible injuries or dangers from the misuse of products, and make the environment for fair competition among business enterprises.

For the theoretical benefits of labeling as described above, labels must have systemic standards. Thu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urrent labeling systems.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label management system for agricultural inputs and analyze the responses from farmers in order to organize labeling standards that can effectively provide needed information to consumers.

III . Results and Suggestions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labeling of primary agricultural inputs, such as agricultural chemicals, fertilizer, and seeds, with an emphasis on the current labeling institution and proposed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abeling systems.

First of all, the legal standard and its enforcement of agricultural input labeling were researched closely. Secondly, the labeling problems and improvements from

the farmers' perspective were approached. Thirdly,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a survey of farmers. Fourthly, this research attempted to evaluate the Japanese standards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abeling systems. Finally, as described above, methods to improve the labeling systems for primary agricultural inputs are proposed. However, fodder and farming equipment we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is research.

Accidents and damages arising from mislabelling of agricultural inputs, such as agricultural chemicals, fertilizer, and seeds, are not only limited to products but they are also extended to farmers as well. Agricultural chemicals cause poisoning by ingestion, diseases from products, and other various accidents due to improper labeling. Fertilizers cause accidents due to the lack of needed information, and labels on imported fertilizers do not contain required information. Seeds can cause damages from false information and from the introduction of new species that were not inspected.

The most problematic aspect of the cases of such damages or accidents is that evaluating the cause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not easy. Therefore, the labeling of proper information is the most effective preventive measure for the accidents and damages caused by mislabeling of agricultural inputs.

According to the agricultural chemicals regulation law,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dministers many tasks, including the registration and cancellation of manufacturers and marketers. Import and export of plants are regulated by the National Plant Quarantine Service. Fertilizers take center stage in the role of the fertilizer processing standards examination committee of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preservation, production, and the supply and distribution of seeds are the tasks performed by the National Seed Management Office.

The survey results were as follows: the contents of labels and advertisements were not easy to recognize (50%), the color of the font and the background color

are not distinguishable (32%), and labels are attached on surfaces not easily noticeable (14%). In particular, the contents are not easy to understand because labels contain a lot of technical terms.

The components of “effectiveness” and “specific characteristics” need to be added to the labels of agricultural chemicals. For fertilizer, product type, amount of use, and usage period are required. Also, labeling of fertilizer has a problem that the “country of origin” for products is mostly absent. The labels for seeds have a too-small font to be easily read; and they usually didn’t have country of origin, usage period, growing method for a given region and time period, and the price.

The institutions of labeling for agricultural chemicals and fertilizer in Korea and Japan are similar. However, the usage period of agricultural chemicals in the case of Japan is limited to 3 years; on the other hand, the usage period in Korea is extended to 10 years.

In the case of seed labels, Korea and Japan differ from each other as there is no “quality label” and information of country of origin in Korean labels.

Therefore, it is imperative, for the improvement of labeling for major agricultural inputs, that the government policy should reflect the demand of farmers and make up the weak points in terms of label accessibility, label contents, and final product sales price.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1. Necessity of the study	1
2. Contents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3
Chapter 2. Technology Development Situations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6
1. Domestic Situations	6
2. Prospects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8
Chapter 3. Research Development contents and Results	9
1.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agricultural chemicals labeling	9
2.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fertilizer labeling	46
3.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seed labeling	65
4. Situation and significance of agricultural input labeling in Japan	82
5. Improvement of labeling for primary agricultural inputs	97
Chapter 4. Goal Attainment and Contributions to Relevant Areas	105
1. Research aim	105
2. Evaluation focus in research	105
3. Attainment of research and evaluation	106
Chapter 5. Application Plan Based on Research Development Results	108
Chapter 6. References	109

목 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분석방법	3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6
제1절 국내 현황	6
제2절 향후 전망	8
제3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9
제1절 농약표시제도와 운영, 문제점	9
제2절 비료표시제도와 운영, 문제점	46
제3절 종자표시제도와 운영, 문제점	65
제4절 일본의 농자재 표시제도와 시사점	82
제5절 주요 농자재 표시제의 개선방안	97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여도	105
제1절 연구목표	105
제2절 연구평가의 착안점	105
제3절 평가의 착안점에 근거한 연구 달성도	106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08
제6장 참 고 문 헌	109

표 목 차

제1장

표 1- 1. 농자재로 인한 피해상담 건수	4
-------------------------------	---

제2장

표 2- 1.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	6
표 2- 2. 종자 보증표	7

제3장

표 3- 1. 농약의 생산량 및 생산액 실태	10
표 3- 2. 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13
표 3- 3. 자체검사필증의 규격	14
표 3- 4. 농약 표시사항	15
표 3- 5. 농약 광고방법과 과대광고 범위	16
표 3- 6. 농약 표시와 광고 별칙규정	17
표 3- 7. 행정처분 세부기준: I. 일반기준	18
표 3- 8. 행정처분 세부기준: II. 개별기준	19
표 3- 9. 농약라벨의 구성과 내용	21
표 3-10. 의장부분의 표시내용과 위치1	23
표 3-11. 의장부분의 표시내용과 위치2	23
표 3-12. 농약 분류에 따른 바탕색	24
표 3-13. 적용병해충 및 사용량 표기 내용	26
표 3-14. 농약 취급 제한 기준	26
표 3-15. 농약 형태별 표시문구	27
표 3-16. 농약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	28
표 3-17. 농약 사용 금지에 대한 표시 문구	29
표 3-18. 농약 사고발생시 조치사항	30
표 3-19. 농약 표시에 대한 기타사항	31

표 3-20.	조사농가 개황	32
표 3-21.	수도작 농가의 병해충 및 방제약제 인식정도	33
표 3-22.	과수농가의 병해충 및 방제약제 인식정도	34
표 3-23.	기타원예특작 농가의 병해충 및 방제약제 인식정도	35
표 3-24.	농약 구입 방법	36
표 3-25.	농약구입 시 표시확인 비율	37
표 3-26.	농약구입 시 표시확인을 않는 이유	38
표 3-27.	표시확인 및 광고에 대한 인식	39
표 3-28.	농약표시에 대한 허위 및 허위광고 시 처벌규정	40
표 3-29.	농약표시에 대한 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감시체제 구축 필요성	41
표 3-30.	약해에 의한 벼 피해	42
표 3-31.	제초제 살포에 의한 고추 피해	42
표 3-32.	선택성 제초제 살포에 의한 보리밭 피해	43
표 3-33.	표시를 위한 글씨의 크기에 대한 인식	44
표 3-34.	표시를 위한 글씨의 크기 조정 방향	45
표 3-35.	연도별 비료수급 현황(실증량)	47
표 3-36.	비료 소비 추이	48
표 3-37.	연도별 수출실적	48
표 3-38.	비료 원자재 수입 현황	49
표 3-39.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	51
표 3-40.	비료 수입업자 보증표	52
표 3-41.	비료 판매업자 보증표 부착 사유	52
표 3-42.	비료 판매업자 보증표	53
표 3-43.	비료 판매·유통 금지 해당 내용	53
표 3-44.	비료 판매 중지·회수·폐기 해당 내용	54
표 3-45.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	55
표 3-46.	영업 전부·일부 정지 요건	55
표 3-47.	위법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56
표 3-48.	벌칙 규정 1	57
표 3-49.	벌칙 규정 2	58

표 3-50.	비료 표시관련 행위와 처분내용(종합)	58
표 3-51.	행정처분기준 I: 비료생산업(시행규칙 제16조제2항관련)	59
표 3-52.	비료 구입방법	60
표 3-53.	비료구입 시 표시확인 비율	61
표 3-54.	비료 구입 시 표시확인을 았는 이유	62
표 3-55.	비료의 표시 확인 및 광고에 대한 인식	63
표 3-56.	채소종자의 생산량	65
표 3-57.	채소종자 수출현황	66
표 3-58.	채소종자의 수입액	66
표 3-59.	종자 종류별 유효기간	71
표 3-60.	종자 보증의 실효조건	71
표 3-61.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72
표 3-62.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74
표 3-63.	종자 구입방법	76
표 3-64.	종묘구입 시 표시확인 비율	77
표 3-65.	종자구입 시 표시확인을 았는 이유	79
표 3-66.	표시확인 및 광고에 대한 인식	79
표 3-67.	표시를 위한 글씨의 크기에 대한 인식	81
표 3-68.	표시를 위한 글씨의 크기 조정 방향	82
표 3-69.	한국과 일본의 농약 관련법의 차이점	90
표 3-70.	한국과 일본의 종자 관련법의 차이점	94

그림 목 차

제1장

그림 1- 1.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5
---------------------------	---

제2장

그림 3- 1. 의장부분과 표기부분의 앞·뒤면 활용	22
그림 3- 2. 농약 분류에 따른 바탕색	25
그림 3- 3. 농약 사용 금지에 대한 표시 그림	29
그림 3- 4. 수도작의 주요 농약	33
그림 3- 5. 과수농가의 주요 농약	34
그림 3- 6. 기타 원예특작 농가의 사용 농약	35
그림 3- 7. 우리나라 종자 표시 내용	75
그림 3- 8. 일본 종자 표시 내용	75
그림 3- 9. 농약 표기의 의장부분 개선(안)	98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적 측면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은 표시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결국 표시란 대상이 되는 물건을 사이에 두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신뢰를 확보해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코 이것을 경시할 수 없다.

일반적인 표시의 목적은 정보의 제공을 통해서, ① 수요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를 유인하고, ② 대상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수요자를 보호하고, ③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등급화 기능, 차별화 기능, 광고와 수요자 교육 기능 등이 다양화 될 수 있다.

표시에는 단순히 대상에 관련된 내용을 선별적으로 요약해서 나타내는 것과 일정한 제도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내용이 있다. 단순히 가격과 중량은 그것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이나 사고 가능성 보다는 소비자의 선택과 타 제품과의 경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표시하는 것에는 인증이나 허가 등의 내용으로 위험성이나 사고의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러한 표시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할 것은 ① 표시를 하지 않거나, ② 합의된 요건과 달리 임의적으로 하거나, ③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검사와 제재규범이다. 특히 인증표시와 관련하여 임의나 허위표시를 할 경우 시장의 교란, 신뢰의 추락, 불안전성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결국 당초 표시제도가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표시가 갖는 위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달리 표현하면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

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시제도를 잘 만들어 운용해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기술적인 면에서 현행의 농자재 표시제도가 어떻게 정립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실적 타당성과 미래 지향적인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경제·산업적 측면

농업용 자재는 농업생산을 위한 기초 투입물이라는 단순한 의미 이상으로 농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적 체화물이며, 궁극적으로 농업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수요자인 농민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자재를 선택, 이용할 수 있을 때에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농자재 품질의 제고, 정확한 농자재에 대한 정보제공, 적절한 선택과 사용, 나아가 농업발전을 위한 농자재 표시 제도를 잘 정립·활용해야한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절한 표시제도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농업발전을 저해하고 농자재시장을 교란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규범 설정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농자재에 대해 적절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와 이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내용을 「농민신문」과 「농어민신문」 등 여러 기사를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하다.

① 상표: 상대적으로 신뢰받는 농협 상표를 도용, 표시하여 그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농협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허위표시까지 하여 농협에서 대처방안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2004. 4. 5.일과 6. 2일자 농민신문 보도).

② 비료: 일본에서 제조한 수입비료에 표시사항이 엉망이고, 사용·보관 주의 사항 등이 잘못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농민 주장), 표시규격조차 지키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많다(2004. 2. 21일자 농민신문 보도).

③농약: 농민들이 그라목손을 마시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정부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 그라목손을 판매,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약병에 음독시 매우 고통스럽다는 문구를 삽입시키고 있다. 고 보도하고 있어 표시를 통한 자살방지에 대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2004. 5. 27일자 농어민신문 보도).

④종자: 종자산업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유통되는 버섯 종균제품에 대한 접종일 표기 의무화가 외면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2004. 6. 3일자 농어민신문 보도). 수입종자의 허위표시가 단속 사각지대에 있고, 수입·유통업체는 일부제품 하자에 발뺌하고 있다. 종자산업법에 규정이 없어 보상이 막막하다는 보도인데, 대부분의 종자 산업을 외국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불안한데, 수입종자 허위표시조차 제대로 단속할 수 없게 돼 있다니 문제이다.

결국 잘못된 표시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농자재에 표시된 표시내용과

크기 등 모두가 적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표시 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관리운영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농자재 사용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표시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농민들은 스스로 표시내용을 확인하는지 등 표시제도의 관리주체 운영관리실태와 수요자의 입장에서 표시에 대한 대응태도 등을 살펴서 그들에게 가장 용이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표시제도를 만들(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생산자들은 표시제도에 대응하여 얼마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표시 제도를 지키고 준수하는지도 파악해야한다.

2. 연구의 목적

농자재에 표시된 표시내용과 크기 등 모두가 적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표시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에서는 관리운영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농자재 사용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표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농민들은 스스로 표시내용을 확인하는지 등 표시제도의 관리주체와 수요자의 입장에서 표시에 대한 대응태도 등을 살펴서 그들에게 가장 용이하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표시제도를 정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분석방법

1. 연구의 범위

농자재 표시에 대한 연구대상은 주요 농자재인 농약, 비료, 종자이며 사료와 농기계는 제외하였다. 분석범위는 현재 표시에 대한 법과 농약의 표시형식 권장기준, 비료 보증표, 종자 보증표에 한정하였다. 특히 낙하실험 등 공학적으로 접근해야하는 포장재 재질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농약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료는 비료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주로 다루었다. 비료는 포장지 권장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과 보증표를 수정·보완하는 것을 이 연구의 범위로 했다. 종자는 사고가 났을 때 전국적으로 또는 모든 작물재배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요한 것이다. 그러나 종자 부문에도 종자산업법, 시행령, 규칙은 있으나, 소비자를 위한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자부분은 포장지 권장 기준 마련이나 종자 보증표를 수정·보완하는 것을 연구범위로 정하였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많이 완화되어 오히려 사고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문을 강화 또는 보완책을 찾으려 하였다.

2. 분석 방법 및 체계도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신문기사,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된 사고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고 내용 중 농자재 표시에 의한 건수 및 그 원인을 파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건수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715건이다. 이 중 피해구제 조치를 취한 건수는 859건으로 피해구제 조치율이 23.1%이다. 기능별로는 제품안전, 표시·광고, 품질, A/S, 계약해제·해지, 부당행위, 거래관행, 제도, 가격·요금 등이 있다. 이중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56.6%로 가장 많고, 표시·광고는 1.8%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표 1-1. 농자재로 인한 피해상담 건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접수건수	660	646	500	588	514	400	407	3,715
피해구제 조치	139	116	114	187	106	99	98	859
구제 조치율	21.1	18.0	22.8	31.8	20.6	24.8	24.1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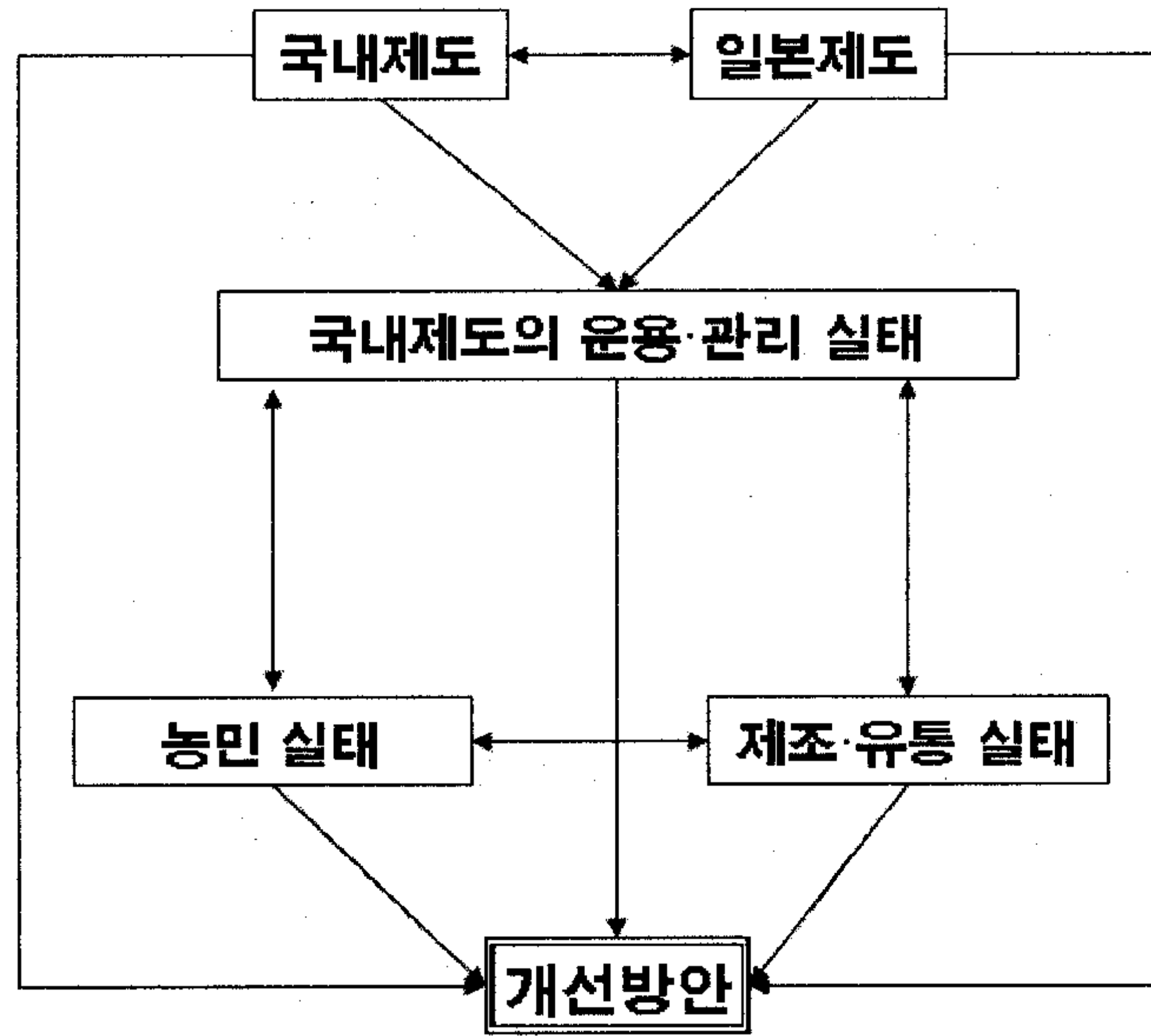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연보 및 피해구제 사례집, 각년도

농자재에 관련된 국내 표시제도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농자재 표시관련 법령으로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시행령”,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시행령”,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종자산업법시행령”, “소비자 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였다.

법의 검토 결과를 가지고 수요자인 농가조사를 실시하여 농자재표시에 대한 농민들의 대응 행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했다.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는 수도작 농가, 과수농가, 원예작물 농가를 대상으로 농자재 표시에 대한 반응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농가조사는 34호에 그쳤으나,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농자재 표시에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농가 호수가 많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측면에서 전문가인 “한국비료공업협회”,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종자협회”의 담당자 조사를 통해 농자재 생산자들의 표시제도에 대한 의견과 이행상황 등을 파악했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농자재 표시규범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림 1-1.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1절 국내 현황

「농약관리법(법률 7459호)」 제20조(농약의 표시)에서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당해 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농약의 명칭·유효성분별 함유량·적용 병해충 명·약효보증기간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규칙 등에서 표시내용을 규제하고 있으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농약의 포장지 표시형식 권장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비료관리법(법률 7000호)」(제14조, 보증표시 및 판매관리)에 의하면 비료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않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교부함으로써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표 2-1.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

<input type="checkbox"/> 보통비료		
생산자 보증표		
<input type="checkbox"/> 부산물 비료		
1. 등록번호		
2. 비료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실용량 표기시는 가비중을 표기하여야함)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부산물 비료·유기질비료 및 제 3종복합비료에 한하며, 제3종복합비료는 유기질 원료명과 그 사용량을 표시함)		
6. 생산연월일		
7.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8.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포장의 여백에 기재할 수 있음)		
생산업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전화번호 (인)

※ 주의사항

1. 표기는 한글로 하되, 계량단위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보증표는 포장 뒤쪽의 면적 5분의 1이상을 차지하도록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합니다.

비료관리법에 근거한 비료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이 없고, 단지 생산자 보증표 만을 <표 2-1>과 같이 간략하게 표시하여 부착하도록 되어있지 표시형식 권장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보증표시는 「종자산업법(법률 7678호)」 제13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 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증종자 표시는 원원종, 원종, 보증종(I), 보증종(II)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하며, 채종단계별 구분을 요하지 아니하는 종자의 보증 표시 예는 <표 2-2>와 같다.

유전자 변형종자의 경우 포장일자 란 아래에 “유전자 변형종자임”이라고 표시하고 바탕색은 흰색으로 글씨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묘목의 경우 보증기관(종자관리사)이 보증하는 규격 묘목이라고 표기하고 바탕색은 청색으로 글씨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해외 수출용 종자는 바탕색은 청색 글씨는 검정색으로 표시해야한다. 이와 같이 종자에 대한 표시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자에 대한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표 2-2. 종자 보증표

보증종자
분류 번호: 종(種) 명: 품 종 명: Lot 번호: 발 아 율(%): 이품종율(%): 유효 기 간: 수 량(g): 포 장 일 자: 년 월 보증기관(종자관리사):

비고: 유전자 변형종자의 경우에는 포장일자란 아래에 「유전자변형종자임」이라고 표시하고, 바탕색은 흰색으로, 글씨는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법률적 검토의 결과에 따르면 표시관련 규범과 내용, 기준, 표시크기 등에 대해 검토해야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수요자가 알 수 있는 규격과 크기의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표시내용의 항목들이 미흡하여 이용 정보 면에서 부족하다. 셋째 어느 경우 표시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임의적인 내용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 넷째 표시 감시와 벌칙규정이 미흡하다는 등, 여러 가지 기준과 내용, 표시방법 등에 대한 법률적인 것과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향후 전망

국제적으로도 농자재의 수출입 물량과 빈도, 종류 면에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 내지는 최대(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제한 규정)의 표시사항과 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요구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지만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요구되고 있는 농자재의 표시규범을 미리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은 우리 산업(농업과 관련 농자재산업)과 농업에 모두 중요한 사안이다.

외국 표시제도 도입은 타당성이 있다. 표시기준과 방법은 기본적으로 언어가 다르고 표시의 내용, 방법, 색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장 국가별로 표시형식 및 내용이 무역장벽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와 유사한 농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표시제도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자재 표시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이나 OECD 규범 등을 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지만 향후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농약표시제도와 운영, 문제점

농약에 관련된 기본법은 “농약관리법”이다. 여기에 농약의 생산과 유통 등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법제화되어 있다. 농약의 표시에 관한 중요한 사항 역시 이 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단지 특별히 농약의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에 의해 (사)한국작물보호협회에 위임된 “농약의 포장지 표기 형식 권장기준”에 정립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농약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포함)과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에 법제화된 농약표시 방법과 내용을 정리한 후, 현장에서의 적용, 유통에서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정리하였다. 실태와 현장에서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인 농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1. 농약 수급 실태 및 문제점

가. 농약의 수급실태

1) 농약 생산·출하실태

농약 생산실태를 보면 2005년도 농약 성분 생산량은 23,969톤으로 2001년의 27,790톤에 비해 연평균 3.6% 감소하였다. 작물별로 보면 수도용 농약은 5,110톤으로 전년도 4,849톤 보다 5.4%, 원예용은 10,838톤으로 전년도 10,738톤 보다 0.9% 증가하였고 제초제도 6,461톤으로 전년도 5,655톤 보다 14.3%가 증가하였으나 기타제는 1,560톤으로 전년도 2,668톤 보다 41.5% 감소하였다.

약제별로는 살균제가 8,210톤으로 전년도 보다 13.7% 증가하였으나 살충제는 7,738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7.5%가 감소하였으며 제형별 생산은 유(액)제가 10,500톤으로 전체의 43.8%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화제가 7,299톤으로 30.5%, 입제가 4,743톤으로 19.8%, 수용제 2.3%, 분제 0.9% 순위로 점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약의 생산량 및 소비량¹이 적어지는 것은 재배면적의 감소와 저농약 또는 무농약 재배로 재배방법이 전화되고 있는 원인이다.

표 3-1. 농약의 생산량 및 생산액 실태(성분량 기준)

단위: 톤, 백만원

용도별/ 약제별	2001		2002		2003		2004		2005	
	성분량	금 액	성분량	금 액	성분량	금 액	성분량	금 액	성분량	금 액
수도용	6,558	270,007	6,048	234,197	4,529	175,662	4,849	194,309	5,110	217,753
살균제	3,308	137,903	3,132	125,633	1,853	76,435	2,022	88,209	2,358	106,258
살충제	3,250	132,104	2,916	108,564	2,676	99,227	2,827	106,100	2,752	111,495
원예용	12,817	518,970	12,025	506,724	11,180	455,233	10,738	453,750	10,838	579,506
살균제	6,420	274,155	5,924	247,590	5,070	240,424	5,198	246,366	5,852	313,568
살충제	6,397	244,815	6,101	259,134	6,110	214,809	5,540	207,384	4,986	265,938
제조제	6,468	255,642	5,729	241,539	5,012	226,673	5,655	258,370	6,461	274,550
답 작	2,474	127,037	2,348	134,551	1,846	119,297	1,933	137,016	2,163	139,144
전작외	3,994	128,605	3,381	106,988	3,166	107,376	3,722	121,354	4,298	135,406
기타제	1,947	36,109	2,702	35,378	2,366	35,545	2,668	27,236	1,560	41,715
총 계	27,790	1,080,728	26,504	1,017,838	23,087	893,113	23,910	933,665	23,969	1,113,524

주: 생산량은 당년 신규 생산량이며, 출하량과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작물보호협회, 2006, 농약연보

농약 출하량은 2005년에 24,506톤으로 2001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은 단가의 상승이 원인이다. 2005년 농약 출하액은 1조 114억원이며, 작물별 시장점유율은 수도작이 20%, 원예용 51%, 제조제 25%, 기타제가 4% 순이다.

2) 농약 수출입 실태

농약 수입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수입액은 4억 5,600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39% 급증하였다. 수입액중 원제가 80%, 완제품 15%, 합성원료 5% 순이다. 수입국은 일본이 28%로 가장 높고, 독일 16%, 중국 14% 미국 12%, 스위스 9% 나머지는 프랑스 등 28개국이다. 농약원제 국내 총수요는 4,409억 원인데 수입원제가 3,802억원으로 수입의존도가 86%를 차지하고 있다.

농약 수출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5년 수출액은 1,923만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7% 급감하였다. 농약원제 수출은 총수출액의 95%, 완제품이 5%이다. 주 수출국은 미국 23%, 베트남 11%, 브라질 10, 대만 10% 순으로 26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1. 생산량은 당년 신규 생산량이며, 출하량은 전년도 이월량이 포함된 것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출하량이 전부 소비량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농약 사용의 문제점

농약 사용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농약사용으로 인한 사고 사례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 원인을 보면 표시제도의 문제, 생산자의 문제, 유통상의 문제, 소비자인 농민의 문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농약사고에서 생산자에 의한 사고는 '유효성분 및 함유량 미기재', '혼용 표시 잘못', '허위 표시', '품질불량', '사용상 주의 사항 미기재'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표시에 의한 사고는 '유효성분 및 함유량 미기재', '혼용 표시 잘못', '허위 표시' 등이 있으나, 법에 근거하여 생산자는 모두 이를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표시를 했을 때 전문용어를 이용하거나, 글씨가 적어 사용자인 농민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많았다.

판매상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는 '미등록 품목 유통', '약효보증기간 경과', '저장·보관', '불합리한 혼용 권장', '잘못된 설명'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불합리한 혼용권장에 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주요인이었다. 따라서 판매상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약에 의한 사고는 주로 소비자인 농민의 잘못이 크다. 농민에 의한 사고는 '사용설명서 미숙지', '불합리한 혼용', '적용 작물 이외의 작물사용', '고농도 살포', '사용적기 미 준수' 등이 있다. 농민에 의한 사고는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고, 고농도 사용, 사용적기 미 준수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고는 표시가 농민이 알기에는 전문용어가 많고, 글씨가 작아 식별하기 어려운데 있었으며, 농약 사용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시를 식별하기 좋게 해야 하며, 사용자인 농민에게 농자재 사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농약 표시와 관리제도

가. 농약관리법

1) 영업의 등록과 취소요건

농약관리법 제3조(영업의 등록 등)에 의하면 농약제조업, 원제2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즉 농약제조업자가 국

2.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함.

내에서 농약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³, 그리고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⁴, 수입업자의 경우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⁵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조업과는 달리 농약을 단순히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즉 농약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등록한 업소라 하더라도 소정의 규범을 어기거나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여러 가지 등록 취소 요건 가운데 농약의 표시에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해 보면,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⁶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제조업, 원제업 또는 수입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농약표시부분 관련 규정⁷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농약의 표시를 허위로 한 경우란 허위광고 등의 금지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이다⁸.

2) 표시와 광고, 유통관리

농약의 표시에 관련된 기본 규정은 농약관리법 제20조(농약의 표시)이다. 여기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당해 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농약의 명칭, 유효성분별 함유량, 적용 병해충명, 약효보증기간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농약을 만드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그리고 판매업자는 농약표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농약의 판매는 물론 보관도 불허하고 있다. 농약의 표시규정의 중요성은 농약으로서 미등록된 농약과 같은 수준에서 취급하고 있다. 표시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표시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상황, 즉 위·변조와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훼손의 경우에도 농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3. 농약관리법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4. 농약관리법 제16조(원제의 등록)

5. 농약관리법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6. 농약관리법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제7호, 제20조(농약의 표시),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7. 농약관리법 제20조(농약의 표시)

8. 농약관리법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표 3-2. 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등록 품목(국내 제조와 수입농약), 2. 제20조 규정에 의한 표시를 아니하거나 표시사항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농약 3. 제20조 규정에 의한 농약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농약 4. 개포장(改包裝) 또는 분포장(分包裝)을 한 농약. 다만,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개포장 또는 분포장을 한 농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자체검사필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것 6.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 |
|---|

자료: 농약관리법 제21조

농약관리법에서는 농약에 대한 허위 광고, 과대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광고가 농약용기에 대한 표시와는 다르지만⁹ 각종 유인물을 통해 활자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표시와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표시와 광고를 함께 검토하였다. 농약관리법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에는 “①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당해 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농약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농약의 광고에 관한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약의 표시와는 약간 다른 인증서의 부착에 관련된 규정도 있다. 농약관리법 제24조(유통농약의 검사 등)에 따르면 농약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당해 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에 대하여 출하 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농약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체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출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출하된 농약에 대한 자체검사 성적서는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¹⁰에서 제시된 자체검사필증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9.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및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상품등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쓰거나 붙인 문자나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하며, “광고”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등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및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신문·방송·잡지 기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관련 별지 제25호 서식, 자체검사필증

표 3-3. 자체검사필증의 규격

○ 규	격: 가로 35mm×세로15mm
○ 상	호: 네 모퉁이에 약자로 표시
○ 회사상표:	중앙에 표시
○ 표시방법:	포장 또는 용기에 첨부하거나 포장 또는 용기에 인쇄하여 표시
○ 기	타: 색채 및 암호는 자체선정

자료: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과 관련, 별지 제25호 서식

3) 권한위임과 기본 표시, 광고사항

농약과 농약관리법의 전반을 관장하는 농촌진흥청장은 권한의 일부를 지자체나 관련기관, 단체에 위임, 위탁하고 있다. 농약관리법에 규정(제31조)된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농촌진흥청장은 농약관리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이다. 다른 하나는 “농촌진흥청장은 농약관리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인 데 이 규정에 근거하여 농약의 표시에 관련된 사항이 관련단체(한국작물보호협회)에 위임되어 있다.

즉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0조,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것을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위탁업무는 “①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에 관련된 표시사항의 색상 및 배열순서 등 표기형식권장기준안의 연구 및 작성, ②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농약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 광고용어 권장안의 작성”이다. 한마디로 표시와 광고에 관련된 주요사항의 결정이 농약관련회사들(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에 일임되어 있다. 따라서 중요한 표시사항에 대해서 수요자인 농민은 배제되어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표시사항의 결정에 대하여 농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농약의 생산과 수입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사항을 위임하지는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표시해야할 사항, 내용을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표시사항을 <표 3-4>와 같이 지정해 놓고 있다¹¹⁾.

11.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농약 및 원제의 표시사항)

표 3-4. 농약 표시사항

1. 품목등록번호
2. 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
3.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
4. 포장단위
5.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토지의 지목이나 해당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6.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7.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
8.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농약별 표시사항
 - 가. 맹독성·고독성·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 나.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 다.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 라.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9. 저장·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 사항
10. 상호 및 소재지(수입농약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한다)
11. 농약제조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12. 약효보증기간

주: 원제의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자료: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농약의 광고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광고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과대광고의 범위이다. 먼저 광고의 방법은 <표 3-5>에 정리되어 있다. 법에 의할 경우 두 가지 항목만이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농약의 명칭”이며 다른 하나는 “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외의 내용은 자율적이다. 나아가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에는 “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광범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도 농약의 표시·광고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을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대광고의 범위는 6가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현실에서 적절하게 적용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실제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고 할 경우 그 오인가능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농약의 오·남용에 대한 오인가능성의 일반

적인 기준은 평균적 일반인이 아닌 일반농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표시·광고에 있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의 표시,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 제조일자·유통기간 등은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은폐·축소하는 행위 등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표 3-5. 농약 광고방법과 과대광고 범위

광고의 방법(관련:법 제22조제2항)	과대광고의 범위(관련:법 제22조제2항)
<p>1. 농약의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그 광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 다만,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의 경우에는 나 목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p> <p>가. 농약의 명칭 나. 안정사용기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p> <p>2. 광고에 농약의 품질·제조방법 또는 약효에 관한 문헌을 이용할 때에는 농업관련 학회나 영 제4조제1항 각호의 1의 기관에서 발행한 문헌을 이용해야한다.</p>	<p>1. 농약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p> <p>2. 농약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p> <p>3. 농촌진흥청, 영 제4조제1항의 시험연구기관 기타 농업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이를 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광고</p> <p>4. 농약에 관하여 구입량 및 구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구입 또는 주문이 쇄도한다는 등의 뜻을 표현하는 광고</p> <p>5. 농약에 관하여 저속한 표현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광고</p> <p>6. 다른 농약을 비방하는 광고</p>

자료: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4) 벌칙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서도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바, 농약관리법상의 벌칙·과태료와 표시·광고법상의 벌칙·과태료는 각각 별도로 행할 수 있으며, 이를 이중적 규제로 보지 않는다. 다만 표시·광고법 및 관련 고시·지침에서는 농약과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정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에 의한 시정조치의 수준 결정시 이를 감안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약관리법상의 표시·광고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사유가 되고(법 제7조 제1항 제5호), 보관·진열·판매의 금지사유(제21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 해당된다.

농약의 표시와 관련된 벌칙규정은 광고를 포함할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농약의 표시규정인 농약관리법 제20조를 위배하거나 제21조의 보관·진열 및 판매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2조)에 처해질 수 있다.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표시규정에 합당하지 못하는 농약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경우를 동일한 위법 사실로 보고 동일한 선상에서 벌칙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별히 제32조의 벌칙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자가 소유·소지하는 농약과 그 정(情)을 알고 제3자가 취득한 농약은 그 전부를 몰수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그 농약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제39조, 몰수).

표 3-6. 농약 표시와 광고 벌칙규정

벌칙내용	해당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의 품목이나 원제의 제조·수입·판매를 업으로 한 자 2. 미등록 농약과 원제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한 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업과 품목)한 자 3. 제20조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4. 제21조(보관·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약을 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자 5. 6. 등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2. 검사나 시료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허위의 자체 검사성적서를 작성한 검사책임자

자료: 농약관리법 제32조, 제33조

농약에 대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3조)에 해당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일반 표시·광고법의 경우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나 시정조치불응의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표시·광고법 제17조).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법인 표시·광고법보다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이 아주 미약한 편이다.

일본의 경우 농약의 표시, 허위선전금지, 회수명령, 권고명령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일본 農藥取締法 제17조).

또한 농약관리법상에는 농약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농약의 허위·

과장 표시·광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5) 행정처분 세부기준

농약관리법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는 행정처분기준이 있다. 농약관리법 제7조 제4항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 법 <제7조,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에 명기되어 있다. 여기에는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이 있다.

일반기준은 행정처분시 모든 해당 사례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적용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여러 가지 위반시 그 가운데 가장 엄한 처분을 받으며,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부정·불량 농약이의 위반정도에 따른 처분의 감경 등이 규정되어 있다.

표 3-7. 행정처분 세부기준: 1. 일반기준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순차적 행정처분은 최근 2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 적용한다.3.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부정·불량농약으로 판명되어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자료: 농약관리법 제7조,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 2(행정처분기준)에서 발췌

개별기준으로 농약의 표시, 과대 혹은 허위광고에 관련된 행정처분의 내용은 <표 3-8>에 정리되어 있다. 무표시, 허위표시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에도 불구하고 1차의 행정처분이 너무 경미하지 않나 여겨진다. 대부분 경고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무표시와 허위표시와 어떤 관계인지 애매하다. 표시를 했는데 일부 내용의 문제인지 아예 표시를 아니한 것인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사실은 허위표시 이상의 제제가 가해져야하는 것으로 본다.

세 번째, 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칙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약하다. 생산과정이든 판매과정 이든 범칙에 대한 행정처분은 같아야하기 때문이다. 1단계 소비자에 접근했다고 그 처분정도를 낮출 이유는 없는 것 같다.

표 3-8. 행정처분 세부기준: II.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적용대상	위반횟수별행정처분기준(벌점)		
			1회	2회	3회
규정에 의한농약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7조 제1항제5호	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	당해품목제조·수입및판매정지6개월	당해품목제조·수입및판매정지1년
규정에 의한농약의 표시를허위로 표시한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당해품목등록취소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각목의 농약을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때	법 제7조 제1항제6호, 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표시를 하지 아니한 농약		판매업자	경고	영업정지1개월	등록취소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위조또는변조하여 허위의 표시를 한 농약		판매업자	등록취소		
규정에 의한 농약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	당해품목제조·수입및판매정지3개월	당해품목제조·수입및판매정지1년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필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	당해품목제조·수입및판매정지3개월	당해품목제조·수입및판매정지1년
규정에 의한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		제조업자 수입업자	당해품목등록취소		
		판매업자	경고	영업정지3월	등록취소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광고를 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광고를 한 때	법 제7조 제1항제7호, 제2항제2호	제조업자 수입업자	경고	당해품목제조·수입및판매정지3개월	당해품목등록취소
		판매업자	경고	영업정지3월	등록취소

자료: 농약관리법 제 7조,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표2(행정처분기준)에서 발췌

네 번째, 판매과정에서 발견된 표시사항의 훼손과 자체검사필증의 미 부착 부분은 그 소재를 따져서 처분의 주체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관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당연히 판매업자에 행정처분을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과연 광고를 표시와 같은 수준에서 그 기능을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광고의 효과가 지대한 현실에서 표시위반보다 더 미약한 행정처분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나.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1) 목적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은 농약관리법 제31조와 이를 구체화한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¹², 시행규칙 제23조¹³에 규정된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농약표시와 광고에 관련된 세세한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 기준의 설정과 수정 등은 농약생산업자들의 단체인 (사)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으로 명명된 이 기준은 1997년 1. 31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2006. 6.7 까지 10차의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포장지 표기구분과 방법

농약 표시사항은 농약 용기 자체에 혹은 별도의 라벨에 인쇄하여 농약용기에 부착하게 된다. 이때 표기문자는 한글(농약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제2조)이어야 한다. 계량단위는 CGS¹⁴ 단위,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수입완제품의 제조회사명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라벨이라 할 경우 두 가지로 분리,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의장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표기부분이다. 의장부분이란 제품의 외형을 장식하는 부분을 가르키며, 표기부분이란 적용대상작물, 적용병해충, 사용적기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한다. 단, 가정원예용 등 소포장농약은 표기구분을 생략할 수 있다(제4조). 두가지 표시부분의 면적비율에는 어떠한 제한이 있지는 않다(제4조 제2항).

의장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의장은 그림으로, 표기는 글자의 개념으로 파악하면 된다. 일반 소비자에게 있어 표기보다는 의장이 우선적으로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의장이 표기보다 더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농약라벨 내에 포함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나타나 있다. 규정된 표시사항들이 의장부분에 포함되는지 표기부분에 포함되는지를 정리한 것이 <표 3-9>이다.

-
12. 농촌진흥청장은 아래의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위탁업무는 “1.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에 관련된 표시사항의 색상 및 배열순서 등 표기형식권장기준안의 연구 및 작성, 2. 법 제 22조 규정에 의한 농약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이다. 한마디로 표시와 광고에 관련된 주요사항의 결정이 농약관련회사들로 구성된 단체에 일임되어 있다.
 13.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농약 원재의 표시사항)
 14. 길이와 질량, 시간을 나타내는 기본단위의 체계로서 길이는 센티미터(Centimeter), 질량은 그램(Gram), 시간은 초(Second)로써 나타낸다. 앞머리 글자만으로 CGS라 표현한다. 1881년 국제 전기학 회의에서 결정하였다.

표 3-9. 농약라벨의 구성과 내용

표시사항(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의장부분	표기부분
1. 품목등록번호	●	
2. 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	●	
3.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		●
4. 포장단위	●	
5.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조제·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의 경우에는 적용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해당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	●
6.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
7.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		●
8.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농약별 표시사항	●	●
가. 맹독성·고독성·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나.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다.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라.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9. 저장·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 사항		●
10. 상호 및 소재지(수입농약의 경우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말한다)		●
11. 농약제조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
12. 약효보증기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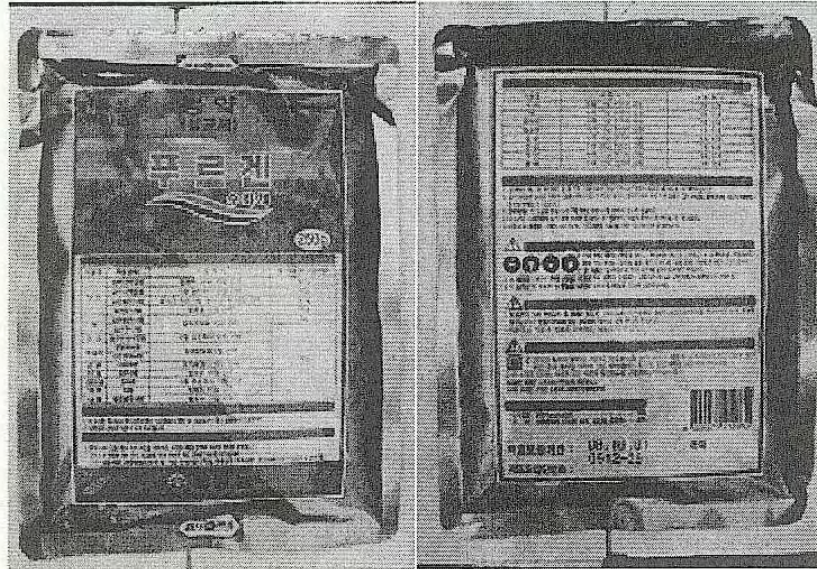
자료: 농약 및 원재의 표시사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의무표시사항 12개 가운데 5개는 의장부분의 내용이며 9개 부분은 표기부분의 내용이다. 농약관리법과 시행규칙에 규정해 놓은 12개 내용 가운데 2개 부분이 서로 겹치고 있다. 물론 규정된 내용은 다르지만 이행해야 할 시행규칙상의 내용으로만 볼 경우 중복된다. 아마도 그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군데에서 취급되는 중복 부분은 “5. 농작물별 적용 병해충 및 사용량”과 8. 독성과 잔류성에 관련된 농약별 표시사항이다

의장과 표기부분이 포함된 라벨은 봉투나 용기의 앞면을 최대한 활용하되 앞면표기가 어려울 경우 뒷면을 이용할 수 있다(제5조). 농약의 표시사항은 용기에 직접 인쇄하거나 라벨에 인쇄하여 용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수입완제품은 외국포장지의 원문이 보이지 않도록 한글라벨을 완전히 덧붙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완제품을 분포장 및 개포장할 때와 원제조국에서 한글라벨을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수입한 때에는 용기에 직접 인쇄하거나 라벨에 인쇄하여 용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제3조).

한편 자체 검사필증은 포장, 용기 또는 라벨의 상단부위에 첨부하거나 인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¹⁵. 다만, 수입완제품의 경우 원제조국에서의 한글라벨에 인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그림 3-1. 의장부분과 표기부분의 앞·뒤면 활용



3) 의장부분의 표시

농약관리법과 시행령에 규제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내에서 규정한 의장표시내용과 방법이 있다(제7조). 우선 모든 농약의 용기에는 중앙 상단에 “농약”이란 용어를 표시해야 한다. 상당히 중요한 의장 표기사항이다. “원예용 살충제”, “논 제초제” 등과 같은 용도의 표시를 해야 한다. 본 규정에 의한 의장부분의 표시사항은 앞에서 정리했듯이 5가지이다.

15. 농약관리법 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필증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별지 25호 서식에 따라 취급한다.

[별표 4] 자체검사필증(제25조제2항관련)

○ 규 격

	← 35 mm →	
↑ 15mm ↓	○	○
	○	
	○	○

○ 상 호 : 네모퉁이에 약자로 표시

○ 회사상표 : 중앙에 표시

○ 표시방법 : 포장 또는 용기에 첨부하거나 포장 또는 용기에 인쇄하여 표시

○ 기 타 : 색채 및 암호는 자체선정

표 3-10. 의장부분의 표시내용과 위치1

표시사항(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표기범위와 위치(기준제7조)
1. 품목등록번호	- 우측상단
2. 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	- 임의배치, 제형표시(상표명이 없는 경우 품목명 사용)
4. 포장단위	- 임의배치
5.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의 경우에는 적용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해당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 주)
8.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농약별 표시사항 가. 맹독성·고독성·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나.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다.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라.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 독성 또는 잔류성은 좌측상단에 표시(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 4등급으로 구분 표시)

주: 5. 8.은 의장부분과 표기부분 공동부분임.

자료: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제7조

표 3-11. 의장부분의 표시내용과 위치2

표기범위와 위치(기준 제7조)에만 제시된 사항
6. “농약”문자 및 농약의 용도구분 표기 : 중앙 상단에 2열 또는 병렬로 표기하되 “농약”문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
7. 그림문자 : 농약의 용도구분 표기의 우측 또는 주의사항 중 해당문구 앞
8. 가정원예용 농약 : 농약의 용도구분 중앙상단
9. 액체농약의 경우 식음료로 오인하기 쉬운 과일, 채소 그림 표시 금지
② 농약의 용도구분 표시는 사용자가 농약의 용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용약제부터 오용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원예용(수도용)살균제(살충제, 살균. 살충제, 생장조정제) 또는 살균제, 살충제, 살균.살충제, 생장조정제
2. 논(밭, 과원, 잔디, 산림)제초제 또는 제초제
3. 비선택성 제초제의 용도구분은 식물전멸제초제로 표시한다.

자료: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제7조

그림문자와 표시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일반 농업생산에 필요한 것과 가정원예용을 구분하도록 하기도 한다. 농약을 음식재료로 오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액체농약의 경우 식음료로 오인하기 쉬운 과일, 채소 그림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분말의 경우에도 희석식음료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분말도 그림문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포장지에는 적색고딕체로 ‘농약’이라 표시하고, 그림으로 의장표시를 했으며 위치는 포장지 양측면에 표시하도록 정리했고, 밀가루 반죽시 변색되도록 청색 또는 적색 색소를 첨가하고 있으나 여기에 색소, 약취제 및 구토제를 추가 사입하여 외관상 밀가루와 확연히 구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액체와 분말에 그치지 않고 향후 모든 농약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농약의 경우 사용자의 특성과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구분이 명확화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의장부분을 표시하는 글자체, 글자크기 및 색깔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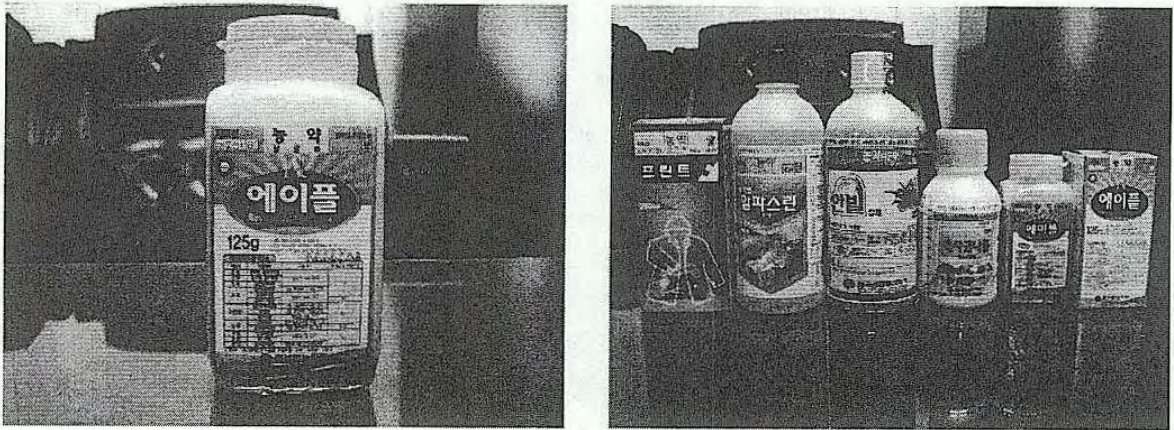
즉, “① 글자의 크기는 전체라벨을 고려하여 가능한 읽기 쉽도록 크게 하여야 하며 글자체는 세고딕체를 원칙으로 하고 작물명 및 적용대상은 중고딕체로 표시하되 주요 적용작물명 및 적용대상은 최대한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단, 상표명은 독성, 어독성, 잔류성 및 농약의 용도구분표시 글자크기의 4배 이내로 하고 “농약”문자는 상표명 글자크기의 1/2(면적대비)이상으로 한다.” 독성표시 시 그 크기를 활자체의 크기보다는 전체 표시면적의 몇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준 제8조 제2항의 내용을 보면, “② 날 포장의 라벨의장부분 중 등록번호, 독성 또는 잔류성 및 용도 구분표기”의 바탕색깔은 <표 3-12>, <그림 3-2>와 같다. 단, “농약”글자색이 바탕색과 잘 구분이 되지 않을 경우 선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표 3-12. 농약 분류에 따른 바탕색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비선택성제초제	생장조정제	기타약제	혼합제 및 동시방제용약제
분홍색	녹색	황색	적색	청색	백색	해당약제 색깔병용
※ 혼합제라 함은 그 유효성분이 2종 이상이고 각각 다른 목적의 약제효과를 갖는 농약을 말하며 동시방제용 약제라 함은 그 유효성분이 1종이나 각각 다른 목적의 약제효과를 갖는 농약을 말한다 ※ 지오릭스분제의 바탕색깔은 적색으로 한다.						

그림 3-2. 농약 분류에 따른 바탕색



이러한 색깔에 의한 표시는 대단히 중요하고 유용하다. 수요자인 농민 조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농민들의 대부분이 제일 먼저 색깔로 살충제인지, 살균제인지, 제초제인지를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인 농민을 위해 색깔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제 8조에는 “③ 바탕색깔은 분홍색, 녹색, 황색 등 농약용도 구분의 색깔을 동시에 배색되지 않도록 한다. ④ 제초제의 병뚜껑 색깔은 황색으로 한다. ⑤ “어독성 I 급”과 “맹독성”, “고독성”은 적색글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등이 규정되어 있다.

4) 표기부분의 표시

표기부분의 경우 전체적으로 내용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기도 하다. 소비자인 농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시·광고법의 중요사항고시처럼 농약에 있어 우선적으로 반드시 표시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을 3-4개로 압축하여 관련 고시·지침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가장 필요한 내용을 정해 이를 표시해야 한다.

사용자인 농민 조사결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는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음은 사용방법, 약효보증기간, 유효성분, 저장 및 보관방법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하나를 표기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미기재에 대한 책임은 생산업체에 있는 것이다.

해당농약의 적용대상 작물, 적용 병해충 및 사용적기 등(제9조)은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서와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그 표시는 <표 3-13>과 같다. 제9조 ②항에서 단, 품목의 특성상 “10a당 사용량”을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품목의 실사용량을 표시할 수 있으며, 수도용 희석제 등과 같이 살포약량을 표시해야 할 경우에는 “10a당 사용량”란을 “약량” 및

“살포량”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제9조 ④항에서 품목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표기할 수 있다.

표 3-13. 적용병해충 및 사용량 표기 내용

작물명	적용병해충 (잡 초)	사용적기	물 20ℓ 당 사용약량	10a(300평)당 사 용 량

자료: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제10조에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제1항을 보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작물명, 사용시기, 사용횟수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동일한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표 3-14>와 같다. 표에서 고독성, 어독성, 수질오염으로 나누고 있고, 고독성은 둘로, 어독성은 어독성 I, 어독성 II로 구분하고 있다. 수질오염성 농약의 경우에 수질오염의 경우 더욱 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모든 수질 보전지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3-14. 농약 취급 제한 기준

구분	표기사항
고독성농약	“이 농약은 고독성농약이므로 사용 및 보관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큰 글자로 표시한다.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은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게 독성별로 다음 사항을 기타설명문 보다 1급 큰 적색 세고딕글자로 표기한다.	
모든농약	이 농약은 의약품, 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분하여 보관하십시오.
고독성농약	이 농약은 고독성농약이므로 적용대상작물 이외에 일체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농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을 받은 농업인 또는 농약 구입시 농약판매업관리인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받은 농업인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독성 I 급	(수도용농약)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원예용농약)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독성 II 급	(수도용농약)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근거리에서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원예용농약) 살포된 농약이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 등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일시에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미꾸리 및 송사리 독성이 강한 농약 II급 문구끝에 네모박스안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미꾸리와 송사리 독성이 강함</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10px;">미꾸리 독성이 강함</div> </div>
수질오염성 농약	이 농약은 수질오염성 농약이므로 논에서는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료: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제10조 제2항

앞에서 검토한 안전한 농약사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과 달리 별도의 안전사용기준이 있다. 얼핏 보면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사용자들이 한번정도는 정독하고 숙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일부의 내용은 앞에서 제시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규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보아도 큰 차이는 없는 내용이다.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제11조(주의사항) 제1항에는 “주의사항은 약효증진 및 약해예방을 위한 주의와 안전사용상의 주의로 나누어 표기하되 다음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먼저 사용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전에 라벨을 잘 읽을 것”

“라벨 표시사항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 것”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말 것”

과 같은 문구를 라벨전면 상단에 잘 보이도록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어느 경우는 글씨 크기와 색깔, 표시 위치가 명확한데 어느 경우는 그렇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음으로 주의사항 끝에 아래 내용을 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큰 적색 세고딕글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제2호). “다만, 생장조정제 및 전착제는 라벨 바탕색깔 또는 상표명(품목명) 색깔로 표기할 수 있다.”

표 3-15. 농약 형태별 표시문구

농약	표시문구
살균제, 살충제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생장조정제, 전착제	적용대상 작물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초제	적용대상 작물과 잡초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식물전멸약	○이 농약은 식물전멸약이므로 약액이 작물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이 농약을 사용한 후에는 방제기구를 반드시 세척하십시오. ○파라코액제는 “이 농약은 극물이므로 절대로 마시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를 기타 설명문보다 1급 큰 적색 세고딕글자로 표시한다.
고독성 농약	○이 농약은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사용할 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제11조 제2항

농약 형태별 표시문구 내용은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 표시면적도 좁고 표시해야 할 내용도 많을 경우 일부 넣지 않을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유의사항 등이 하나라도 빠져있는 경우, 소송제기시 경고·주의사항 미비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표시상의 결함”이라 하여 그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항 다목).

제11조 제1항 제3호에는 “농약용기처리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는 데, 유리병의 경우 “사용한 빈병을 마을 수집장에 모아두면 농협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현금 지급함)”라고, 기타용기의 경우에는 “사용한 포장은 수집하여 안전하게 처리합시다.”라고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농약을 사용하다보면 피부나 눈에 자극을 주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자극성에 관한 주의 규정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제11조 제1항 제4호(자극성에 관한 주의: 피부, 안점막, 피부 및 안점막, 피부감작성)에 있다. 여기에서 자극성 규정은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피부자극성 주의 규정이며, 다음은 안점막자극성 주의, 마지막은 준용규정이다.

주의 사항에 관련된 마지막 조항인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농약용기처리에 관한 주의사항 밑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지도기관에 문의하십시오”라는 문구를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다.







표 3-16. 농약 사용시 주의사항 표시

구분	주의 사항 표시
○ 피부자극성 농약(2003.7.15 : 자원 51144-729))	
① 자극성 강도 품목(피부 1차자극지수(P.II.)가 5.1이상인 경우)	이 농약은 강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불침투성장갑, 고무장화, 불침투성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시되 작업후에는 입안을 물로 행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② 자극성 중도품목(피부 1차자극지수(P.I.)가 2.1~5.0인 경우)	이 농약은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이하 위와 동일
③ 자극성 경도품목(피부 1차자극지수(P.I.)가 1.1~2.0인 경우)	이 농약은 약한 피부자극성이 있으므로 고무장갑,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고 이하 위와 동일
○ 안점막자극성 농약(2003.7.15 : 자원 51144-729))	
① 자극성 강도품목(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60이상인 경우)	이 농약은 강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보안경, 방제복,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바람을 등지고 뿌리시되 작업후에는 입안을 물로 행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② 자극성 중도품목(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30.1~60인 경우)	이 농약은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이하 위와 동일
③ 자극성 경도품목(급성안점막자극지수(A.O.I.)가 10.1~30인 경우)[입제의 경우 제외]	이 농약은 약한 안자극성이 있으므로 이하 위와 동일
○ 이하 준용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이 강한 농약	이 농약은 피부와 눈을 자극 시킬 수 있으므로 방제복, 보안경, 마스크,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바람을 등지고 뿌리시되 작업후에는 입안을 물로 행구고 손, 발, 얼굴 등을 비눗물로 깨끗이 씻으십시오.
피부감작성이 강한 농약	이 농약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하 위와 동일
피부자극성 및 감작성이 강한 농약	이 농약은 피부를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하 위와 동일
안점막자극성 및 피부감작성이 강한 농약	이 농약은 눈을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하 위와 동일
피부 및 안점막자극성, 감작성이 강한 농약	이 농약은 피부와 눈을 자극시킬 수 있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하 위와 동일

자료: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제11조 제4항

위와 같은 문자에 의한 표시사항과는 달리,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그림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제12조(그림문자의 표시 및 표기)의 제1항에는 “꿀벌, 누에, 조류, 물고기 등 환경생물에 독성이 있거나 급성독성, 흡입독성 및 자극성이 높아 취급 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고독성 농약 등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문자 및 해당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한 그림문자 표기대상약제는 다음과 같다. 아울러 아래 대상으로 분류된 품목은 그림문자를 표기하되 그 크기는 7mm×7mm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포장지의 여백이 협소할 경우에는 그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는 보완규정이 있다.

그림 3-3. 농약 사용 금지에 대한 표시 그림

농약	표시 그림(별표1)		
	고독성농약	고독성농약중 액체농약	
고독성농약			
어독성 I 급 농약 및 수도용 농약으로서 어독성 II 급 농약			
꿀벌, 누에, 조류독성이 강한 농약	꿀벌독성농약	누에독성농약	조류독성농약
			
자극성 농약	없음.		

자료: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표 3-17. 농약 사용 금지에 대한 표시 문구

구분	표시문구
고독성농약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표시한다.
어독성 I 급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표시한다.
꿀벌	이 농약은 꿀벌에 피해가 있으므로 꽃이 피어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조류	이 농약은 야생조류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하십시오.
누에	이 농약은 누에에는 (장기간) 독성이 있으니 뽕나무밭 주위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고 약제가 누에나 잠구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극성 농약	제11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표시한다.

자료: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제12조

한편 농약의 취급이나 오용 등에 의한 사고발생시 조치사항도 마련되어 있다. 제13조(해독 및 응급처치 방법)에 따르면 “농약을 잘못 취급하거나 잘못하여 마셨을 경우 해독방법을 표기하되 해독제가 있을 경우에는 *표를 한 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표기해야 할 해독 및 응급처치 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 3-18. 농약 사고발생시 조치사항

구분	표시문구
1. 피부자극성 농약(2003.7.15 : 자원 51144-729))	
① 자극성 강도/중도 품목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을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② 자극성 경도 품목	피부에 묻었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닦아 내십시오.
2. 안점막자극성 농약(2003.7.15 : 자원 51144-729)	
① 자극성 강도/중도 품목	눈에 들어 갔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로 씻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② 자극성 경도 품목(입제의 경우 해당없음)	눈에 들어 갔을 경우에는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 내십시오.

자료: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제13조

모든 농약의 경우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제15조(품목명, 성분 및 함량표시)에 의거 성분은 유효성분의 일반명과 기타성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품목명은 중고딴체로 표시하되 유효성분 상단 ()에 표시하여야 한다. 규정에서 제시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이 내용의 “표시위치는 가능한 한 표기부분 끝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예시】 (품목명 : ○○○ 수화제)

유효성분 : 일반명 40%

기 타 : 유화제, 용제 60%

위와 같은 내용이외에 상호 및 소재지(제16조)¹⁶, 제조 모집단 번호(제17조)¹⁷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농약의 유효기간을 표시해야한다(제18조). 즉, 약효보증기간과 제조(수입) 모집단 번호는 라벨 여백이나 포장지에 탈색되지 않는 잉크로 아래와 같이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약효보증기간은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그 해의 10.31일로 표기하되 완제품 수입의 경우는 제조국 약효보증기간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그해의 10.31까지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해의 10.31까지 유효성분을 보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16. ① 국내제조품목은 제조회사명 및 소재지를 표기한다. ② 수입완제품은 제조회사명 및 소재지란에 수입회사명과 소재지 및 제조국명과 제조회사명을 각각 구분 표기한다. ③ 제조(수입)회사와 판매회사가 다를 경우에는 판매회사명을 표기할 수 있다.

17. 농약제조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된 모집단의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서식의 신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약효보증기간 : 2001년 10월 31일의 표시 → ‘01. 10. 31까지
 다음으로 제조(수입)모집단번호는 제조년도 및 제조월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예시】 0012 ————— 00
 (제조년도+제조월) (모집단번호)

단, “0112”는 2001년의 12월을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는 기타사항의 표시규정이 있다. 당연조항을 기타 표시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통은 중요사항인데 사업자들이 편법을 통하여 이를 빠져나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타”를 정하였으며, 기타라 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표 3-19. 농약 표시에 대한 기타사항

조항	내용
제19조(기타의 표시)	① 식물전멸약은 라벨에 “작물에 근접살포 엄금”이라는 경고문구를 적색으로 망처리 인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 및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농약은 공급기관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위해 적용작물, 병해충, 잡초 또는 사용방법 및 제품의 특징을 알려주는 그림 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④ 농약병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금표시는 직접 병 등에 표시하거나 라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모든 분제농약은 포장대 이면 여백에 “농약”이라고 크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겉포장의 표기)	① 겉포장의 앞.뒷면과 양측면에 별지2와 같이 표기한다. 다만, 약효보증기간은 앞면에 표기하되 규정한 자리에 표기하기 곤란한 때에는 여백에 표기할 수 있다.
	② 중간상자의 앞.뒷면에 별지3과 같이 표기한다.(약효보증기간의 표기방법은 전항과 같다.)
제21조(권한위임)	이 기준과 관련된 주요 고시 또는 행정조치 사항은 금후 기술위원회의 사전 의결없이 협회 자율로 기준개정 시행 후에 사후 보고한다.

자료: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제5장

3. 농약표시에 대한 농민의 대응형태 및 문제점

가. 농약표시에 대한 농민의 대응형태

1) 조사개요

농약표시에 대한 농민의 대응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전북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조사 대상자는 34명이다. 이들 농민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학력은 고졸이 13명(38.2%), 연령은

50~59세가 15명(44.1%),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22명(64.7%)로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평균 영농 규모는 6.2ha이었으며, 수도작이 7.86ha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수(1.81ha), 기타원예특작(1.0ha) 순이었다<표 3-20>.

표 3-20. 조사농가 개황

단위: 명, (%),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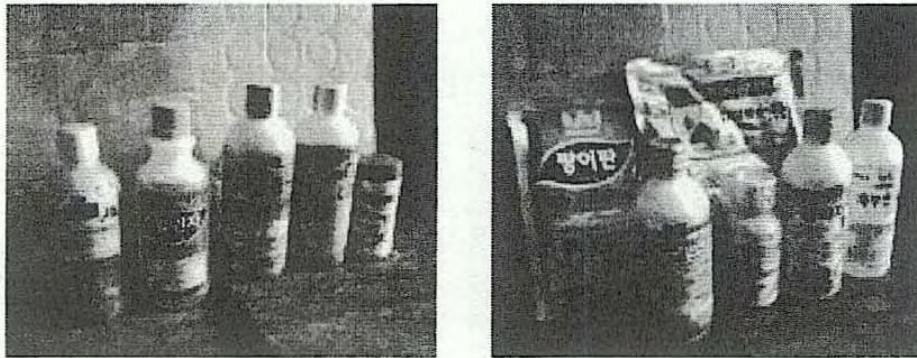
구 분	농가호수	영농규모(ha)				
		수도작	과수	기타 원예특작	평균	
학력	중졸이하	9(26.5)	9.35	1.00	1.10	8.90
	고졸	13(38.2)	6.53	1.42	0.65	5.17
	전문대졸이상	12(35.3)	7.87	2.40	1.00	5.30
	계	34(100.0)	7.86	1.81	0.94	6.20
연령	40세 미만	5(14.7)	10.35	1.50	0.65	9.14
	40~49	8(23.5)	7.84	1.65	1.00	5.44
	50~59	15(44.1)	7.32	1.58	0.67	5.65
	60세 이상	6(17.6)	6.75	2.57	2.30	6.17
	계	34(100.0)	7.86	1.81	0.94	6.20
영농경력	5년미만	1(2.9)	1.00		1.00	2.00
	5~10년	1(2.9)		3.00		3.00
	10~20년	10(29.4)	11.17	1.58	0.65	7.46
	20년 이상	22(64.7)	7.05	1.78	1.08	5.97
	계	34(100.0)	7.86	1.81	0.94	6.20

학력은 고졸, 전문대졸, 중졸의 순이었으며, 영농규모는 수도작과 기타원예특작 농가보다 과수농가의 학력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영농규모는 수도작의 경우 40세 미만이 10.35ha으로 과수나 기타원예특작보다 규모화 되어 있었다. 특히 과수와 기타원예특작은 60세 이상에서 영농규모가 각각 2.57ha, 2.30ha로 많았다. 조사농가의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이 64.7%로 가장 비율이 많았고, 과수농가의 경우 영농경력이 짧은 농가에서 영농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약표시에 대한 인식정도

농약표시에 대한 농민의 인식정도를 알아 보기 위해서 영농형태별로 병충해 및 방제약제를 제시하고 인식정도를 측정하였다. 수도작은 마름병, 도열병 등 41개 병해충명을 제시하였다. 과수는 탄저병, 꽃썩음병 등 39개 병충해를 그리고 기타원예특작은 녹병, 노균병 등 25개 병해충명을 제시하였다. 또한 병해충명과 함께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약을 샘플로 보여주고 농약표시에 있어 인식정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3-4. 수도작의 주요 농약



수도작 농가의 병해충 및 방제약제에 대한 인식정도를 <표 3-21>에서 보면, 농가의 병해충 인식율은 24.8%, 사용하고 있는 방제약제에 대한 인식율은 15.3%로 낮았다.

학력별로 보면, 전문대졸 이상이 26.0%로 평균치보다 높았고, 다음으로 고졸, 중졸이하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병해충에 대한 인식율이 높았으며, 사용 방제약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고학력일수록 인식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병해충 인식은 60세 이상이 37.8%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사용 방제 약제에 대한 인식은 40~49세 연령층에서 높은 인식율을 보였다. 영농경력은 20년 이상에서 병해충 인식율이 높았으며, 사용방제 약제의 인식율은 10~20년의 영농경력을 가진 층에서 18.7%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수도작 농가에서는 병해충에 대한 인식은 고학력 이면서, 영농경력이 많은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가장 높았으며, 방제약제에 대한 인식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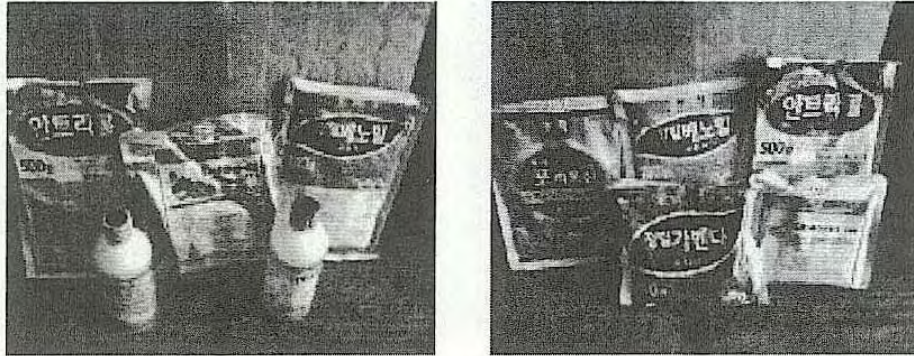
표 3-21. 수도작 농가의 병해충 및 방제약제 인식정도

단위: %

구 분		병해충 인식율	사용 방제약제 인식율
학력	중졸이하	24.1	11.0
	고졸	24.7	16.5
	전문대졸이상	26.0	19.1
	계	24.8	15.3
연령	40세 미만	22.6	15.3
	40~49	21.0	18.5
	50~59	22.5	13.7
	60세 이상	37.8	15.3
	계	24.8	15.3
영농경력	5년미만	22.0	4.9
	5~10년	-	-
	10~20년	23.2	18.7
	20년 이상	25.6	14.6
	계	24.8	15.3

다음은 과수농가의 병해충 및 방제약제의 인식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과수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요 농약을 제시하였다.

그림 3-5. 과수 농가의 주요 농약



과수농가의 병해충 및 방제약제에 대한 인식은 평균적으로 22.9, 11.8%이었다. 학력별로 보면, 병해충 인식은 중졸이하가 44.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고졸, 전문대졸 이상의 순이었다. 반면에 사용하고 있는 방제약제에 대한 인식은 전문대졸이상인 13.35로 높았고, 다음으로 중졸이하, 고졸의 순이었다. 이것으로 볼 때 학력별로는 병해충 인식은 중졸이하, 방제약제 인식은 전문대졸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병해충과 방제약제에 대한 인식은 모두 4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에서 인식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인식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농경력에 있어서는 경력이 높은 농가일수록 병해충 인식 및 방제약제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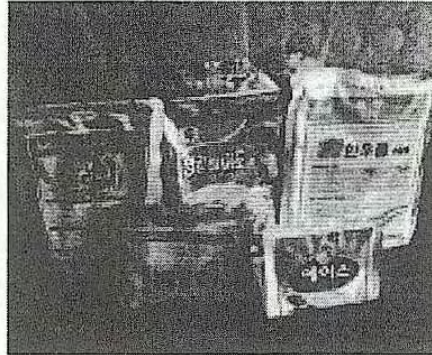
표 3-22. 과수농가의 병해충 및 방제약제 인식정도

단위: %

구 분		병해충 인식율	사용 방제약제 인식율
학력	중졸이하	44.9	12.8
	고졸	23.6	9.8
	전문대졸이상	15.0	13.3
	계	22.9	11.8
연령	40세 미만	34.7	30.8
	40~49	10.3	6.5
	50~59	18.8	8.1
	60세 이상	31.6	10.2
	계	22.9	11.8
영농경력	5년미만	2.6	2.6
	5~10년	-	-
	10~20년	21.2	16.7
	20년 이상	22.9	10.6
	계	22.9	11.8

마지막으로 기타 원예특작농가의 병해충 및 방제약제의 인식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타 원예특작농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요 농약을 제시하였다.

그림 3-6. 기타 원예특작 농가의 사용 농약



기타 원예특작 농가의 병해충 인식은 26.9%, 방제약제에 대한 인식은 24.0%이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병해충에 대한 인식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인 농가에서 병해충 인식율이 76.0%, 방제약제 인식율이 60.0%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영농경력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영농경력이 많은 농가에서 병해충 인식율이 높은 반면에 사용 약제에 대한 인식율은 낮게 인식되었다. 특히 기타 원예특작농가에서 병해충 및 방제약제에 대한 인식정도가 수도작이나 과수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23. 기타원예특작 농가의 병해충 및 방제약제 인식정도 단위: %

구 분		병해충 인식율	사용 방제약제 인식율
학력	중졸이하	29.3	24.0
	고졸	26.0	28.0
	전문대졸이상	24.0	20.0
	계	26.9	24.0
연령	40세 미만	26.0	32.0
	40~49	20.0	12.0
	50~59	13.3	10.7
	60세 이상	76.0	60.0
	계	26.9	24.0
영농경력	5년미만	28.0	28.0
	5~10년	-	-
	10~20년	22.0	24.0
	20년 이상	29.0	23.0
	계	26.9	24.0

3) 농약구입 및 표시확인에 따른 애로사항

농약 구입방법을 보면 대체적으로 '농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후 구입'하는 형태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본인 의견과 농약상과의 협의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가 25.4%이었다. 그리고 '농약상에서 의뢰 추천한 농약구입'이 14.1%이었다. 이것으로 볼 때 농약구입에 있어서 농민의 의사결정이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에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후 구입'하는 경우가 3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본인 의견을 농약상과 협의하여 구입'이 22.2% 순이었다. 이는 고졸,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에 있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농약상에 의한 추천 농약구입' 비율이 높은 반면에, 4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는 이웃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농약구입과 농협·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농약을 구입하는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농경력별로는 5년 미만인 경우는 본인스스로 의사결정한 후 농약을 구입하거나 농약상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농약을 주로 구입하고 있었다. 반면에 10년 이상이 영농경력에서는 농약구입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후 구입'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농업인들은 농약구입 방법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후 구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농약구입에 있어서 농약상에 의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24. 농약 구입 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

구 분		본인스스로 의사결정후 구입	농약상에 의뢰, 추천농약 구입	이웃에 의뢰, 추천농약구 입	본인 의견을 농약상과 협의하여 구입	농협·기술센 터 의뢰 추천농약 구입	합계
학력	중졸이하	6(33.3)	3(16.7)	2(11.1)	4(22.2)	3(16.7)	18(100.0)
	고졸	13(44.8)	4(13.8)	3(10.3)	6(20.7)	3(10.3)	29(100.0)
	전문대졸이상	9(37.5)	3(12.5)	1(4.2)	8(33.3)	3(12.5)	24(100.0)
	계	28(39.4)	10(14.1)	6(8.5)	18(25.4)	9(12.7)	71(100.0)
연령	40세 미만	4(36.4)	2(18.2)	1(9.1)	3(27.3)	1(9.1)	11(100.0)
	40~49	8(42.1)	2(10.5)	2(10.5)	4(21.1)	3(15.8)	19(100.0)
	50~59	11(36.7)	4(13.3)	2(6.7)	9(30.0)	4(13.3)	30(100.0)
	60세 이상	5(45.5)	2(18.2)	1(9.1)	2(18.2)	1(9.1)	11(100.0)
	계	28(39.4)	10(14.1)	6(8.5)	18(25.4)	9(12.7)	71(100.0)
영농 경력	5년미만	1(50.0)	1(50.0)	-	-	-	2(100.0)
	5~10년	-	-	-	1(100.0)	-	1(100.0)
	10~20년	9(45.0)	2(10.0)	1(5.0)	5(25.0)	3(15.0)	20(100.0)
	20년 이상	18(37.5)	7(14.6)	5(10.4)	12(25.0)	6(12.5)	48(100.0)
	계	28(39.4)	10(14.1)	6(8.5)	18(25.4)	9(12.7)	71(100.0)

이러한 농약구입 방법에 따른 농약에 대한 표시확인 비율을 <표 3-25>에서 살펴보았다. 농약에 대한 표시확인의 주요 내용은 품목등록번호, 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 포장단위, 농작물별 적용병해충(제초제·생장조정제나 약효를 증진시키는 자재의 경우에는 적용대상토지의 지목이나 해당 용도를 말한다) 및 사용량,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의 표기사항은 ① 맹독성·고독성·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②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③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④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저장·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상호 및 소재지, 농약제조시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약효보증기간 등이다.

조사결과 농약구입시 표시확인은 '농민 스스로 의사결정후 구입'하는 경우가 26명(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본인 의견과 농약상과의 협의를 통해 구입'이 11명(21.2%)이었다. 반면에 이웃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농약구입이나, 농협·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추천농약의 경우 표시확인 비율은 각 7.75와 9.6%로 낮았다. 이것으로 볼 때 이웃, 농협·기술센터, 농약상 등 농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곳에서 추천한 경우 신뢰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25. 농약구입 시 표시확인(중복응답)

단위: 명, (%)

구 분		본인스스로 의사결정후 구입	농약상에 의뢰, 추천농약 구입	이웃에 의뢰, 추천농약구입	본인 의견을 농약상과 협의하여 구입	농협·기술센 터 의뢰 추천농약 구입	합계
학력	중졸이하	6(42.9)	2(14.3)	1(7.1)	2(14.3)	3(21.4)	14(100.0)
	고졸	11(52.4)	3(14.3)	2(9.5)	4(19.0)	1(4.8)	21(100.0)
	전문대졸이상	9(52.9)	1(5.9)	1(5.9)	5(29.4)	1(5.9)	17(100.0)
	계	26(50.0)	6(11.5)	4(7.7)	11(21.2)	5(9.6)	52(100.0)
연령	40세 미만	4(36.4)	2(18.2)	1(9.1)	3(27.3)	1(9.1)	11(100.0)
	40~49	6(60.0)	-	1(10.0)	2(20.0)	1(10.0)	10(100.0)
	50~59	11(45.8)	3(12.5)	2(8.3)	6(25.0)	2(8.3)	24(100.0)
	60세 이상	5(71.4)	1(14.3)	-	-	1(14.3)	7(100.0)
	계	26(50.0)	6(11.5)	4(7.7)	11(21.2)	5(9.6)	52(100.0)
영농경력	5년미만	1(50.0)	1(50.0)	-	-	-	2(100.0)
	5~10년	-	-	-	1(100.0)	-	1(100.0)
	10~20년	8(53.3)	1(6.7)	1(6.7)	3(20.0)	2(13.3)	15(100.0)
	20년 이상	17(50.0)	4(11.8)	3(8.8)	7(20.6)	3(8.8)	34(100.0)
	계	26(50.0)	6(11.5)	4(7.7)	11(21.2)	5(9.6)	52(100.0)

학력별로는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농협·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농약의 경우 표시확인을 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에 중졸이하에서는 21.4%로 표시확인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학력이 높을수록 이들 기관에서 추천할 경우 대체적으로 농약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후 농약을 구입하는 경우 표시확인이 71.4%로 가장 높았다. 영농경력별로는 영농경력이 짧은 5년 미만에서 농약구입시 표시확인을 확인하는 비율이 높았다.

농약구입시 표시를 주로 확인하는 항목으로 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함유량과 기타성분의 함유량, 농작물별 적용병해충 및 사용량,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 약효보증기간 등이었다.

반면에 품목등록번호, 포장단위,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그 기준이 설정된 농약에 한한다)의 표기사항은 ① 맹독성·고독성·작물잔류성·토양잔류성·수질오염성 및 어독성 농약의 경우에는 그 문자와 경고 또는 주의사항, ② 사람 및 가축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해독방법, ③ 수서생물에 위해한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④ 인화 또는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는 농약의 경우에는 그 요지 및 특별취급방법), 저장·보관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상호 및 소재지, 농약제조사 제품의 균일성이 인정되도록 구성한 모집단의 일련번호 등의 표시에 대한 확인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농약구입 시 표시확인을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글씨가 너무 작아 읽을 수 없음	표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판매상의 권유면 되기 때문에 읽을 필요성 못느낌	기타	계
학력	중졸이하	1(33.3)		2(66.7)		3(100.0)
	고졸	1(20.0)	1(20.0)	1(20.0)	2(40.0)	5(100.0)
	전문대졸이상		1(25.0)	1(25.0)	2(50.0)	4(100.0)
	계	2(16.7)	2(16.7)	4(33.3)	4(33.3)	12(100.0)
연령	40세 미만	1(16.7)	2(33.3)	1(16.7)	2(33.3)	6(100.0)
	40~49					
	50~59			2(50.0)	2(50.0)	4(100.0)
	60세 이상	1(50.0)		1(50.0)		2(100.0)
	계	2(16.7)	2(16.7)	4(33.3)	4(33.3)	12(100.0)
영농경력	5년미만					
	5~10년					
	10~20년	1(25.0)	2(50.0)		1(25.0)	4(100.0)
	20년 이상	1(12.5)		4(50.0)	3(37.5)	8(100.0)
	계	2(16.7)	2(16.7)	4(33.3)	4(33.3)	12(100.0)

농약구입시 표시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전문 판매상의 권유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어서 굳이 표시확인을 읽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33.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글씨가 너무 작아 읽을 수 없거나 표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이었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의 학력에서 주로 전문 판매상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표시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글씨가 작은 것도 주원인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에서는 농약에 표시된 내용들이 일반 농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문구들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영농 경력에 있어서는 10~20년 미만의 경우 표시내용의 어려움을, 20년 이상은 판매상 권유로 읽을 필요성이 없다가 농약구입시 표시확인을 하지 않는 주요한 이유로 파악되었다.

농약구입시 표시확인을 확인하는 농민의 경우 표시확인 및 광고에 대한 인식은 '인식하기 어려운 글씨들이 있다'가 5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의 표시가 있다'가 31.8%,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가 13.6% 순이었다. 특히 인식하기 어려운 글씨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전문 용어들이었다.

표 3-27. 표시확인 및 광고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 분		인식하기 어려운 글씨들이 있다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의 표시가 있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제조일자·유통기한이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기	기타	계
학력	중졸이하	4(57.1)	3(42.9)	-	-		7(100.0)
	고졸	3(42.9)	2(28.6)	1(14.3)	-	1(14.3)	7(100.0)
	전문대졸이상	4(50.0)	2(25.0)	2(25.0)	-		8(100.0)
	계	11(50.0)	7(31.8)	3(13.6)	-	1(4.5)	22(100.0)
연령	40세 미만	3(60.0)	1(20.0)	1(20.0)	-		5(100.0)
	40~49		1(50.0)	1(50.0)	-		2(100.0)
	50~59	6(54.5)	3(27.3)	1(9.1)	-	1(9.1)	11(100.0)
	60세 이상	2(50.0)	2(50.0)				4(100.0)
	계	11(50.0)	7(31.8)	3(13.6)		1(4.5)	22(100.0)
영농경력	5년미만	1(100.0)					1(100.0)
	5~10년	1(100.0)					1(100.0)
	10~20년	2(33.3)	1(16.7)	3(50.0)			6(100.0)
	20년 이상	7(50.0)	6(42.9)			1(7.1)	14(100.0)
	계	11(50.0)	7(31.8)	3(13.6)		1(4.5)	22(100.0)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글씨들이 있다'가 57.1%로 높았고, 다음으로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의 표시가 있다'가 42.9%이었다. 연령별로는 '인식하기 어려운 글씨들이 있다'가 40세 미만에서 높았고,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의 표시가 있다'는 40~49세에서 높았다. 영농경력별로는 대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글씨들이 있다'가 많았지만, 영농경력 10~20년 경력에서는 33.3%로 낮은 반면에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로 인식하는 비율이 50.0%나 되었다.

4) 농약표시에 따른 처벌 및 감시체계

농약관리법에는 농약에 대한 허위 또는 허위광고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3조)에 해당하는 벌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벌칙적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농민의 의견에서는 55.9%가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특히 현재의 벌칙규정이 적당하지 않은 이유로는 농약의 독성 및 오남용으로 인하여 사람 및 농작물에 주는 피해가 너무 크므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3-28. 농약표시에 대한 허위 및 허위광고 시 처벌규정

단위: 명, (%)

구 분		적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당하다	계
학력	중졸이하	2(22.2)	4(44.4)	3(33.3)	9(100.0)
	고졸	6(46.2)	3(23.1)	4(30.8)	13(100.0)
	전문대졸이상	11(91.7)	1(8.3)		12(100.0)
	계	19(55.9)	8(23.5)	7(20.6)	34(100.0)
연령	40세 미만	3(60.0)	1(20.0)	1(20.0)	5(100.0)
	40~49	5(62.5)	2(25.0)	1(12.5)	8(100.0)
	50~59	9(60.0)	4(26.7)	2(13.3)	15(100.0)
	60세 이상	2(33.3)	1(16.7)	3(50.0)	6(100.0)
	계	19(55.9)	8(23.5)	7(20.6)	34(100.0)
영농경력	5년미만	1(100.0)			1(100.0)
	5~10년	1(100.0)			1(100.0)
	10~20년	4(40.0)	3(30.0)	3(30.0)	10(100.0)
	20년 이상	13(59.1)	5(22.7)	4(18.2)	22(100.0)
	계	19(55.9)	8(23.5)	7(20.6)	34(100.0)

학력별로는 고학력일수록 현재의 허위 및 허위광고에 대한 벌칙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은 적당하는 응답이 50.0%인 반면에 60세 미만에서는 벌칙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영농경력별로는 10년 미만에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10년 이상에서는 대체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낮았다.

농약표시에 대한 표시 불이행 및 자체검사필증 미부착의 경우 농민단체나 소비자단체를 통한 감시체계의 구축 필요성은 농약의 독성이나 식품의 안전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79.4%를 보여 향후 농약표시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91.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중졸, 고졸의 학력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49세 87.5%, 60세 이상 83.3% 순이었다. 영농경력별로는 영농경력이 20년 미만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에, 20년 이상에서는 68.2%로 낮은 면을 보였다.

표 3-29. 농약표시에 대한 농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감시체제 구축 필요성

단위: 명, (%)

구 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학력	중졸이하	7(77.8)		2(22.2)	9(100.0)
	고졸	9(69.2)	2(15.4)	2(15.4)	13(100.0)
	전문대졸이상	11(91.7)		1(8.3)	12(100.0)
	계	27(79.4)	2(5.9)	5(14.7)	34(100.0)
연령	40세 미만	5(100.0)			5(100.0)
	40~49	7(87.5)	1(12.5)		8(100.0)
	50~59	10(66.7)	1(6.7)	4(26.7)	15(100.0)
	60세 이상	5(83.3)		1(16.7)	6(100.0)
	계	27(79.4)	2(5.9)	5(8.3)	34(100.0)
영농경력	5년미만	1(100.0)			1(100.0)
	5~10년	1(100.0)			1(100.0)
	10~20년	10(100.0)			10(100.0)
	20년 이상	15(68.2)	2(9.1)	5(22.7)	22(100.0)
	계	27(79.4)	2(5.9)	5(8.3)	34(100.0)

5) 농약사고

조사농민의 농약사고는 총 3건이었다. 이들 농약사고의 유형을 보면, 인적인 사고보다는 물적피해중 작물에 피해를 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농약은 입제와 제초제에 의한 사고였다.

표 3-30. 약해에 의한 벼 피해

구분	내용
사고주체	농업인
사고년도	2003년
사고장소	경작지(논)
사고작물	벼
사용농약	안빌입제
사고내용	농약 사용시기가 불분명하여 살포시기를 놓쳤음.
처리결과	본인 과실 인정
발생손익	5,000~6,000만원

첫째, 벼 경작지에 농약을 살포하여 약해를 받은 경우이다. 이 사고는 2003년도에 농민이 자신의 경작지에 입제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농민은 농약의 사용시기가 불분명하여 살포시기가 지난 후 농약을 살포한 결과 벼가 약해를 받아서 그 해 수확에 영향을 준 경우이다. 당시 농약상과의 과실문제가 있었지만, 농약사용 시기를 놓친 농민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가을 수확기에 5,000~6,0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발행하였다.

두 번째, 농약사고는 제초제 살포에 의해서 타 농민의 경작지에 피해를 준 경우이다. 당시 농민은 자신의 경작지에 제초제를 살포하였는데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제초제에 의한 가스 발생이 생겨 자신의 경작지 주변 고추밭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제초제 살포에 의한 농약피해인지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청의 원인 규명이 있었지만, 제초제 살포로 인한 피해로만 여겨지고 명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추밭 피해 농민에게 고추묘, 비료, 영양제 등을 현금으로 보상하였다.

표 3-31. 제초제 살포에 의한 고추 피해

구분	내용
사고주체	농업인
사고년도	1996년 5월~6월
사고장소	경작지
사고작물	고추
사용농약	제초제 살포
사고내용	이상기온으로 인한 제초제 가스 발생으로 인해 주변 고추밭에 피해 발생
처리결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직원의 답사로 피해를 의심만 할수 있음. 명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함.
발생손익	고추, 비료, 영양제 등 현금으로 보상

세 번째, 농약사고는 선택성 제초제 살포에 의한 보리가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자신의 경작지인 보리밭에 선택성 독새풀을 제초하기 위해서 약을 살포한 결과 독새풀은 제거되지 않고 보리만 약해를 받은 경우다. 이로 인하여 농약판매상과 보리 수확후 수확 감소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고, 추정된 발생 손실은 1,200평당 약 80만원 정도 예상되었다.

표 3-32. 선택성 제초제 살포에 의한 보리밭 피해

구 분	내용
사고주체	농업인
사고년도	2007년
사고장소	경작지(논)
사고작물	보리
사용농약	선택성제초제 살포(매드시)
사고내용	독새풀을 제초하기 위해서 약을 살포한 결과 독새풀은 죽지않고 보리만 약해를 입었음.
처리결과	보리수확후 피해 보상 약속
발생손익	1,200평당 80만원 손해 예상

나. 농약 표시에 대한 문제점

농약의 표시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유효성분의 일반명·함유량, 기타성분의 함유량 및 포장단위,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 사용방법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효성분의 일반명·함유량, 기타성분의 함유량 및 포장단위에 있어서는 정보의 공개 원칙에 의한 유효성분의 표기를 구체화하고, 제품간의 특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상호보호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안전사용기준 및 취급제한기준에 있어서는 농약이 인체에 치명적이므로 색깔이나 글씨를 현재보다 더 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용방법(혼합가능 여부)과 사용에 적합한 시기에 있어서는 사용시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시기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표시를 위한 글씨의 크기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구 분	적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당하다	계	
학력	중졸이하	8(88.9)		1(11.1)	9(100.0)
	고졸	10(76.9)	3(23.1)		13(100.0)
	전문대졸이상	7(58.3)	5(41.7)		12(100.0)
	계	25(73.5)	8(23.5)	1(2.9)	34(100.0)
연령	40세 미만	3(60.0)	2(40.0)		5(100.0)
	40~49	4(50.0)	4(50.0)		8(100.0)
	50~59	13(86.7)	2(13.3)		15(100.0)
	60세 이상	5(83.3)		1(16.7)	6(100.0)
	계	25(73.5)	8(23.5)	1(2.9)	34(100.0)
영농경력	5년미만	1(100.0)			1(100.0)
	5~10년		1(100.0)		1(100.0)
	10~20년	5(50.0)	5(50.0)		10(100.0)
	20년 이상	19(86.4)	2(9.1)	1(4.5)	22(100.0)
	계	25(73.5)	8(23.5)	1(2.9)	34(100.0)

농약의 명칭 및 제제형태에서는 농약명을 농민들이 알기 쉽게 한글 명칭으로 되어 있으면 하는 점과 누구나 알기 쉽고 편리하게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 등을 지적하였다. 농약표시에 대한 글씨의 크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 표기되어 있는 농약의 글씨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농약표시에 있어서 글씨에 대한 크기 인식에 있어서는 현행 농약표시 글씨가 전반적으로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응답자의 73.5%가 글씨의 크기가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적당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은 농민일수록 글씨가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영농경력별로는 20년 이상 된 농민에게 글씨 크기가 적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농약표시의 글씨 크기의 인식은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학력이 대체적으로 낮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농약표시에 있어서 글씨 크기가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향후 개선 방향은 글자 크기를 크게 하는 것과 이와 더불어 농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의 형태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표 3-34>.

학력별로는 고졸에서 글자 크기를 크게 해야 하는 비율이 높았고, 그림과 글자를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졸이하에서 응답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글자크기를

크게 확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과 글자를 함께 변경하는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영농경력에 있어서도 경력이 많을수록 농약표시의 글씨를 그림과 글자를 병행해야 하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표시를 위한 글씨 크기 조정 방향

단위: 명, (%)

구 분		글자크기를 크게 한다	그림으로만 표시	그림과 글자를 함께 변경	글자색을 달리한다	계
학력	중졸이하	5(62.5)		3(37.5)		8(100.0)
	고졸	10(76.9)		3(23.1)		13(100.0)
	전문대졸이상	9(75.0)		3(25.0)		12(100.0)
	계	24(72.7)		9(27.3)		33(100.0)
연령	40세 미만	3(60.0)		2(40.0)		5(100.0)
	40~49	5(62.5)		3(37.5)		8(100.0)
	50~59	11(73.3)		4(26.7)		15(100.0)
	60세 이상	5(100.0)				5(100.0)
	계	24(72.7)		9(27.3)		33(100.0)
영농경력	5년미만	1(100.0)				1(100.0)
	5~10년	1(100.0)				1(100.0)
	10~20년	6(60.0)		4(40.0)		10(100.0)
	20년 이상	16(76.2)		5(23.8)		21(100.0)
	계	24(72.7)		9(27.3)		33(100.0)

4. 농약 생산자의 표시제도에 대한 대응과 문제점

가. 농약 제조업·판매업의 관리체계 강화

농약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자는 우리와 비슷하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판매업자는 도부현 등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보다 완화된 법을 가지고 있다. 즉, 판매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농민의 농약에 대한 사고는 농민 스스로에게 더 많은 원인이 있지만 판매상에 의한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예로 비 적용대상 작물에 사용해서 발생한 경우로 판매업소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용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판매상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시와 광고에 관련된 주요사항의 결정이 농약관련회사들(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에 일임되어 있다. 따라서 중요한 표시사항에 대해서 수요자인 농민은 배제되어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표시사항의 결정에 대하여 농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농약 표시의 세분화 필요

농산물에 대한 사고 발생 원인 규명이 불분명하다. 이로 인해 생산업자도 피해자라고 보고 있다. 피해발생시 원인 규명이 불분명하여 생산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생산자는 표시의무를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농약 표시를 더 세분하여 표시하거나 기준양식을 보다 더 자세히 하여 생산자가 표시의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다. 판매업자는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요구

판매업은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는 시장진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판매업자는 일본과 같이 신고제로 전환되기를 원하고 있다.

제2절 비료표시제도와 운영, 문제점

비료에 관련된 기본법은 “비료관리법”이다. 여기에 비료의 생산과 유통 등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 법제화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비료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포함)의 내용을 정리한 후, 현장에서의 적용, 유통 실태와 문제점들을 정리하였다. 실태와 현장에서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인 농민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1. 비료 수급 및 문제점

가. 비료 수급실태

1) 비료 생산·출하실태

세계적으로 개도국의 비료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감소하는 추세로 비료소비는 정

체상태이다. 우리나라는 WTO 출범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전환으로 비료가격보조 정책이 2005년부터 폐지되고,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친환경농업이 성장하면서 화학비료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친환경비료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산업화·도시화로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있고, 노령화와 농업인구의 감소 및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농업생산의 위축으로 비료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료의 국내 자급은 1970년대에 달성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자급률이 200%를 상회하여 약 190만톤 정도의 수출여력을 가지고 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소비감소와 수출부진으로 비료산업의 가동률은 80%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공급측면에서는 요소 등 단비의 생산능력은 감소하였지만 작물전용 및 저농도 복비의 개발 등으로 복합비료 생산능력은 1980년 이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비료생산 중 복합비료가 70%를 차지하며, 요소 등 질소질 단비가 27%를 차지하고 있다.

ha당 비료소비(성분기준) 추세를 보면 1980년대 후반 이후 450kg 수준을 넘어서 세계에서 비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1990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2005년에는 376kg으로 감소하였다.

표 3-35. 연도별 비료수급 현황(실증량)

단위: 천톤, %

연도	생산능력(A)	생산량(B)	소비량(C)	가동률(B/A)	자급률(B/C)
1965	191	164	1,033	85.9	15.9
1970	1,354	1,321	1,215	97.6	108.7
1975	1,905	2,075	1,941	108.9	106.9
1980	3,341	2,854	1,679	85.4	170.0
1985	3,276	3,000	1,737	91.6	172.7
1990	4,032	3,752	2,365	93.1	158.6
1995	4,688	3,648	2,092	77.8	174.4
2000	4,588	3,729	1,875	81.3	198.9
2005	3,857	3,950	1,877	102.4	210.4

자료: 비료공업협회, 비료연감

표 3-36. 비료 소비 추이

연도	비료소비량 (중량, 천M/T)	성분별 소비량 (M/T)				경지이용면적당 소비량 (kg/ha)
		N	P	K	계	
1970	1,215	356(63)	124(22)	83(15)	563(100)	173
1975	1,941	482(54)	238(27)	166(19)	886(100)	282
1980	1,679	448(54)	196(24)	184(22)	828(100)	301
1985	1,737	428(51)	195(23)	215(26)	838(100)	331
1990	2,365	562(51)	256(23)	285(26)	1,104(100)	458
1995	2,092	472(49)	224(23)	266(28)	962(100)	424
2000	1,875	422(53)	171(21)	207(26)	800(100)	382
2005	1,877	354(49)	162(22)	206(29)	722(100)	376

자료: 한국비료공업협회, 비료연감, 각년도

2) 비료 수출입 동향

비료 수출은 1999년 대북 지원 이후 130~150만톤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 수출물량(대북지원포함)은 1,479천톤으로 금액으로는 292백만불에 달한다.

비종별로 보면 복합비료, 요소, 유안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이다. 국내비료 생산을 위해 필요한 염화加里, 인광석 등의 비료원료는 거의 100% 수입되고 있으며 1989년 비료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요소가 복합비료 원료로서 수입되고 있다. 암모니아를 제외한 비료원료 및 중간재의 수입금액은 2005년 420백만불에 이르고 있다.

표 3-37. 연도별 수출실적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물량(천톤)	1,236	1,127	1,342	1,293	1,348	1,393	1,559	1,479
금액(백만불)	160	153	190	167	183	188	276	292

주: 대북지원 포함.

자료: 한국비료공업협회, 비료연감, 각년도

표 3-38. 비료 원자재 수입 현황

단위 : 천톤, 백만불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수 입	물량	2,261	2,377	2,502	2,609
	금액	181	209	279	420

자료: 한국비료공업협회, 비료연감, 각년도

나. 비료 사용상의 문제점

1) 관련법의 처벌 규정 미흡

비료 부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처벌 규정의 미흡이다. 이는 비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원료 배합 비율의 표시이다. 제품 포장지에 원료명과 함께 투입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원료명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하고, 불량비료의 유통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한다.

포장재 표기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고, 제품 성분분석으로는 원료와 투입비를 알 수 없어서 원료 혼합비를 속이거나 음식물쓰레기, 산업폐기물을 섞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미약하여 유명무실하다. 유기질비료나 3종 복비의 경우 최근 농약적 효과를 선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료관리법에서 금지하고 벌칙에 대한 조항도 있다. 그러나 벌금이 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고 단속될 경우 실제로는 10~2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많다.

2) 법·제도의 미준수(의무 표시사항 및 표시규격 미준수)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일부 수입비료가 유통되고 있다. 사용상 및 보관상 주의사항 표시가 없고, 원료명·배합비율·보증성분량 등이 표기된 보증표도 포장 뒷면에 규격보다 작게 표시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용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입한 농가의 피해가 있다.

의무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일본 다기화학에서 제조한 완효성비료(피복요소 복합비료) <다키고토 802G> 를 효능 좋은 수입비료라고 선전하며 농자재 판매점 등을 통해 농가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상 혹은 보관상 주의사항 표시가 없고, 원료명·배합비율·보증성분량 등을 표기한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도 포장 뒷면에 아주 작게 표시되어 있다.

비료관리법에는 비료 수입업자의 경우 신고번호·비료의 종류 및 명칭·실중량·보증성분량·원료명 및 배합비율·수입연월일·원산지 및 생산자 등을 비롯해 사용·보관상 주의사항을 비료수입업자 보증표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 이 보증표는 포장 뒤쪽의 면적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붙이거나 인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러한 표시사항을 어길 경우 1~3개월 간의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수입비료는 지난해 연말부터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당 수입비료를 구입한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3) 표시내용의 문제(포괄적·형식적인 보증표시의 내용)

비료의 보증표시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제품의 특성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 원자재의 다양화로 투입되는 원료가 제 각각이어서 원료명과 배합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보증 성분량이나 원료명, 배합비율이 원료수급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표시의 내용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료 제품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표시하는 보증표시 내용을 농업인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민이 보증표시를 보면 그 제품의 모든 것을 한눈에 다 알아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며 “표시사항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비료표시와 관리제도

가. 생산과 판매 등록 제도의 변화

비료관리법은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부분 개정되었다. 비료 생산을 업으로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항에 따르면 비료종류별로 등록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료생산업자는 1996년까지는 허가제에서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등록제로 완화되었다.

비료를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 역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제1항). 비료수입은 1996년까지 허가제(추천제¹⁸)이었고, 이후 1999년 7월까지의 등록제 이후 더 완화되어 1999년 7월 이후부터는 신고

19. 추천제란 동종의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한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비료공업협회장의 사전인가를 받은 후 수입이 될

제로 전환되었다. 비료판매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년 7월부터 비료판매 신고제를 폐지하였다.

나. 보증표시 및 판매

비료에 대한 보증표시와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에 정리되어 있다. 법에 의할 경우 비료업자는 두가지 방법에 의해 비료에 대한 보증표시를 할 수 있다.

하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등의 보증표시를 하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유통 또는 공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 성분량 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교부함으로써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위에서 규정한 보증표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보증표시)에 있는 데,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6호 서식<표 3-39>의 비료생산업자보증표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비료수입업자보증표를 붙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다.

표 3-39. 비료 생산업자 보증표

<input type="checkbox"/> 보통비료 <input type="checkbox"/> 부산물 비료	생산자 보증표	
1. 등록번호 2. 비료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실용량 표기시는 가비중을 표기하여야함)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부산물 비료·유기질비료 및 제 3종복합비료에 한하며, 제3종복합비료는 유기질 원료명과 그 사용량을 표시함) 6. 생산연월일 7.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8.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포장의 여백에 기재할 수 있음)		
생산업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전화번호 (인)

※ 주의사항
 1. 표기는 한글로 하되, 계량단위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보증표는 포장 뒤쪽의 면적 5분의 1이상을 차지하도록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합니다.
 27271-02611일 210mm×297mm
 99.5.2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자료: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수 있도록 하던 제도로서 주요 추천 비종은 요소, 염화가리 등 화학비료 위주로 이루어졌다.

표 3-40. 비료 수입업자 보증표

비료수입업자보증표			
1. 신고번호 2. 비료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실용량 표기시는 가비중을 표기하여야함)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부산물 비료·유기질비료 및 제 3종복합비료에 한하며, 제3종복합비료는 유기질원료명과 그 사용량을 표시함) 6. 수입연월일 7. 원산지 및 생산자(예: 미국 00비료회사) 8.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포장의 여백에 기재할 수 있음)			
수입업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전화번호	(인)

※ 주의사항

1. 표기는 한글로 하되, 계량단위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보증표는 포장 뒤쪽의 면적 5분의 1이상을 차지하도록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
- 27271-02711일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99.5.21 개정승인
- 자료: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보증표시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유효기간을 표기하라는 규정이 없다. 미생물제재인 경우 유효기간이 필요한데 이를 표시하라는 내용이 없다. 또한 보증표상에는 수입시 수입연월일이 있고, 국내의 경우는 제조연월일이 있다. 외국에서도 제조업자가 제조시에 생산연월일을 표시하므로 보증표이외의 곳에 생산연월일의 표시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 보증표는 수입업자가 붙이는 것이므로 수입연월일 만 표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비료의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보증표에 미생물 제재인 경우 유통기간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그 성분 및 사용량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보증표시) 제2항에서는 “비료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8호 서식에 (표 3-41, 표 3-42)의 보증표를 붙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3-41. 비료 판매업자 보증표 부착 사유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보증표 부착 사유
1.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을 개폐하거나 변경한 경우 2. 용기 또는 포장에 없는 비료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경우 3. 자기의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는 기간 중 보증표시사항이 멸실되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

표 3-42. 비료 판매업자 보증표

비료판매업자 보증표			
1. 비료종류 및 명칭			
2. 실중량 또는 실용량(실용량 표기시는 가비중을 표기하여야함)			
3. 보증성분량			
4. 원료명 및 배합비율(부산물 비료·유기질비료 및 제 3종복합비료에 한하며, 제3종복합비료는 유기질원료명과 그 사용량을 표시함)			
5. 생산연월일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7.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포장의 여백에 기재할 수 있음)			
판매업자	주소	전화번호	(인)
	성명 또는 명칭		

※ 주의사항

1. 표기는 한글로 하되, 계량단위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보증표는 포장 뒤쪽의 면적 5분의 1이상을 차지하도록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합니다.
27271-02811일 210mm×297mm
99.5.2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자료: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위와 같이 비료용기에 직접 보증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별도로 보증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즉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보증표시에 갈음할 수 있다.

보증표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은 비료의 과다시비를 억제하기 위해 적용 품목별 권장사용량 표기가 있어야 한다. 일반비료 및 부산물 비료 모두 유효기간 표시, 비료사용상 의문점 및 사용후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번호 기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한편 보증표시에서 일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규제를 받게 된다. 비료관리법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제2항에 따르면, 비료업자는 아래의 규제내용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표 3-43>.

표 3-43. 비료 판매·유통 금지 해당 내용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 금지 해당내용(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②)
1.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비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
7. 생략

여기에서 비료의 표시에 의한 비료판매·유통 금지에 관련된 내용은 세가지가 있다. 첫째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둘째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 그리고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이다.

다. 판매중지, 등록취소

비료관리법에는 보증표시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 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 (표 3-44)와 같은 처벌규정이 있다(제19조(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먼저 시도지사가 해당비료에 대해 판매중지·회수·폐기·양도금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이 가운데 표시에 관련한 사항은 한가지, 보증표시에 표시한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10%이상 미달되는 비료)인 경우 하나 뿐이다.

여기에서 10%미달의 경우에는 과장에 해당한다. 허위는 표시·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이며, 과장은 표시·광고상의 주장이 특정사실이나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머지 보증표시에 내용과 다를 경우 처벌규정은 없지만, 만약 표시내용과 다르다면 판매중지, 등록취소 등이 적용되므로, 처벌규정은 존재하는 것과 같다.

표 3-44. 비료 판매 중지·회수·폐기 해당 내용

판매중지·회수·폐기 등 해당내용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공정규격 대비 1%이상초과비료: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1호)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제1항(보증표시)에 의한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10%이상 미달되는 비료: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제2호)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료

해당비료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와 달리 비료생산업자에 대한 규제내용도 있다(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국내 비료생산업자 혹은 수입업자가 비료관리법에 규정한 일정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의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도지사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요건은 (표 3-45)과 같다. 비료관리법 제

가 제20조 제1항 제7호·제8호¹⁹ 또는 제2항 제6호²⁰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²¹. 문제는 생산업자와 수입업자간 과징금 처분의 형평성에서 수입업자 7호에 규제가 없다. 이는 법 제20조 제1항 제7호는 생산업자만을 위한 부분이며, 수입업자에게는 적용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표 3-47. 위법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보증 성분량에 미달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유통 또는 공급한때	법제20조제1항 제7호	400	800	1,200
2.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때	법제20조제1항 제8호및동조제 2항제6호	500	1,000	1,500
3.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때	“	400	800	1,200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때	“	1,000	1,500	2,000
5.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때	“	400	800	1,200
6. 법 제1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때	“	500	1,000	1,500
7. 법 제1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때	“	500	1,000	1,500

자료: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3

20. 표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7.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제1항(보증표시)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보증 성분량에 미달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때, 8.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제2항(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 금지조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1.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제2항의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금지 해당내용은, 1.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 3.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비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 7. 생략
22. 이 경우 과징금부과는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수급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데(제21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에 규정된 과징금의 금액기준은 (표 3-47)과 같다. 과징금의 부과과정에서 시·도지사는 영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과징금이 미약한 편이다.

마. 벌칙(벌금)

비료관리법 제27조와 제28조에는 벌칙규정이 있다. 먼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는 범법행위는 (표 3-48)과 같다(제27조).

표 3-48. 벌칙 규정 1

<p>1. 제4조(공정규격 설정 등)제5항(공정규격 위반)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3. 제11조(비료생산업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p> <p>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비료생산업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제1항(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p> <p>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자</p> <p>6. 제14조제2항제3호(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자</p> <p>8.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주)</p> <p>9.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p> <p>10.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p> <p>주: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의한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료</p>
--

표시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5.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자”와 “8.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이다. 그런데 19조의 규정내 표시관련 내용은 “3. 제14조제1항에 의한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 데(제28조), 그 행위는 아래와 <표 3-49>과 같다. 그 내용은 대부분 표시에 관련된 행위이다. 먼저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식별이 곤란)와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오해발생가능)가 여기에 해당한다,

표 3-49. 벌칙 규정 2

1.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주)

주: 제14조(보증표시 및 판매관리) ②항, 1.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2.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 4.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

일본의 경우 양도등의 제한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보증표에 허위를 기재한 자, 보증표를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일본 肥料取締法 제36조), 허위선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동법 제37조), 보증표관련 규정위반한 자, 보증표에 법정 사항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동법 제38조).

바. 행정처분기준과 종합

앞에서 살펴본 영업정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제시되어 있다. 즉 비료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취소 혹은 영업정지의 요건 가운데, 영업정지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은 (표 3-50, 표 3-51)과 같다.

표 3-50. 비료 표시관련 행위와 처분내용(종합)

해당행위	처분내용							
	공급판매 중지	회수·폐기 등	등록취소 혹은 3월 이내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징금(만원)			벌금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2월	영업 정지 3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		공급판매 중지위반	500	1,000	1,500		○
보증표 교부안한 경우								○
보증표시허위로한경우							○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	○		공급판매 중지위반	400	800	1,200		○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		공급판매 중지위반	400	800	1,200		○
보증성분량과 실제의 차이(10%이상 미달)		○	공급판매 중지위반	400	800	1,200	○	

주1)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주2)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내용은 별도임.

표 3-51. 행정처분기준 1: 비료생산업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보증 성분량 (중량및공정규격에 정하여진 기타규격을 포함)에 미달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유통 또는 공급한때	법제20조제1항제7호			
(1)1%~10%미만		경고	당해명칭의비료영업정지1달	당해명칭의비료영업정지2달
(2)10%~30%미만		당해명칭의비료영업정지1달, 당해제품회수	당해명칭의비료영업정지2달, 당해제품회수	당해명칭의비료영업정지3달, 당해제품회수
(3)30%이상		당해명칭의비료영업정지3달, 당해제품회수	등록취소, 당해제품회수	
법 제14조제2항규정에 위반한때	법제20조제1항제8호			
(1)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때		당해명칭의비료영업정지1달	당해명칭의비료영업정지3달	등록취소
(2)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때		경고	당해명칭의비료영업정지1달	당해명칭의비료영업정지3달
(3)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때		경고	영업정지1달	영업정지3달
(4)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생산하여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때		영업정지3달, 당해제품회수, 폐기	등록취소, 당해제품회수, 폐기	
(5)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때		영업정지1달, 당해제품회수	영업정지2달, 당해제품회수	영업정지3달, 당해제품회수

주: 비료수입업의 경우에도 비료생산업과 동일기준 적용함.
 자료: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 관련 별표2.

3. 비료 표시에 대한 농민의 대응형태 및 문제점

가. 비료표시에 대한 농민의 대응형태

1) 비료 구입방법

농민의 비료 구입방법은 전반적으로 농민 자신이 의사결정을 통해 구입하고 있었다. 조사결과를 <표 3-52>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 후 구입한다'가 29명(55.8%)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본인 의견을 비료상과 협의하여 구입'하는 경우는 8명(15.4%), '비료상에 의뢰하여 추천 받은 비료를 구입한다'가 6명(11.5%)이었다. 이로 볼 때 농민의 비료 구입방법은 주로 본인 스스로와 비료상과의 협의, 이웃 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2. 비료 구입방법(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 후 구입	비료상에 의뢰, 추천비료 구입	이웃에 의뢰, 추천비료 구입	본인 의견을 비료상과 협의하여 구입	농협·기술센터 의뢰 추천비료 구입	합계
학력	중졸이하	7(53.8)	2(15.4)	1(7.7)	2(15.4)	1(7.7)	13(100.0)
	고졸	12(63.2)	2(10.5)	2(10.5)	3(15.8)	-	19(100.0)
	전문대졸이상	10(50.0)	2(10.0)	2(10.0)	3(15.0)	3(15.0)	20(100.0)
	계	29(55.8)	6(11.5)	5(9.6)	8(15.4)	4(7.7)	52(100.0)
연령	40세 미만	5(50.0)	1(10.0)	1(10.0)	3(30.0)	-	10(100.0)
	40~49	7(50.0)	1(7.1)	-	3(21.4)	3(21.4)	14(100.0)
	50~59	11(50.0)	4(18.2)	4(18.2)	2(9.1)	1(4.5)	22(100.0)
	60세 이상	6(100.0)					6(100.0)
	계	29(55.8)	6(11.5)	5(9.6)	8(15.4)	4(7.7)	52(100.0)
영농경력	5년미만	1(50.0)			1(50.0)		2(100.0)
	5~10년			1(100.0)			1(100.0)
	10~20년	9(50.0)	2(11.1)	1(5.6)	3(16.7)	3(16.7)	18(100.0)
	20년 이상	19(61.3)	4(12.9)	3(9.7)	4(12.9)	1(3.2)	31(100.0)
	계	29(55.8)	6(11.5)	5(9.6)	8(15.4)	4(7.7)	52(100.0)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에서 대체적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후 구입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본인 의견을 비료상과 협의하여 구입한다' 순이었다. 특히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농협·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비료를 구입'하는 비율이 중졸이하와 고졸 학력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체적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후 구입'하는 경우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40세 미만에서는 '비료상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비료구입'을, 40~49세는 '본인 의견을 비료상과 협의하여 구입'과 '농협·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비료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전적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경력별로는 대체적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후 구입'하고 있었지만, 영농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후 구입한다'는 비율이 61.3%로 가장 높았다.

2) 비료 표시에 대한 반응

비료를 구입할 경우 비료의 표시확인을 <표 3-53>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다음으로 본인 의견을 비료상과 협의하여 구입하는 순이었다. 반면에 농협·기술센터에서 추천한 비료의 경우 표시확인을 하는 비율이 낮았다.

학력별로는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후 구입하는 경우 표시확인은 고졸, 전문대졸이상, 중졸이하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중졸이하에서는 비료상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비료에 대한 표시확인 비율이 고졸이나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층에 비해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는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후 구입한 경우 표시확인을 꼭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경력별로는 10~20년의 경우 '이웃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비료를 구입'하는 경우와 '비료상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비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표시확인을 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들이 주로 확인하는 비료 표시확인은 비료의 종류 및 명칭, 실중량 또는 실용량, 보증성분량, 그리고 원료명 및 배합비료, 생산연월일이었다. 그리고 주로 확인하지 않는 표시로는 등록번호,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 생산업자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등)이었다.

표 3-53. 비료구입 시 표시확인(중복응답)

단위: 명, (%)

구 분		본인스스로 의사결정후 구입	비료상에 의뢰, 추천비료 구입	이웃에 의뢰, 추천비료구 입	본인 의견을 비료상과 협의하여 구입	농협·기술 센터 의뢰 추천비료 구입	합계
학력	중졸이하	4(40.0)	2(20.0)	1(10.0)	2(20.0)	1(10.0)	10(100.0)
	고졸	9(64.3)	1(7.1)	2(14.3)	2(14.3)	-	14(100.0)
	전문대졸이상	10(55.6)	1(5.6)	2(11.1)	3(16.7)	2(11.1)	18(100.0)
	계	23(54.8)	4(9.5)	5(11.9)	7(16.7)	3(7.1)	42(100.0)
연령	40세 미만	4(50.0)	1(12.5)	1(12.5)	2(25.0)	-	8(100.0)
	40~49	6(54.5)	-	-	3(27.3)	2(18.2)	11(100.0)
	50~59	8(44.4)	3(16.7)	4(22.2)	2(11.1)	1(5.6)	18(100.0)
	60세 이상	5(100.0)	-	-	-	-	5(100.0)
	계	23(54.8)	4(9.5)	5(11.9)	7(16.7)	3(7.1)	42(100.0)
영농 경력	5년미만	1(50.0)	-	-	1(50.0)	-	2(100.0)
	5~10년	-	-	1(100.0)	-	-	1(100.0)
	10~20년	8(57.1)	1(7.1)	1(7.1)	2(14.3)	2(14.3)	14(100.0)
	20년 이상	14(56.0)	3(12.0)	3(12.0)	4(16.0)	1(4.0)	25(100.0)
	계	23(54.8)	4(9.5)	5(11.9)	7(16.7)	3(7.1)	42(100.0)

한편, 비료 구입시 표시확인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료 전문 판매상의 권유인 경우 비료에 대한 보증을 일반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농민 자신이 굳이 표시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비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표시한 내용에 있어서 글씨가 작기 때문에 굳이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고졸과 전문대졸 이상에서 '판매상의 권유면 되기 때문에 읽을 필요성을 못느낀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특히 고졸에서는 '글씨가 너무 작아 읽을 수 없다'라는 응답도 20.0%나 되었다.

연령별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판매상의 권유에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60세 이상의 경우는 고령화로 인하여 '글씨가 너무 작아 읽을 수 없다'라는 응답이 50.0%나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영농경력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4. 비료 구입 시 표시확인을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글씨가 너무 작아 읽을 수 없음	표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판매상의 권유면 되기 때문에 읽을 필요성 못느낌	기타	계
학력	중졸이하	-		3(100.0)	-	3(100.0)
	고졸	1(20.0)		2(40.0)	2(40.0)	5(100.0)
	전문대졸이상			1(100.0)	-	1(100.0)
	계	1(11.1)		6(66.7)	2(22.2)	9(100.0)
연령	40세 미만			1(100.0)	-	1(100.0)
	40~49			1(50.0)	1(50.0)	2(100.0)
	50~59			3(75.0)	1(25.0)	4(100.0)
	60세 이상	1(50.0)		1(50.0)	-	2(100.0)
	계	1(11.1)		6(66.7)	2(22.2)	9(100.0)
영농경력	5년미만					
	5~10년					
	10~20년			2(100.0)		2(100.0)
	20년 이상	1(14.3)		4(57.1)	2(28.6)	7(100.0)
	계	1(11.1)		6(66.7)	2(22.2)	9(100.0)

비료의 표시 확인 및 광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비료표시가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가 57.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글씨들이 있다'가 25.0%,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의 표시가 있다'가 14.3%, '제조일자·유통기간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가 3.6%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전체적으로 비료표시가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고졸에서는 '인식하기 어려운 글씨들이 있다'가 40.0%,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의 표시

가 있다'가 33.3%이었다.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40세 미만을 제외한 기타 연령층에서 표시사항에 대해서 인식하기 어려운 글씨들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영농경력별로는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표시되어 있는 점과 인식하기 어려운 글씨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표 3-55. 비료의 표시 확인 및 광고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 분		인식하기 어려운 글씨들이 있다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의 표시가 있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제조일자·유통기한이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기	계
학력	중졸이하	1(16.7)	-	5(83.3)	-	6(100.0)
	고졸	4(40.0)	-	6(60.0)	-	10(100.0)
	전문대졸이상	2(16.7)	4(33.3)	5(41.7)	1(8.3)	12(100.0)
	계	7(25.0)	4(14.3)	16(57.1)	1(3.6)	28(100.0)
연령	40세 미만	-	2(50.0)	1(25.0)	1(25.0)	4(100.0)
	40~49	2(28.6)	-	5(71.4)	-	7(100.0)
	50~59	4(33.3)	2(16.7)	6(50.0)	-	12(100.0)
	60세 이상	1(20.0)	-	4(80.0)	-	5(100.0)
	계	7(25.0)	4(14.3)	16(57.1)	1(3.6)	28(100.0)
영농경력	5년미만	-	-	-	1(100.0)	1(100.0)
	5~10년	-	-	1(100.0)	-	1(100.0)
	10~20년	3(33.3)	2(22.2)	4(44.5)	-	9(100.0)
	20년 이상	4(23.5)	2(11.8)	11(64.7)	-	17(100.0)
	계	7(25.0)	4(14.3)	16(57.1)	1(3.6)	28(100.0)

나. 비료 표시에 대한 문제점

농민들이 인식하는 비료표시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 보기 위해서 비료표시에 대한 9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사항으로는 ①등록번호, ②비료의 종류 및 명칭, ③ 실중량 또는 실용량(실용량 포기시는 가비중을 표기하여야 함), ④보증성분량, ⑤원료명 및 배합비율(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및 제3종복합비료에 한하며, 제3종복합비료는 유기질원료명과 그 사용량을 표시함), ⑥생산연월일, ⑦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⑧사용상·보관상의 주의사항(포장의 여백에 기재할 수 있음), ⑨생산업자인적사항(주소, 성명, 연락처 등)등 이었다.

농민들은 현행 비료 표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중량 또는 실용량에 대한 정확한 표시를 원하고 있었다. 이는 농작물에 있어서 과비의 원인이 되므로 품종과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둘째, 원료 및 배합비율에 있어서 특히 원료에 있어서 유박 등과 같은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셋째, 보증성분량이다. 이는 비료를 구성하는 각종 요소들에 대한 성분표시로서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 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분량에 대한 세부적인 공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생산년월일이다. 현행 비료 표시에서 생산년월일은 표시의 글자크기가 너무 작아서 노령화 되고 있는 농민의 입장에서 큰 글씨로 바꾸기를 희망하였고, 특히 비료의 유효기간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비료의 유효기간에 대한 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4. 비료 생산자의 표시제도에 대한 대응과 문제점

가. 행정규제 대폭완화

국제화·개방화 등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싶어 한다. 농업환경보호와 비료의 자제품질관리강화 및 제품개발을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한다.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비료업자의 자율적인 비료품질검사 및 관리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표시 및 기타 위법행위에 대해 비료업자의 영업정지는 비료수급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또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 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청문절차를 규정하자. 일부 벌칙을 완화하고, 벌금 및 과태료를 현실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나. 비료법의 개정요구에 따른 개정 결과

비료법 개정 목적은 비료생산의 행정규제를 폐지 완화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일부 행정권한을 이양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골자는 비료생산·판매·수출·수입명령제·비료최고가격지정제를 각각 폐지하였다. 비료수입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고, 비료판매업은 신고제에서 폐지되었다.

공업용 또는 사료용 비료의 농업용으로의 판매금지, 비료의 보증표시 부정사용금지, 비료의 이물질혼입금지 및 허위선전금지 등을 폐지하고, 비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요구하여 보완하였다.

제3절 종자표시제도와 운영, 문제점

우리나라 종자의 표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종자산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종자포장과 용기의 표시내용을 종자산업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종자는 농약과 달리 표시에 대한 권장기준이 없어 이에 연구도 필요하다.

1. 종자 수급실태 및 문제점

가. 종자 수급 실태

1) 채소 종자 생산·출하 실태

채소종자를 위주로 생산량 및 매출액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채소종자 이외의 식량작물 등 종자는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표시제와 큰 관련이 없다. 2005년 채소 종자 생산량은 1,752톤이며 2006년에는 2,344톤으로 전년에 비해 34%가 증가하였다. 특히 시금치와 대목용 토마토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총 생산량 중에 국내 채종과 해외채종으로 구분할 때 국내 채종비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2006년에는 22%로 전년 25% 보다 낮아지고 있다.

표 3-56. 채소종자의 생산량

단위: 톤

	총생산량	국내생산량	해외채종	해외채종률(%)
2005	1,752	448	1,304	74.4
2006	2,344	510	1,834	78.2
증감률(%)	33.8	13.8	40.6	3.8

자료: 한국종자협회

채소종자 매출액은 2006년에 1,661억원으로 전년 1,697억원보다 2% 감소하였다. 채소종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무로 채소종자의 20%, 다음은 고추 19%, 배추 9%, 양파 8% 순이다. 고추 종자의 비중이 줄고 무 비중은 늘고 있다.

2) 종자 수출입 실태

채소 종자의 수출량은 2005년에 비해 2006년 감소하였으나, 단가의 상승으로 수출액은 증가하였다. 2005년 수출액은 15,276천달러에서 2006년에는 18,763천달러로 성장하였다. 특히 참외, 상

추의 성장세가 크다. 호박과 배추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7. 채소종자 수출현황

단위: kg, 달러, %

작물명	2006		2005		비율(A/B)
	수량	금액(A)	수량	금액(B)	
고추	24,927	6,893,490	18,167	5,039,409	136.8
당근	19,568	378,326	15,580	200,816	188.4
무	184,237	5,242,823	204,323	4,391,563	119.4
배추	29,780	1,418,207	40,008	1,942,094	73
상추	945	36,465	349	12,943	281.7
수박	889	146,515	3,141	253,757	57.7
시금치	9,299	58,233	5,874	32,720	178
양배추	31,665	2,784,867	21,060	1,795,976	155.1
양파	2,642	228,849	1,872	134,342	170.3
오이	2,678	192,240	1,790	119,642	160.7
참외	152	45,610	30.9	11,644	391.7
토마토	607	374,939	757	175,952	213.1
파	3,547	119,112	2,313	73,561	161.9
호박	1,787	137,849	4,056	274,973	50.1
기타	9,531	705,925	24,174	817,153	86.4
계	322,253	18,763,449	343,494	15,276,545	122.8

자료: 한국종자협회

채소 종자의 수입액은 2005년에 비해 2006년 증가하였다. 2005년 수입액은 30,271천달러에서 2006년에는 31,709천달러로 증가하였다. 순수입 비중은 작아지고 있고, 해외 채종이 늘고 있어 향후 해외 채종수입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채소 종자의 수출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표시제와 관련해서는 수입종자에 대한 표시가 더욱 필요하며, 이를 규정하는 법의 역할도 중요하고, 현재는 없지만 종자의 포장지 표시형식 및 권장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표 3-58. 채소종자의 수입액

단위: 달러

	총수입액	순수입	해외채종	재수출용	재판매용
2005	30,270,666	5,709,650	22,915,582	1,375,434	-
2006	31,708,679	4,997,931	25,369,220	1,318,334	23,194
증감률(%)	4.8	-12.5	10.7	-4.2	-

자료: 한국종자협회

나. 종자 사용의 문제점

1) 법·제도 미흡

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규정 미흡(수입종자)

종자산업법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144조)이 1999년 삭제된 이후, 수입종자의 표기용량 미달 사례 등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다. 대부분의 종자산업을 외국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불안한데, 수입종자 허위표시조차 제대로 단속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농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국립종자관리소가 밝힌 수입양파종자 표기용량미달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창녕군과 일선농협에서 피해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파종이 끝난 상태라 물증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불법종자유통에 대한 벌칙 규정 약함

종자의 생산 및 수입판매 신고를 관련기관에 하지 않았거나 발아율 보증기간이 지난 종자의 불법유통 사례가 많다. 불법종자를 정식으로 품종등록한 제품을 포장재에 넣고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발아율 보증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하는 업체도 있다. 적발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없고, 경고 또는 일정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그치는 것이 불법종자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주원인이다. 불법종자로 인해 종자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농업인의 피해가 우려된다.

종자의 생산 및 수입판매 신고를 관련기관에 하지 않았거나 발아율 보증기간이 지난 종자가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아 농가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국립종자관리소가 2003년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불법종자 유통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조사대상 종자업체 60여곳 중 10 이상이 불법종자를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종자 유통 유형을 보면 생산 및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의 경우 불법종자를 정식으로 품종등록한 제품의 포장재에 넣고 판매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종자의 발아율 보증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한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적발되어도 강력한 제재 조치가 드물고, 경고 또는 1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불법종자 유통이 근절되지 않은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 신품종 도입시 발생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신품종의 도입에 따른 종자분쟁의 발생하고 있다. 품종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씨앗을 판매업자의 말만 믿고 심었다가 결실이 안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라) 버섯종균의 상자단위 품질표시 문제

대부분의 종균업체들이 품질표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시를 하더라도 종균상자에 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수요가 많은 성수기에 대량으로 종균을 증식해 냉장고에 보관한 후 출고일에 맞춰 생산시기가 다른 병종균을 하나의 박스에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유통기한이 병마다 다르고 다른 품종과 섞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상자단위로 표시하는 버섯 종균의 품질표시를 병 낱개마다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병 종균마다 품질 표시를 반드시 부착해 농가가 신뢰하고 종균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종균의 품질표시는 종자산업법 제143조에서 신고된 품종을 판매할 때는 용기 또는 포장에 '유통종균의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종균 품질 표시 내용에는 품종명칭, 발아보증시한, 생산년도 등이 포함된다. 이에 종균생산업체는 농가가 주문한 양에 따라 종균을 생산한 후 품질 표시지를 부착해 해당 날짜에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균업체들은 품질 표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시를 하더라도 종균상자에 표시하는데 그칠 뿐 병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이는 수요가 많은 성수기에 대량으로 종균을 증식해 냉장고에 보관한 후 출고일에 맞춰 생산시기가 다른 병종균을 하나의 박스에 혼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으로 종균을 공급할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천차만별이어서 농가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같은 박스 안에 있더라도 다른 품종과 섞이는 경우도 있어 종균 분쟁이 발생하면 상자에 품질표시를 하는 제도로 인해 책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

2) 법·제도의 미준수

가) 허위표시

종자수입·판매업체의 허위표시(용량미달 사례)가 있다. 고가의 수입 양파종자가 용기에 표기된 용량보다 훨씬 적게 담겨진 채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다. 국립양파종자연구소의 계측으로 재차 확인됐다. 표기용량은 2dl이나 내용물은 1.65dl~1.7dl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농민들이 용량확인을 거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업체의 부당이득 챙기기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에 국립종자관리소가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양파종자 32개 제품을 구입, 계측한 결과 1.84dl로 계측된 모 회사의 제품을 비롯, 9개 제품(5개 업체)이 2%의 오차한도를 초과한 표기용량 미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용량미달이 확인된 9개의 제품에 대해 종자관리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조치를 의뢰했다.

나) 버섯종균 품질표시의 미준수

일부 종균배양소에서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일부 품종명이나 특성 등 간단한 사항만 구두로 전달한 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버섯종균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활력이 떨어지므로 품종명, 특성, 주의사항, 생산시기, 유효기간 등을 표기해야 하며, 위반하여 공급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일부 종균 배양소가 종균 포장 박스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채 공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통 종균은 종자산업법 제121조에 따라 품종명, 특성, 주의사항, 생산시기, 유효기간 등을 표기해야 한다. 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공급하다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버섯 종균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활력이 떨어져 기형버섯이 나올 확률이 높아 재배 특성이나 유통기한 등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종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 종균 배양소에서 이를 표기하지 않고 종균을 공급해 버섯 재배 농가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 버섯종균 접종일 의무표기화 미준수

유통되고 있는 버섯종균 제품에 접종일 표기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종균접종일 표기는 종균의 활력도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농가의 재배 실패 예방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수입 종균의 경우 국내 반입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농가 보급 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종균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종균접종일 및 수입일자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화 종균의 유통을 막아 농가 피해를 줄이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종균접종일 미표기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화·불량 종균의 유통난립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최소한 농가들이 종균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특히 양송이의 경우 외국산 수입종균의 시장점유율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 종자 표시와 관리제도

가. 종자의 보증

농민들에게 공급되는 종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보증이 이뤄진다. 즉 “종자의 보증은 농림부장관이 행하는 보증(이하 “국가보증”이라 한다)과 종자관리사가 행하는 보증(이하 “자체보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제124조 (종자보증의 구분)).

먼저 국가보증²²의 대상이 되는 종자는, 첫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등²³이 제114조²⁴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와 둘째, 종자업자²⁵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이다.

종자관리사에 의해 이뤄지는 자체보증(제126조)은 “종자업자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와 “종자업자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이다. 결국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등과 종자업자에 의해 생산, 공급(판매)되는 모든 종자는 소정의 보증이 필요하다.

나. 보증 및 품질의 표시

소정의 규정에 따라 포장²⁶과 종자검사²⁷에 합격한 보증종자를 판매 혹은 보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하는 보증종자에 대해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제131조(보증표시) 제1항). 그리고 표시에 관계된 내용, 즉 보증표시 및 보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제

23.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124조 2항).
24. 시행령 제41조 (농업단체 등의 범위) 법 제1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6.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25. 제114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대상은 벼·보리·콩·옥수수·감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옥수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26. “종자업자”라 함은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종자업- 종자의 생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 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법 제2조).
27. 제128조 (포장검사) ①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 부터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종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28. 제130조 (종자검사 등) ①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을 받는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는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131조(보증표시), 제2항).

보증표시와 보증의 유효기간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 105조와 106조에 구체화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표시위치, 크기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이 잘 보이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에 규정된 종자보증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 단, “농림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06조)라고 되어있다.

표 3-59. 종자 종류별 유효기간

종자	보증 유효기간	종자	보증 유효기간
채소	2년	감자·고구마	2개월
벼	1개월	기타	1년

전체적으로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 없으나, 범위반의 경우 등록취소사유(법 제13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므로 처벌이 있는 것과 같다. 한편 분포장의 경우,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당해 품종의 보증표시와 동일 내용의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제136조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즉 실효된 것으로 본다. 범위반으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유통전의 경우에는 특별한 벌칙규정이 필요 없다.

한편 종자에 대한 보증이 실효되는 경우(위 경우를 포함하여)가 있다. 보증의 실효조건이 제 135조에 규정되어 있다. 실효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아래 실효조건에 해당하는 종자를 취급하는 경우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으로는 법 제145조 제2항에서 범위반의 경우 생산·판매의 중지 및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73조 제11호).

표 3-60. 종자 보증의 실효조건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 2.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 3. 보증한 포장종자를 해장 또는 개장한 때. 다만, 당해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 또는 종자관리사의 감독하에서 행하는 분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은 때 |
|--|

자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35조

종자에 대한 보증 뿐만 아니라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 규정도 있다. 즉,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의 대상이 아닌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의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종자의 발아보증 시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

야 한다.”(제1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아래에 정리한 각각의 사항을 말한다(시행규칙 제121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표 3-61.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종의 명칭 2. 종자의 수량 4. 종자의 발아율(비석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 6. 수입년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에 한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년월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재배상 특히 주의할 사항 8. 종자업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9. 품종보호출원공개번호(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품종보호등록번호(보호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11. 품종생산·판매신고번호(생산·판매신고 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12. 규격묘 표시(묘목의 경우에 한하며, 규격묘 품질표지 및 규격묘품질확인 표지에 의한 표시방법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유전자변형종자표시(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 한한다) |
|---|

자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43조

법 제138조 제1항 각호의 경우(1. 1대 잡종의 親 또는 합성품종의 親으로만 쓰이는 경우, 2. 증식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3.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5. 기타 종자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증을 받아야만 한다. 보증이외의 종자는 유통될 수 없으며, 유통시는 범위 밖에 해당된다.

전반적으로 종자로 인한 피해발생시 그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자표시제도와 위반시 규제내용이 매우 미흡하다.

다. 종자업의 등록

기본적으로 종자업은 등록사항이다. 종자산업법 제137조 (종자업의 등록)에 따르면,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137조 제1항)”.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하는 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²⁸를 생산·판매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29. 시행령 제48조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법 제1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물을 말한다.

1. 화훼, 2. 사료작물, 3. 목초작물, 4. 특용작물, 5. 빵, 6. 임목, 7. 해조류, 8. 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를 제외한 식량작물, 9.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 및 감귤을 제외한 과수, 10. 무·배추·양배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항). 나아가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등이 종자의 증식·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4항).

한편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요건(제139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등))²⁹을 보면, 종자의 표시에 관련된 사항은 없다. 즉 종자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다고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 제139조 제1항 제5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는 조항이 있어 적용의 여지는 있지만 법 내에서 적용하여 규정화한 것을 발견할 수는 없다.

라. 유통종자의 분쟁

유통되고 있는 종자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 처리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특히 표시에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할 표시내용과 방법과 내용에 문제가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농민들의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통종자의 분쟁(제148조)에 관련된 법의 내용을 보면, ① 유통종의 종자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당해 품종의 종자를 보증한 농림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당해 품종의 종자보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당사자는 농림부장관에게 당해 분쟁의 대상종자와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관리중인 종자시료와의 대비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③분쟁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비시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종자시료채취를 공동으로 확인한 후 당해 종자시료를 밀봉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비시험을 신청받은 농림부장관은 대비시험을 실시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당사자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비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유통종의 종자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 및 시금치를 제외한 채소류, 11. 양송이·느타리버섯·팽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잎새버섯·목이버섯·팽이버섯·복령 및 버들송이를 제외한 버섯류

30. 1. 종자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2. 종자업자가 종자업의 등록을 한 후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3. 종자업자가 제13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4. 사위(詐僞? 용어정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의 등록을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마. 과태료 부과

종자산업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법 제176조에 규정되어 있다.

표 3-62.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부과 과태료	과태료부과대상
500만원 이하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u> 7. 제1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한 자 9. 제1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u>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u> 10.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0만원 이하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u>발아보증시험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u>
50만원 이하	1.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농림부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2.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또는 질권의 상속 기타 일반 승계의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보고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감정인 및 통역인외의 자로서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5.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위원회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6.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54조 또는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위원회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자료: 종자산업법 제176조

표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내용은 3가지이다. 2가지 위반행위, 즉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다른 한가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품질 표시내용 10가지 가운데 한가지, 즉 발아보증시험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나머지 품질표시에 관련된 나머지사항의 위반시의 과태료부과 기준이 없다. 따라서 품질표시위반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규정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지정종묘에 대한 표시규정에 의해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不表示는 포함하지 않는다), 표시명령, 판매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일본 種苗法 제58조).

그림 3-7. 우리나라 종자 표시 내용



그림 3-8. 일본 종자 표시 내용



일본의 종자에 대한 표시에서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는 식용농림수산물 등의 종묘에 농약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사용할 수 있는 농약에 함유된 유효성분 종류 및 종류별 사용회수를 표기해야 한다.

한국의 종자포장지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 포장지에는 가격이 표시되어 있어 수요자인 농민이 구입의사결정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 종자포장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3. 종자 표시에 대한 농민의 대응형태 및 문제점

가. 종자 표시에 대한 농민의 대응형태

1) 종자 구입방법

농민의 종자 구입방법은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 후 구입'하는 경우가 33.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종묘상에 의뢰하여 추천 종자를 구입'하는 경우가 28.6%, '농협·기술센터의 의뢰를 받아 추천한 종자를 구입하는 경우'가 14.3% 순이었다. 반면에 '이웃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종자를 구입하는 경우'와 '본인 의견을 종묘상과 협의하여 종자를 구입하는 경우'는 그 비율이 낮았다.

표 3-63. 종자 구입방법

단위: 명, (%)

구분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 후 구입	종묘상에 의뢰, 추천종자 구입	이웃에 의뢰, 추천종자구 입	본인 의견을 종묘상과 협의하여 구입	농협·기술 센터 의뢰 추천종자 구입	합계
학력	중졸이하	4(28.6)	5(35.7)	2(14.3)	1(7.1)	2(14.3)	14(100.0)
	고졸	10(43.5)	7(30.4)	2(8.7)	3(13.0)	1(4.3)	23(100.0)
	전문대졸이상	5(26.3)	4(21.1)	3(15.8)	2(10.5)	5(26.3)	19(100.0)
	계	19(33.9)	16(28.6)	7(12.5)	6(10.7)	8(14.3)	56(100.0)
연령	40세 미만	4(36.4)	1(9.1)	2(18.2)	2(18.2)	2(18.2)	11(100.0)
	40~49	3(25.0)	4(33.3)	1(8.3)	2(16.7)	2(16.7)	12(100.0)
	50~59	9(37.5)	7(29.2)	2(8.3)	2(8.3)	4(16.7)	24(100.0)
	60세 이상	3(33.3)	4(44.4)	2(22.2)	-	-	9(100.0)
	계	19(33.9)	16(28.6)	7(12.5)	6(10.7)	8(14.3)	56(100.0)
영농 경력	5년미만	1(100.0)	-	-	-	-	1(100.0)
	5~10년	-	1(100.0)	-	-	-	1(100.0)
	10~20년	6(31.6)	4(21.1)	3(15.8)	3(15.8)	3(15.8)	19(100.0)
	20년 이상	12(34.3)	11(31.4)	4(11.4)	3(8.6)	5(14.3)	35(100.0)
	계	19(33.9)	16(28.6)	7(12.5)	6(10.7)	8(14.3)	56(100.0)

학력별로는 고졸에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 후 종자를 구입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농협·기술센터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종자구입 비율이 26.3%로 다른 학력에 비해서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49세와 60세 이상에서는 '종묘상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종자 구입'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40세 미만과 50~59세 에서는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 후 구입하는 비율이 높았다.

영농경력별로는 5년미만은 본인 스스로 종자구입을 결정하였으며, 5-10년은 종묘상에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종자 표시에 대한 반응

종자구입시 종자에 대한 표시를 확인하는 경우는 본인 의견과 종묘상과 협의하여 구입하는 경우와 농협·기술센터 등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종자의 경우 종자에 관련된 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이웃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종자구입'과 '종묘상에 의뢰하여 추천 받은 종자구입'에 있어서는 표시확인 비율은 낮았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는 종묘상의 추천 종자, 고졸에서는 본인스스로 구입한 종자, 그리고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농협·기술센터에서 추천받은 종자를 구입할 경우 종자에 대한 표시확인 비율이 높았다.

표 3-64. 종묘구입 시 표시확인(중복응답)

단위: 명, (%)

구 분		본인스스로 의사결정후 구입	종묘상에 의뢰, 추천종자 구입	이웃에 의뢰, 추천종자구 입	본인 의견을 종묘상과 협의하여 구입	농협·기술 센터 의뢰 추천종자 구입	합계
학력	중졸이하	-	1(33.4)	-	1(33.3)	1(33.3)	3(100.0)
	고졸	4(36.4)	2(18.2)	1(9.1)	3(27.3)	1(9.1)	11(100.0)
	전문대졸이상	2(28.6)	-	1(14.3)	1(14.3)	3(42.9)	7(100.0)
	계	6(28.6)	3(14.3)	2(9.5)	5(23.8)	5(23.8)	21(100.0)
연령	40세 미만	2(25.0)	1(12.5)	1(12.5)	2(25.0)	2(25.0)	8(100.0)
	40~49	-	1(50.0)	-	1(50.0)	-	2(100.0)
	50~59	4(36.4)	1(9.1)	1(9.1)	2(18.2)	3(27.3)	11(100.0)
	60세 이상	-	-	-	-	-	-
	계	6(28.6)	3(14.3)	2(9.5)	5(23.8)	5(23.8)	21(100.0)
영농 경력	5년미만	-	-	-	-	-	-
	5~10년	-	-	-	-	-	-
	10~20년	2(25.0)	1(12.5)	1(12.5)	2(25.0)	2(25.0)	8(100.0)
	20년 이상	4(30.8)	2(15.4)	1(7.7)	3(23.1)	3(23.1)	13(100.0)
	계	6(28.6)	3(14.3)	2(9.5)	5(23.8)	5(23.8)	21(100.0)

연령별로는 40세 미만과 50~59세 연령층에서 종묘상 또는 이웃에서 추천받은 종자를 구입하는 경우 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이 낮아, 이들에 대한 종자정보 신뢰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영농경력별로는 종묘상이나 이웃에 의해 추천받은 종자의 경우 표시확인이 낮고, 본인 스스로 결정하거나 종묘상과의 협의, 농협·기술센터 의뢰한 종자 등의 경우 표시확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 구입시 표시를 확인하는 내용을 알아 보기 위해서 종자와 관련된 표시사항 10가지를 제시하고, 그 표시항목을 살펴보았다. 제시된 표시항목은 ①품종의 명칭, ②종자의 수량, ③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 ④수입년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에 한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년월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재배상 특히 주의할 사항, ⑥종자업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⑦품종보호출원공개번호(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품종보호등록번호(보호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⑧품종생산·판매신고번호(생산·판매신고 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⑨규격묘 표시(묘목의 경우에 한하며, 규격묘 품질표지 및 규격묘품질확인 표지에 의한 표시방법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유전자변형종자표시(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 한한다) 등이었다.

조사결과 농민들이 종자 구입시 주로 표시확인을 하는 항목은 품종의 명칭, 종자의 수량, 종자의 발아율, 재배상 특히 주의사항, 유전자변형종자표시 등 이었다. 반면에 표시확인을 하지 않는 것은 수입년월 및 수입자명, 종자업등록번호, 품종보호출원공개번호, 품종생산·판매신고번호, 규격묘 표시 등이었다.

종자 구입시 표시확인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판매상의 권유면 되기 때문에 읽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66.7%이었으며, 다음으로 '글씨가 너무 작아 읽을 수 없어서'가 22.2%, '표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11.1%이었다. 이로 볼 때 농민들이 종자구입시에 판매상의 종자관련 정보를 대체적으로 수용함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에서 판매상의 권유에 의한 종자구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표시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표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판매상의 권유면 되기 때문에 읽을 필요성을 못느낀다가 대부분 이어서 고령층일수록 판매상에 의한 종자정보를 얻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농경력별로는 5년 미만의 경우는 글씨가 작아서 읽을 수가 없다와 영농경력이 5~10년 경우에는 판매상 권유로 읽을 필요성이 없다가 지배적이었다.

표 3-65. 종자구입 시 표시확인을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글씨가 너무 작아 읽을 수 없음	표시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판매상의 권유면 되기 때문에 읽을 필요성 못느낌	계
학력	중졸이하	-	-	3(100.0)	3(100.0)
	고졸	1(20.0)	1(20.0)	3(60.0)	5(100.0)
	전문대졸이상	1(100.0)	-	-	1(100.0)
	계	2(22.2)	1(11.1)	6(66.7)	9(100.0)
연령	40세 미만	1(100.0)	-	-	1(100.0)
	40~49	1(33.3)	-	2(66.7)	3(100.0)
	50~59	-	1(50.0)	1(50.0)	2(100.0)
	60세 이상	-	-	3(100.0)	3(100.0)
	계	2(22.2)	1(11.1)	6(66.7)	9(100.0)
영농경력	5년미만	1(100.0)	-	-	1(100.0)
	5~10년	-	-	1(100.0)	1(100.0)
	10~20년	-	-	-	-
	20년 이상	1(14.3)	1(14.3)	5(71.4)	7(100.0)
	계	2(22.2)	1(11.1)	6(66.7)	9(100.0)

표 3-66. 표시확인 및 광고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 분		인식하기 어려운 글씨들이 있다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의 표시가 있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제조일자·유통 기한이 등이 사실과 다르게 표기	계
학력	중졸이하	1(33.3)	-	1(33.3)	1(33.4)	3(100.0)
	고졸	-	-	4(100.0)	-	4(100.0)
	전문대졸이상	1(33.3)	1(33.3)	1(33.4)	-	3(100.0)
	계	2(20.0)	1(10.0)	6(60.0)	1(10.0)	10(100.0)
연령	40세 미만	1(33.3)	-	2(66.7)	-	3(100.0)
	40~49	-	-	-	-	-
	50~59	-	1(20.0)	3(60.0)	1(20.0)	5(100.0)
	60세 이상	1(50.0)	-	1(50.0)	-	2(100.0)
	계	2(20.0)	1(10.0)	6(60.0)	1(10.0)	10(100.0)
영농경력	5년미만	-	-	-	-	-
	5~10년	-	-	-	-	-
	10~20년	1(33.3)	-	2(66.7)	-	3(100.0)
	20년 이상	1(14.3)	1(14.3)	4(57.1)	1(14.3)	7(100.0)
	계	2(20.0)	1(10.0)	6(60.0)	1(10.0)	10(100.0)

한편, 농민들이 인식하는 표시확인 및 광고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표시 및 광고가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이 높았고, 다음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글씨들이 많다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고졸에서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글씨들이 있다라는 응답이 50.0%이었다. 영농 경력은 영농경력이 많을수록 표시 확인 및 광고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나. 종자표시에 대한 문제점

농민들이 종자표시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표시에 대한 글씨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종자표사에는 ①품종의 명칭, ②종자의 수량, ③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 ④수입년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에 한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년월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재배상 특히 주의할 사항, ⑥종자업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⑦품종보호출원공개번호(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품종보호등록번호(보호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⑧품종생산·판매신고번호(생산·판매신고 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⑨규격묘 표시(묘목의 경우에 한하며, 규격묘 품질표지 및 규격묘품질확인 표지에 의한 표시방법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유전자변형종자표시(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 한한다)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종자포장지의 크기상의 한계로 인하여 글씨 크기가 대체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다.

<표 3-67>은 종자표시에 있어서 농민들이 글씨의 크기에 대해서 느끼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표시되어 있는 글씨의 크기에 있어서 44.1%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이 '보통이다' 41.2% 그리고 '적당하다'라는 응답은 14.7%에 불과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에서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보통이다와 적당하다는 고졸학력에서 인식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50~59세에서 66.7%, 보통이다는 40~49세에서 75.0%, 적당하다는 40세 미만에서 20.0%로 인식이 높았다.

표 3-67. 표시를 위한 글씨의 크기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적당하지 않다	보통이다	적당하다	계	
학력	중졸이하	5(55.6)	3(33.3)	1(11.1)	9(100.0)
	고졸	4(30.8)	6(46.2)	3(23.1)	13(100.0)
	전문대졸이상	6(50.0)	5(41.7)	1(8.3)	12(100.0)
	계	15(44.1)	14(41.2)	5(14.7)	34(100.0)
연령	40세 미만	2(40.0)	2(40.0)	1(20.0)	5(100.0)
	40~49	1(12.5)	6(75.0)	1(12.5)	8(100.0)
	50~59	10(66.7)	3(20.0)	2(13.3)	15(100.0)
	60세 이상	2(33.3)	3(50.0)	1(16.7)	6(100.0)
	계	15(44.1)	14(41.2)	5(14.7)	34(100.0)
영농경력	5년미만	-	1(100.0)	-	1(100.0)
	5~10년	-	1(100.0)	-	1(100.0)
	10~20년	3(30.0)	5(50.0)	2(20.0)	10(100.0)
	20년 이상	12(54.6)	7(31.8)	3(13.6)	22(100.0)
	계	15(44.1)	14(41.2)	5(14.7)	34(100.0)

글씨 크기에 대한 농민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현행 표시되고 있는 글씨가 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글씨 크기에 대한 방향은 '글자 크기를 크게 한다'가 5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그림과 글자를 함께 병행한다'가 34.5%이었다. 이점에서 볼 때 농민들은 표시되는 글자에 있어서 크기 조정과 그림과 글자를 함께 병행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에서 글자 크기를 크게 해야 한다는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다. 고졸에서는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20.0%, 전문대졸 이상에서는 그림과 글자를 함께 병행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령별로는 글자크기를 크게 하는 경우는 고령층에서 선호하였고, 그림과 글자를 함께 병행하는 경우에는 젊은 층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영농경력별로는 영농경력이 높을수록 글자 크기와 그림·글자를 함께 병행하는 응답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68. 표시를 위한 글씨의 크기 조정 방향

단위: 명, (%)

구 분	글자크기를 크게 한다	그림으로 표시	그림과 글자를 함께 병행	계	
학력	중졸이하	6(75.0)	-	2(25.0)	8(100.0)
	고졸	5(50.0)	2(20.0)	3(30.0)	10(100.0)
	전문대졸이상	5(45.5)	1(9.0)	5(45.5)	11(100.0)
	계	16(55.2)	3(10.3)	10(34.5)	29(100.0)
연령	40세 미만	1(25.0)	-	3(75.0)	4(100.0)
	40~49	4(57.4)	3(42.6)	-	7(100.0)
	50~59	7(53.8)	-	6(46.2)	13(100.0)
	60세 이상	4(80.0)	-	1(20.0)	5(100.0)
	계	16(55.2)	3(10.3)	10(34.5)	29(100.0)
영농경력	5년미만	-	-	1(100.0)	1(100.0)
	5~10년	1(100.0)	-	-	1(100.0)
	10~20년	4(50.0)	2(25.0)	2(25.0)	8(100.0)
	20년 이상	11(57.9)	1(5.3)	7(36.8)	19(100.0)
	계	16(55.2)	3(10.3)	10(34.5)	29(100.0)

제4절 일본의 농자재 표시제도와 시사점

일본의 농자재 표시제도 중 농약, 비료, 종자에 관련된 법령은 농약단속법, 비료표시법, 종묘법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농약, 비료, 종자의 표시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 이들 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을 정리한 후 우리나라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농약 단속법

가. 영업의 농약과 취소요건

농약단속법 제2조(농약의 등록)에 의하면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농약에 대해서, 농림수산대신의 등록을 받지 않으면, 이것을 제조, 가공,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원재료에 비추어 농작물, 사람과 가축 및 수산 동식물에 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 및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특정 농약을 제조, 가공,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대상이다.

그리고 등록 신청 시 ① 성명 및 주소, ② 농약의 종류, 명칭,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상태 및 유효 성분과 각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③ 적용 병해충의 범위(농작물 등의 생리 기능의 증진 또는 억제에 이용되는 약제는 적용 농작물 등의 범위 및 사용 목적) 및 사용 방법, ④ 사람과 가축

에 유독인 농약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해독 방법, ⑤ 수산 동식물에 유독인 농약에 대해서는 그 취지, ⑥ 인화, 폭발, 또는 피부를 해치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그 취지, ⑦ 저장상 또는 사용상의 주의 사항, ⑧ 제조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⑨ 제조, 가공하려고 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제조 방법 및 제조 책임자의 이름, ⑩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와 관련되는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 및 재질, 내용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등록된 농약이 적용 병충해의 범위에 사용한 경우에 농작물, 가축,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 시 기재한 위 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등록을 받은 자가 농약의 제조, 가공, 수입을 폐지를 신고한 경우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등록이 실효된다.

판매자는 성명 및 주소와 해당 판매소에 대해 소재지 관할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해야하며, 신고사항 중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2주 이내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나. 표시와 광고 및 유통관리

농약의 표시에 관한 기본규정은 농약단속법 제7조(제조자 및 수입자의 농약의 표시)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할 때는, 그 용기(용기에 넣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 다음 각항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특정 농약의 경우는 제외된다.

- ① 등록 번호
- ② 공정 규격에 적합한 농약은, 「공정 규격」이라고 하는 문자
- ③ 등록과 관련되는 농약의 종류, 명칭,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상태 및 유효 성분과 각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 ④ 내용량
- ⑤ 등록과 관련되는 적용 병해충의 범위 및 사용 방법
- ⑥ 수질오탁성 농약에 해당하는 농약은 「수질오탁성 농약」이라고 하는 문자
- ⑦ 사람과 가축에 유독인 농약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해독 방법
- ⑧ 수산 동식물에 유독인 농약에 대해서는, 그 취지
- ⑨ 인화, 폭발, 또는 피부를 해치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그 취지
- ⑩ 저장상 또는 사용상의 주의 사항
- ⑪ 제조장의 명칭 및 소재지
- ⑫ 최종 유효 년월

판매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위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농약 및 특정 농약 이외의 농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약의 등록규정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농작물, 가축,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그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또한 농림수산대신은 판매자가 농약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농약의 회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광고와 관련해서는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는 그 제조, 가공, 수입 혹은 판매하는 농약의 유효 성분의 함유량 혹은 그 효과에 관해서 허위의 선전을 하거나 등록을 받지 않은 농약에 대해 해당 등록을 받고 있다고 오인시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유효 성분 또는 효과에 관해서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무처리 및 권한의 위임

농림수산부대신 또는 환경대신의 권한인 농약의 제조, 가공, 수입자에 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와 현장검사 등의 업무 일부를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림수산령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 농정 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

라. 영업의 농약과 취소요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① 등록규정, 표시규정, 미표시 농약의 판매, 허위선전규정, 표시가 있는 농약 및 특정농약 이외의 농약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미표시 농약의 판매 및 표시에 규정된 사용범위에 사용하였으나 농작물, 가축, 사람에게 피해를 유발한 농약의 회수 및 판매금지를 위반한 자
- ③ 제초제를 농약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에 따르지 않은 자
- ④ 도도부현 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고 수질오탁성 농약에 해당하는 농약을 사용한 자
- ⑤ 농림수산성대신의 감독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자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 혹은 30만엔 이하의 벌금, 두가지를 병행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① 등록사항의 변경, 판매자의 신고, 제조 및 수입과 판매자의 장부비치, 수입업자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제조·수입·판매자, 농약 사용자가 관련규정에 정해진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또한 관련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필요하여 샘플 수거 시 이를 거절하거나 방해한 자
- ③ 외국에서 제조된 농약에 대한 국내 관리인의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혹은 허위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검사의 거절, 방해, 기피한 자

농약 등록의 승계,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기간 만료 등의 사항이 발생한 후 2주 이내에 등록표를 교체하여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 1억엔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소의 경우에도 농림수상대신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검사소의 임원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비료 단속법

가. 생산과 판매 등록

보통 비료를 업으로서 생산하려고 하는 사람은 농림수상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수상대신에 등록을 받는 것은 ① 화학적 방법으로 생산되는 보통 비료, ② 화학적 방법 이외 방법으로 생산되는 보통 비료로 질소, 인산, 가리, 석회 및 마그네시아 이외의 성분을 주성분으로서 보증하는 것, ③ 오니를 원료로 생산되는 보통 비료, 기타 원료의 특성으로 볼 때 주요한 성분이 현저하게 다른 보통 비료로 유해 성분을 함유 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 ④ 함유 하고 있는 성분인 물질이 식물에 잔류하는 성질(잔류성)이 있어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보통 비료, ⑤ 특정 보통 비료로 앞의 3호의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보통 비료에 해당하는 것, ⑥ 앞의 각 호에 제시한 보통비료의 일종 이상이 원료로서 배합되는 보통 비료가 해당된다. 그리고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상의 여섯 개의 보통비료를 제외한 보통비료(석회질비료 포함)이다.

등록을 신청할 경우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수속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와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비료의 견본을 농림수상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 ① 성명 및 주소, ② 비료의 종류 및 명칭, ③ 보증 성분량 및 기타의 규격, ④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⑤ 보관하는 시설의 소재지, ⑥ 원료, 생산의 방법 등으로 볼 때, 식물에 해가 없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식물에 대한 해에 관한 재배 시험의 성적, ⑦ 특정 보통 비료의

등록은 적용 식물의 범위, ⑧ 농작물이 적용 식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보통 비료의 등록은, 시용방법 및 잔류성에 관한 재배 시험의 성적, ⑨ 가등록은 시용방법 및 재배 시험의 성적, ⑩ 특정 보통 비료의 가등록은 적용 식물의 범위, ⑪ 그 외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등록은 받은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보통 비료는 6년으로 하고 있다.

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① 등록을 받은 법인이 해산해 그 청산이 종료했을 때, ② 등록을 받은 사람이 해당 비료의 생산 또는 수입의 사업을 폐지했을 때, ③ 도도부현 지사에 등록을 한 생산업자가 해당 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다른 도도부현으로 이전했을 때, ④ 해당 비료의 보증 성분량 또는 등록증에 기재된 그 외의 규격을 변경했을 경우 등에는 등록의 효력을 상실한다.

나. 보증표시 및 판매

보증표시는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보증표시와 판매업자 보증표시로 구분되는데 제17조에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한 규정이, 제18조에 판매업자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수입업자 보증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표시 내용은 ① 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수입업자 보증표라고 하는 문자, ② 비료의 종류 및 명칭, ③ 보증 성분량, ④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⑤ 생산 또는 수입한 년월, ⑥ 생산업자의 경우 생산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⑦ 중량, ⑧ 지정 배합 비료 이외의 비료는 등록 번호, ⑨ 특정 보통 비료의 경우 등록과 관련되는 적용 식물의 범위 및 시용 방법, ⑩ 이물을 혼입했을 경우 혼입한 것의 명칭 및 혼입의 비율, ⑪ 가등록을 받은 비료 또는 지정 배합 비료는 그 취지의 표시, ⑫ 그 외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판매업자는 보통 비료의 용기 혹은 포장을 개봉하거나 변경했을 때, 용기 혹은 포장이 없는 보통 비료를 용기 또는 포장했을 때에는 해당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판매업자 보증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판매업자 보증표라고 하는 문자, ② 판매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③ 비료의 종류 및 명칭, ④ 보증 성분량, ⑤ 생산 또는 수입한 년월, ⑥ 생산업자의 경우 생산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⑦ 중량, ⑧ 특정 보통 비료의 경우 등록과 관련되는 적용 식물의 범위 및 시용 방법, ⑨ 이물을 혼입했을 경우 혼입한 것의 명칭 및 혼입의 비율, ⑩ 가등록을 받은 비료 또는 지정 배합 비료는 그 취지의 표시, ⑪ 그 외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⑫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⑬ 판매업자 보증표 교부 년월, ⑭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등이다

이러한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농림수산대신은 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 대

해서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제22조 3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대신은 등록 한 보통비료 또는 신고한 지정 배합 비료의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해당 비료의 양도 혹은 인도를 제한하거나 그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생산·수입·판매하는 비료의 주성분의 함유량 또는 그 효과에 관해서 허위 선전을 하거나 효과에 관해서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명칭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 권한의 위임

법률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권한은 농림 수산성령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 농정 국장에 위임할 수 있다.

구체적인 권한위임의 내용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생산·수입·판매 사업장의 소재지가 하나의 지방 농정국의 관할구역내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 농정국장에 위임한다. 또한 보고의 징수에 관한 농림수산장관의 권한은 생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 농정국장에 위임한다. 또한 출입검사 등에 관한 농림수산장관의 권한은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사업장, 창고 그 밖에 비료의 생산, 수입, 판매 또는 보관의 업무에 관계가 있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농정국장에 위임한다.

라. 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두가지를 병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등록(가등록 포함)을 받지 않고 보통 비료를 생산, 수입하거나 등록을 받는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받은 경우, 보통비료 등록(가등록 포함)의무 불이행, 외국산 비료의 등록(가등록 포함) 의무를 위반한 자
- ② 미등록 비료, 보증표 미부착 비료에 대한 양도금지를 위반, 보증표가 없는 특정보통비료의 사용자, 특정보통비료 사용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자한 자
- ③ 보증표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의무 불이행 자
- ④ 보증표에 허용된 기재사항 이외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 기재를 한 자
- ⑤ 보증표를 위·변조하거나 부정적으로 사용한 자
- ⑥ 기준에 따라 시용한 경우에도 동·식물에 피해가 발생 해 양도·양수의 금지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자

- ⑦ 기준에 따라 시용한 경우에도 동·식물에 피해가 발생 해 회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두가지를 병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비료의 주성분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특수비료 생산·수입업자의 등록, 변경사항 등록을 기간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판매업자 및 수입업자의 기간 내 신고의무 불이행자
- ② 타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성명, 상표 또는 상호, 비료의 명칭, 성분을 표시한 용기나 포장에 대해 그 표시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자기가 판매한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사용하는 경우, 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비료의 주성분의 함유량 또는 그 효과에 관하고 허위의 선전을 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① 등록(가등록 포함)받은 비료에 대한 신고의무 및 등록에 실효가 발생한 경우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자
- ② 보증표 부착의무를 위반한 생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 ③ 보증표에 허용된 기재사항 이외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 기재를 한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① 등록증 비치의무 위반
- ② 등록증의 멸실, 훼손된 경우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③ 시용시 주위사항 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④ 장부의 비치의무 위반자
- ⑤ 보고의무 불이행자
- ⑥ 입회검사에 대한 방해, 기피 자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 1억엔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검사소의 경우에도 농림수산대신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검사소의 임원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종묘법

가. 지정 종묘에 대한 표시

지정종묘는 그 포장에 정해진 사항을 표시하거나, 해당 사항을 표시하는 증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종묘법 제50조에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① 표시를 한 종묘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② 종류 및 품종, ③ 생산지, ④ 종자의 경우 채종 년월 또는 유효기간 및 발아율, ⑤ 수량, ⑥ 그 외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 때 생산지의 표시는, 국내산은 생산지가 속하는 도도부현명을, 외국산은 국가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표시사항 외에 수요자가 자연적·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품종의 종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품종의 재배 적지, 용도 그 외의 재배상 또는 이용상의 특징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정종묘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대신이 그 식별을 위해 표시해야 할 사항, 종묘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해 이것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종묘업자에게는 그 기준을 준수해야 할 취지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지정종묘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나. 벌칙

종묘에 대한 벌칙은 50만엔 이하와 30만엔 이하의 벌금 규정으로 구분된다. 50만엔 이하의 벌금규정은 ① 표시해야 할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지정 종묘를 판매한 사람, ② 미표시 종묘의 판매, 표시사항 위반 등으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고도 종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30만엔 이하의 벌금규정은 ① 종묘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이 검사에 필요한 종묘의 집취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③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혹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 1억엔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종묘관리센터 또는 가축개량센터의 경우에도 농림수산대신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검사소의 임원은 2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한·일 비교에 의한 시사점

가. 농약

일본 농약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농약단속법”이다. 우리나라의 “농약관리법”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으나 몇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국의 농약 관련법의 차이점은 제조업·수입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비해, 일본은 농림수산성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를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라고 제조 및 수입업에 대해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표 3-69. 한국과 일본의 농약 관련법의 차이점

구분	한국(농약관리법)	일본(농약단속법)
제조업·수입업·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p>제3조 (영업의 등록 등)</p> <p>① 제조업·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마다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법 제2조 (농약의 등록)</p> <p>①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농약에 대해서 농림수산성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를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할 수 없다.</p> <p>법 제8조 (판매자의 신고)</p> <p>① 판매자(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해당되는 사람(오로지 특정 농약을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법 제 13조제1항 및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는 그 판매소 마다 다음의 각 항을 해당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명 및 주소 2. 해당 판매소
품목등록의 유효기간	<p>법 제11조 (품목등록의 유효기간)</p> <p>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p>	<p>법 제5조 (등록의 유효기간)</p> <p>① 2조제1항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p>

반면, 판매업자에 대해 우리는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신고제이다.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는 시장진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되지만, 농약으로 인한 사고는 생명과 재산상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일본보다 우리의 등록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양국의 농약 관련법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으로 현재의 10년은 일본의 3년에 비해 너무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병해충의 내성으로 3~5년 이상의 사용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일본 수준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나. 비료

1) 관리제도

일본은 비료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보통비료의 상표마다 농수산성장관 등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법 제4조 1항, 3항) 또한 판매 업무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사업자의 성명, 주소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우리는 비료생산업에 대해서는 비료의 종류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1조 1항) 비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등록제도와 달리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1항). 따라서 수입비료에 대해서는 등록제가 아니라 위해성 비료의 수입제한 규정(법 제10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즉, 농림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비료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등록유효기간

일본은 비료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가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법 제12조 1항) 유효기간은 신청에 의해 갱신할 수 있는데 다만 공정규격의 변경에 의하여 공정규격에 적합하지 않게 된 보통비료 또는 공정규격의 폐지된 보통비료는 갱신할 수 없다(법 제12조 1항, 2항). 우리는 등록의 유효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3) 등록 및 가등록에 관계된 공고

일본은 농수산성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등록 또는 가등록을 한 경우, 등록 또는 가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등록 또는 가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에는 공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16조 1항). 우리의 경우 등록에 관계된 공고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4) 허위선전 등의 금지

일본 생산·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비료의 주성분의 함유량 또는 효과에 관한 허위의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법 제26조 1항). 또한 주성분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된다(법 제26조 1항, 2항). 우리는 일본의 허위선전의 금지와 같은 표시·광고 규제조항을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다.

5) 장부의 비치

일본 비료 생산업자는 생산하는 사업장에 장부를 비치하고 비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 매일 그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27조 1항) 또한 비료의 생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는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장에 장부를 비치하고 비료를 구입,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 그 때마다 명칭, 수량, 연월일 및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27조 2항) 그리고 위의 장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27조 3항).

우리는 비료의 생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관련장부를 비치하고 중요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종자

1) 한·일 종자법의 차이

종자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우리 나라의 경우 '종자산업법'이며, 일본은 '종묘법'과 '주요 농작물종자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우리 나라도 1995년 이전에는 종자관련법이 '주요 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3년 말 UR협상 타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이 다자간 협정으로 제정되어 1995년부터 발효되고, 이 협정으로 인해 식물신품종 보호가 '특허법 또는 각 국의 개별법으로 보호하도록 의무화'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규범에 맞는 법령체제로 정비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 종자산업을 세계화하기 위하여 1995년에 종전의 '주요 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종자산업법을 통합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일본의 종자관련법은 종자 또는 종묘에 관한 품질관리 및 유통에 관계되는 법이라기 보다는 종자 또는 종묘에 관한 특허법에 해당될 정도로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특허권)를 인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로 되어 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유통종자의 '품질표시'와 '유통종자의 분쟁'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2) 종자의 품질 표시

우리나라 종자산업법 제143조(유통종자의 품질 표시) 및 동법 시행령 제 121조에서는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의 대상이 아닌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종자의 사용에 관한 사항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법 제176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해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는 판매 및 보급이 금지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종묘법 제50조(지정종묘에 관한 표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지정종묘에 관한 품질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포장에 표시하거나 해당사항을 표시하는 증표를 부착하여야만 판매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양국의 품질표시 사항 중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생산지 표시'와 '종묘에 대한 약제 처리 및 종균에서의 유해 균류의 의무표시'이다. 일본 종묘법에서 '생산지'를 품질 표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종자 생산지에 따라 품질 수준의 차이가 날 수 있고, 종자 사고나 종자 품질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품 수거 등 조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지'에 대한 품질표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3-70. 한국과 일본의 종자 관련법의 차이점

한국(종자산업법)	일본(종묘법)
<p>법 제143조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국가보증 또는 자체보증의 대상이 아닌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의 생산연도 또는 포장연월, 종자의 발아보증시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p> <p>시행규칙 제121조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①법 제143조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품종의 명칭 2. 종자의 수량 3. 삭제 4.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 5. 삭제 6. 수입년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에 한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년월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재배상 특히 주의할 사항 8. 종자업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9. 품종보호출원공개번호(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품종보호등록번호(보호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10. 삭제 11. 품종생산·판매신고번호(생산·판매신고 품종의 경우에 한한다) 12. 규격표 표시(묘목의 경우에 한하며, 규격표 품질표지 및 규격표품질확인 표지에 의한 표시방법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유전자변형종자표시(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에 한한다)</p>	<p>법 제50조 (지정종묘에 관한 표시) ① 지정종묘는 그 포장에 다음사항을 표시하거나 해당 사항을 표시하는 증표를 부착하여야만 판매할 수 있다. 1. 표시한 종묘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종류 및 품종(접목한 묘목에 있어서는 수목 및 대목의 종류 및 품종) 3. 생산지 4. 종자에 있어서는 채종연월일 또는 유효기간 및 발아율 5. 수량 6.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전항 제3호에 언급된 ‘생산지’표시는 국내산의 경우에는 해당 산산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명을, 외국산의 경우에는 해당 생산지가 속한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③ 전 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수요자가 자연적 경제적 조건에 적합한 품종의 종묘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품종의 재배면적, 용도, 기타 재배상 이용상의 특징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정종묘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은 그 식별을 위해 표시할 사항 및 기타 당해 표시에 관하여 종묘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시행규칙 제23조 (지정종묘의 표시사항) ① 법 제50조 제1항 제4호의 발아율은 동항의 규정에 의해 표시하고 또 증표를 첨부한 연월에 있어서의 최저 비율로서 다음과 같이 표시하도록 한다. 몇 년 몇 월 현재 발아율 몇%이상 ③ 법 제50조 제1항 제6호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약제로서 병해충 방제를 한 종묘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용한 약제명 (2) 종균에 대하여는 제조년월 및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유해균류의 유무</p>

5. 일본 표시제도의 시사점

일본 농자재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우리의 관련법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관련 법률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법률이 작성되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정도로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단, 처벌 및 행정규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좀더 구체적이며, 강화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가. 농약에 대한 시사점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양국의 농약 관리법의 첫 번째 차이점은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으로 현재의 10년은 일본의 3년에 비해 너무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병해충의 내성으로 3~5년 이상의 사용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본과 같이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판매업자에 대해 우리는 등록제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신고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이 신고제보다는 등록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비료에 대한 시사점

수입비료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일본의 등록제도와 우리의 신고제도를 비교해 볼 때 제도상으로 우리가 일본만큼 엄격하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등록유효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정규격이 바뀌거나 폐지되는 경우 과거의 규격에 따라 등록된 비료의 관리가 허술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업자로 하여금 장부를 비치하고 중요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는 비료관련 농업인 피해발생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비료판매업에 대한 신고제를 1999년 7월에 폐지함으로써 현재는 아무런 제한 없이 비료판매를 할 수 있다.

비료의 공정규격, 등록, 검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는 일본의 경우 “비료단속법”이고 우리는 “비료관리법”이다. 양국 모두 국가가 비료의 공정규격을 정하여 이에 따라 생산·판매를 하도록 관리하는 관리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국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의 경우 공정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보통비료에 대해 가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는 공정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보통비료의 유통이 허락되지 않고 있어 가등록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다. 종자에 대한 시사점

양국의 품질표시 사항 중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생산지 표시’와 ‘종묘에 대한 약제 처리 및 종균에서의 유해 균류의 의무표시’이다. 일본 종묘법에서 ‘생산지’를 품질 표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종자 생산지에 따라 품질 수준의 차이가 날 수 있고, 종자 사고나 종자 품질에 문제가 발

견되는 경우 제품 수거 등 조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지'에 대한 품질표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종자에 대한 표시에서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는 식용농림수산물 등의 종묘에 농약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사용할 수 있는 농약에 함유된 유효성분 종류 및 종류별 사용회수를 표기해야 한다.

라. 벌칙에 대한 시사점

농약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허위 또는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33조)에 해당하는 벌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농약의 표시, 허위선전금지, 회수명령, 권고명령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일본 農藥取締法 제17조) 우리나라에 비해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료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처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양도 등의 제한금지규정을 위반한 자, 보증표에 허위를 기재한 자, 보증표를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일본 肥料取締法 제36조), 허위선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동법 제37조), 보증표관련 규정위반한 자, 보증표에 법정 사항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8조).

종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표시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 내용은 등록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유통종자에 대한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한 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품질표시에 관련된 나머지사항의 위반시의 과태료부과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지정종묘에 대한 표시규정에 의해 표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허위표시를 하여 판매한 자(不表示는 포함하지 않는다), 표시명령, 판매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일본 種苗法 제58조).

제5절 주요 농자재 표시제도의 개선방안

1. 농약 표시제도의 개선방안

가. 소비자(농가)를 위한 표시방법 개발

농약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 소비자인 농민의 오류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나,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표시 및 권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적어질 수 있다고 본다. 농민의 가장 큰 불만은 표시가 전문용어가 많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표시를 할 때 농민이 이해하기 쉬운 의장표시나 표기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표기를 할 때, 농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농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더욱 전문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를 쉬운 용어로 표현하는 방법, 눈에 잘 띄게 표시하고, 농약명이 대부분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어 농가가 알기 쉽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³⁰.

나. 농약 혼용사용 금지 표시 강화

농약은 하나의 농약만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는 여러 농약을 동시에 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농약 내에는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농약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농가는 동시에 살포하여 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는 농가입장에서 혼용하게 되면 살포횟수가 감소하고, 동시방제, 약제내성 및 저항성 발달 억제 등 효과가 있으나, 잘못하면 약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2종 이상 혼용시 혼용가능 여부를 반드시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판매상의 판매 및 사용설명 내용 기록

해당 작물에 적합 농약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부적합한 농약을 사용하여 약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농약사용설명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사용설명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설명서를 읽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판매상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판매상은 반드시 판매 장부를 기장하고, 설명내용도 같이 기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라. 농약 안전 사용 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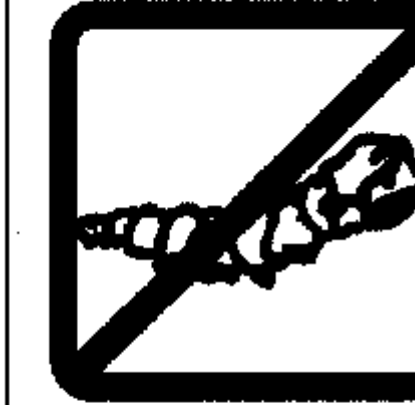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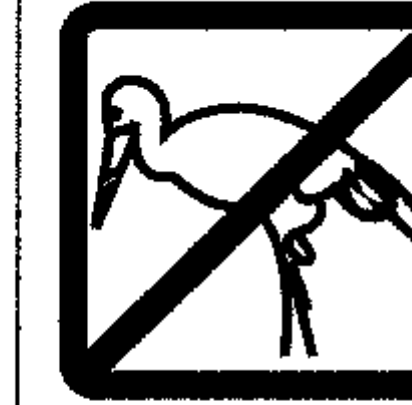







농업인들도 농약에 의한 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를

30 국제표기기준이 있어 이를 따라야 하므로 모두 한국어로 표기할 수는 없음.

제안하고 있다. 농약 사고는 대부분 사용자인 농업인에게 가장 피해가 크다. 농업인이 농약 살포 시 ‘고농도 살포’, ‘혼용 불가능한 약제를 혼용하여 사용’, ‘비적용 작물에 사용’ 등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농 교육시 농약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어렵게 여기는 전문용어를 쉽게 설명하여 농가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오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약 표시권장기준에 있는 의장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의장부분이 눈에 잘 띄도록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3-9. 농약 표기의 의장부분 개선(안)

행위금지의 표시						
고독성 농약	고독성 농약중 액체농약	어독성 I급 농약 및 수도용 어독성 II급 농약	꿀벌독성농약	누에독성농약	조류독성농약	분제농약 요리금지
						
행위의 강제표시						
마스크 착용	보안경 착용	불침투성장갑 착용	불침투성방제복 착용	농약보관창고(상자)에 잠금장치 보관		
						
주의 · 경고 마크						
						

2. 비료 표시제의 개선방안

가. 비료의 포장지 표식형식 권장기준 마련

비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률로 정하는 표시는 오직 비료생산 보증표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료에서 표시의 오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료에 “비료의 포장지 표시형식 권장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나. 비료의 포장지 표식방법

표기문자는 비료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계량단위를 나타내는 CGS 단위,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수입완제품의 제조회사명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라벨의 부착은 ① 비료의 표시사항은 용기에 직접 인쇄하거나 라벨에 인쇄하여 용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입완제품은 외국포장지의 원문이 보이지 않도록 한글라벨을 완전히 덧붙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완제품을 분포장 및 개포장 할 때와 원제조국에서 한글 라벨을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수입한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라벨의 구성은 ① 비료의 라벨은 그 제품의 외형을 장식하는 의장부분과 적용대상작물, 적용효능, 사용적기 및 사용량 등을 기재하는 표기부분으로 구분한다. 표기부분의 면적비율은 제한하지 않는다.

라벨의 크기는 ① 비료의 라벨은 앞면과 뒤 면을 잘 조화시켜 활용할 수 있다. ② 라벨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앞.뒷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적용대상작물, 사용적기 등은 ① 적용대상 작물은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준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적정사용량 및 사용적기는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적기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기한다. ④ 비종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표기할 수 있다.

본 라벨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1. 비료의 용도구분
2. 비종명 또는 상표명
3. 실중량
4. 보증 성분량
5. 원료명
6. 적용 비종 및 권장사용량(300평)

7. 유효기간 (미생물제제 및 토양활성제제에 한함.)
8. 제조(수입)업자명과 소재지
9. 소비자가격(판매상에서 표기)
10. “별지 설명문을 꼭 읽은 후에 사용 및 보관하십시오”

다. 처벌 규정의 강화

비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원료배합 비율의 표시이나, 제품 포장지에 원료명과 함께 투입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 미약하다. 이로 인해 원료명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하고, 불량비료의 유통으로 농가 피해가 발생한다.

포장재 표기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고, 제품 성분분석으로는 원료와 투입비를 알 수 없어서 원료 혼합비를 속이거나 음식물쓰레기, 산업폐기물을 섞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처벌규정이 있더라도 미약하여 유명무실하다³¹.

유기질비료나 3중 복비의 경우 최근 농약적 효과를 선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료관리법에서 금지하고 벌칙 조항도 있다. 그러나 벌금이 5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고 단속될 경우 실제로는 10~2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많다. 따라서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만 한다.

라. 비료의 표시제도의 강화

비료는 농약과 같이 법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농약은 표시를 더욱 상세히 하도록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이 있는데 비료는 없다. 비료는 “생산업자 보증표” 밖에 없다. 보증표에는 “비료의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어 이를 생략하는 비료가 많아 구입한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비료관리법에는 비료 수입업자의 경우 신고번호·비료의 종류 및 명칭·실중량·보증성분량·원료명 및 배합비율·수입연월일·원산지 및 생산자 등을 비롯해 사용·보관상 주의사항을 비료수입업자 보증표에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 보증표는 포장 뒤쪽의 면적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붙이거나 인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러한 표시사항을 어길 경우 1~3개월 간의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다기화학에서 제조한 완효성비료는 사용상 혹은 보관상 주의사항 표시는 없고, 원료명·배합비율·보증성분량 등을 표기한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도 포장 뒷면에 아주 작게 표시돼 있다.

³¹ 광고 및 표시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적용하지 않고 있음.

마. 보증표시의 의무화

비료의 보증표시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제품의 특성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 원자재의 다양화로 투입되는 원료가 제각각이어서 원료명과 배합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보증 성분량이나 원료명, 배합비율이 원료수급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표시의 내용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료 제품의 용기나 포장 외부에 표시하는 보증표시 내용을 농업인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민이 “보증표시를 보면 그 제품의 모든 것을 한 눈에 다 알아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표시사항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표기형식 권장기준 또는 표기형식 의무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사. 판매 일지 정례화

비료의 판매상은 판매일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판매 이후 문제발생시 원인 규명이 어렵다. 판매상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소비자인 농민에 의한 잘못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 일지의 내용은 누가, 언제, 어떤 비종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판매상이 어떤 작목에 얼마나 시비해야 하는지 지도 및 보관·저장 방법을 고지하였는지를 기록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아. 판매가격 표시 미이행 벌칙필요

가격 표시는 농업인에게 물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판매업소간 가격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농업인의 합리적인 제품선택을 도와준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판매가격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농민이 공감하고 있으나 비료판매업자는 이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농가판매가격 표시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나, 판매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미이행에 대한 벌칙이 필요하다.

3. 종자 표시제도의 개선방안

가. 종자의 포장지 표시형식 권장기준 마련

종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률로 정하는 표시는 오직 비료생산 보증표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종자에서 표시의 오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자에 “종자의 포장지 표시형식 권장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나. 종자의 포장지 표식방법

표기문자는 종자의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단, 계량단위를 나타내는 CGS 단위, 유효성분의 일반명 및 수입완제품의 제조회사명은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라벨의 부착은 ① 종자의 표시사항은 용기에 직접 인쇄하거나 라벨에 인쇄하여 용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입완제품은 외국포장지의 원문이 보이지 않도록 한글라벨을 완전히 덧붙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완제품을 분포장 및 개포장 할 때와 원제조국에서 한글 라벨을 인쇄하거나 부착하여 수입한 때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라벨의 구성은 ① 종자의 라벨은 그 제품의 외형을 장식하는 의장부분과 사용량 등을 기재하는 표기부분으로 구분한다. 표기부분의 면적비율은 제한하지 않는다.

라벨의 크기는 ① 종자의 라벨은 앞면과 뒤 면을 잘 조화시켜 활용할 수 있다. ② 라벨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앞.뒷면에 부착할 수 있다.

다. 종자의 포장지 표식 내용

파종적기, 사용적기 등은 ① 적용대상 작물은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에 준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적정사용량 및 사용적기는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적기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기한다. ④ 품목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준하여 표기할 수 있다.

본 라벨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1. 품종의 명칭
2. 시험성적 발행년월일 및 등록번호
3. 종자검사 결과계재
4. 상표명
5. 내용량
6. 원산지
7. 발아율·발아제
8. 권장 사용량(300평)
9. 유효기한
10. 생산(수입)업체명과 소재지 및 전화번호
11. 재배방법(지역별, 시기별)

- 12. 보관방법
- 13. 소비자가격
- 14. 재배상 주의 사항

라. 허위표시 금지 규정 부활 및 강화

종자산업법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144조)이 1999년 삭제된 이후, 수입종자의 표기용량 미달 사례 등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 규정이 없다. 대부분의 종자산업을 외국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불안한데, 수입종자 허위표시조차 제대로 단속할 수 없게 돼 있다.

종자수입·판매업체의 허위표시(용량미달 사례)가 있다. 고가의 수입 양파종자가 용기에 표기된 용량보다 훨씬 적게 담겨진 채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다. 양파종자연구소의 계측으로 재차 확인됐다. 표기용량은 2dl이나 내용물은 1.65dl·1.7dl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농민들이 용량 확인을 거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업체의 부당이득 챙기기라고 농민들은 주장했다.

이에 국립종자관리소가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양파종자 32개 제품을 구입, 계측한 결과 1.84dl로 계측된 모 회사의 제품을 비롯, 9개 제품(5개 업체)이 2%의 오차한도를 초과한 표기용량 미달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용량미달이 확인된 9개의 제품에 대해 종자관리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법조치를 의뢰했다.

마. 불법종자유통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

종자의 보증기간이 지나 발아율이 떨어진 종자를 정식으로 품종등록한 제품의 포장재에 넣고 판매한 경우가 있다. 적발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없고, 적발해도 강력한 제재 조치가 드물고, 경고 또는 1개월 정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불법종자 유통이 근절되지 않은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벼섯종균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활력이 떨어지므로 품종명, 특성, 주의사항, 생산시기, 유효기간 등을 표기해야 하며, 위반하여 공급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일부 종균 배양소가 종균 포장 박스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채 공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 벼섯종균의 상자단위 품질표시 문제

종균의 품질표시는 종자산업법 제143조에서 신고된 품종을 판매할 때는 용기 또는 포장에 ‘유통종균의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종균 품질 표시 내용에는 품종명칭, 발아보증시한, 생산년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종균업체들은 품질 표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시를 하더라도 종균상자에 표시하는데 그칠 뿐 병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상자단위로 표시하는 벚섯 종균의 품질표시를 병 낱개마다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병 종균마다 품질 표시를 반드시 부착해 농가가 신뢰하고 종균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종균의 원균을 어디서 가져와서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사. 판매 일지 정례화

종자 판매상은 판매일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판매 이후 문제발생시 원인 규명이 어렵다. 판매상의 잘못에 의한 것인지, 소비자인 농민에 의한 잘못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판매 일지의 내용은 누가, 언제, 어떤 종자를 얼마나 구입했는지, 판매상이 어떤 면적당 얼마를 파종해야 하는지를 지도하였는지를 기록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아. 판매가격 표시 미이행 벌칙필요

가격 표시는 농업인에게 물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판매업소간 가격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농업인의 합리적인 제품선택을 도와준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판매가격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농민이 공감하고 있으나 종자 판매업자는 이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판매상이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종자에 본체가격과 세입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여도

1. 연구목표

- 주요 농자재의 표시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정리·요약한다.
- 농자재 수요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표시가 소비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표시내용을 개선하고자 한다.
- 일본의 표시제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수요자의 입장에서 표시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평가의 착안점

구 분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착 안 사 항	척 도 (점수)
1차년도 (2006)	○ 농자재 표시규범의 검토 및 운용실태	30
	○ 농자재 표시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	30
	○ 일본의 농자재 표시규범의 검토 및 시사점	10
	○ 농자재 표시규범의 문제점 도출	30
최종평가	○ 농자재 표시제도의 수요자의 문제점 도출	50
	○ 농자재 표시제도 개선방안의 도출	50

3. 평가의 착안점에 근거한 연구 달성도

- 농자재 표시규범의 검토 및 운용실태를 보기 위해 농약은 “농약관리법”, “농약관리법시행령”,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비료는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시행령”,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등을 주로 다루었으며, 종자 부문에도 “종자산업법”,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종자산업법시행령” 등을 정리하였다. 이 중 표시와 관련된 사항은 본문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적으로 “광고법” 등과 이해가 상충되는 내용과 문제는 법률 전문가인 법과대학의 교수에 자문을 구했다.
- 법의 검토 결과를 가지고 수요자인 농가조사를 실시하여 농자재표시에 대한 농민들의 대응 행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했다. 농가조사는 수도작 농가, 과수농가, 원예작물 농가를 대상으로 농자재 표시에 대한 반응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생산측면에서 전문가인 “한국비료공업협회”,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종자협회”의 담당자 조사를 통해 농자재 생산자들의 표시제도에 대한 의견과 이행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일본의 농약과 비료에 대한 표시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단 일본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농약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10년으로 되어 있어 너무 길다 이는 실제로 병해충의 내성으로 3~5년 이상의 사용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종자부문에서는 일본은 ‘생산지 표시’와 ‘종묘에 대한 약제 처리 및 종균에서의 유해 균류의 의무표시’이다. 일본 종묘법에서 ‘생산지’를 품질 표시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종자 생산지에 따라 품질 수준의 차이가 날 수 있고, 종자 사고나 종자 품질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제품 수거 등 조기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지’에 대한 품질표시“ 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농자재 표시규범의 문제점 도출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책을 모색했다. 표시와 광고에 관련된 주요사항의 결정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에 일임되어 있다. 따라서 중요한 표시사항에 대해서 수요자인 농민은 배제되어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표시사항의 결정에 대하여 농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농업인 스스로도 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고는 사용자인 농업인이 표시에 대한 이해력 부족이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농 교육시 농약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어렵게 여기는 전문용어를 설명하여 농가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 농자재에 대한 표시는 수요자인 농가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야 하고, 농약에는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의 강화, 비료와 종자에는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을 제시했다.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이 연구는 주요 농자재 표시제도와 운영방법 등을 정비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의 규제완화로 인해 법에서 삭제되었거나, 완화된 법을 다시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강화 내지 부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농약에는 “농약의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이 있는데 권장기준보다는 의무규정으로 개편하는 방안, 비료와 종자에는 “포장지 표기형식 권장기준” 조차 없어 이를 제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농자재 표시제도의 문제 파악과 수요 농민들의 행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표시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적절한 표시제도의 구상과 정착을 통해 소비자의 적절한 농자재 선택과 보호, 안전성확보, 품질 경쟁을 통한 고품질 농자재 생산 등이 기대된다. 결국 위와 같은 효과를 통해 농업생산성 증대가 가능하고 나아가 농업,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며 생산자들의 농자재 품질경쟁이 건전하게 유발되어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농자재의 표시에 대한 연구로 국한하여 법의 문제를 다루었으나, 향후 농자재의 범위를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등으로 확대하고, 표시·광고에 그치지 않고 영업의 등록, 품목의 등록, 유통, 벌칙 등 농자재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

제 6 장

참 고 문 헌

- 국립농업자재검사소. 1981. 「외국의 농약관리제도 및 개 법령」
- 나카시마 야스히로(강원대학교 출판부). 2005. 「식품안전의 경제학」
- 농림부. 2000. 「농업인의 소비자피해실태 및 효율적인 피해구제방안 연구」
- 농약공업협회. 1999. 「표시·광고 공정화 법령 및 규정·고시」
- 농촌경제연구원. 2005. 「농식품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품표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농촌진흥청. 1996. 「종자산업에 있어서 종자보증제도의 역할과 그 운영방법」
- 농촌진흥청. 2005. 「사이버 농업인의 현장애로해결을 위한 “농식품효능·효과 광고규정 개선” 추진상황」
- 농촌진흥청·종자관리소. 1999. 「종자관리연보」
- 사단법인 농정연구포럼. 1996. 「종자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 일본식물방역협회. 1989. 「식물방역강좌(제2판)」
- 일본식물방역협회. 1990. 「농약개설(개정판)」
- 종자공급소. 1996. 「일본의 종자산업 및 관련제도 연구」
- 한국개발연구원. 1991. 「법경제연구(1)」
- 한국개발연구원. 1995. 「법경제연구(2)」
- 한국경제연구원. 1997. 「법과 경제학」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농산물 표시제도 개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농협 영농자재 사업의 혁신방안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01. 「디지털경제시대의 소비자보호와 법 : 디지털경제법제 4」
- 한국비료공업협회. 2006. 「비료연감」
- 한국소비자보호원. 1988. 「종묘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안」
- 한국작물보호협회. 2006. 「농약연보」

<관련 기관>

국립종자관리소

농촌진흥청

일본 비료암모니아협회(www.jaf.gr.jp)

한국부산물비료협회

한국비료공업협회(<http://fert-kfia.or.kr>)

한국식물환경연구소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

한국작물보호제판매협회

한국작물보호협회

한국종자협회

<관련 법률>

농약관리법(일부개정 2005. 3. 31 법률7459호)

농업기계화촉진법(일부개정 1999. 3. 31 법률5951호)

비료관리법(일부개정 2003. 12. 11 법률7000호)

사료관리법(일부개정 2005. 3. 31 법률7428호)

산업표준화법(일부개정 2005. 3. 31 법률7441호)

상표법(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7290호)

소비자보호법(일부개정 2004. 1. 20 법률7064호)

제조물 책임법(일부개정 2000. 1. 12 법률6109호)

종자산업법(일부개정 2005. 8. 4 법률7678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7315호)

농약단속법(1948년 7월 1일 법률 제82호)

비료단속법(최종 개정 2004년 12월 1일 법률 제 150호)

종묘법(최종 개정 2005년 6월 17일 법률 제59호)

부록 1. 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 관련 내용 발췌)

제6조 (위해의 방지)

- ①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1. 물품 등의 성분·함량·구조 등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 2. 물품 등을 사용할 때의 지시사항이나 경고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 3.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시의 기준)

- ①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1. 상품명·용도·성분·재질·성능·규격·가격·용량·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 2. 물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물품의 원산지
 - 3. 사용방법, 사용·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 4. 제조연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 5.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
 - 6. 물품 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제11조 (광고의 기준)

- ① 국가는 물품등의 잘못된 소비 또는 과도한 소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용도·성분·성능·규격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허가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2.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 또는 특정표현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광고의 매체 또는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16조 (소비자분쟁의 해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제19조 (사업자의 책무)

- ①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 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제공하는 자
 2. 물품에 성명·상호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 ①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자료 및 정보의 사용목적·사용절차 등을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조정을 미리 거쳐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이 아닌 용도 및 사용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9조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 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비자단체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사용목적·사용절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록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5814호 신규제정 1999. 02. 05.

법률 제73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12. 31.

법률 제779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변경)

법률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2006. 09. 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99·7·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시행일 2006.3.30]]
 -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6.3.30]]
3. “사업자”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3.30]]
4. “사업자단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시행일 2006.3.30]]

5.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등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3.30]] [[시행일 99·7·1]]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②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7·1]]

제4조 (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광고)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한다.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흐트러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9.27 제7988호(소비자보호법)] [[시행일 2007.3.27]]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함에 있어서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및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 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들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제4조의2 (중요정보제공협의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1. 중요정보의 발굴·평가에 관한 사항
 - 2. 통합공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제공촉진 등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관계 행정기관에서 표시·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 2.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 3. 소비자정보의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3.30]]

제5조 (표시·광고내용의 실증 등)

-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사업자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비치하여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여 그 공개가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3.30]][[시행일 99·7·1]]

제6조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2.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규약 등의 변경
 3.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일 99·7·1]]

제7조 (시정조치)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행일 2006.3.30]]
 - 3. 정정광고
 - 4. 기타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시행일 99·7·1]]

제8조 (임시중지명령)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당해 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표시·광고행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것
 - 2. 당해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 ② 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행위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표시·광고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시행일 99·7·1]]

제9조 (과징금)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시행일 2006.3.30]]
 -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시행일 2006.3.30]]
- ④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99·7·1]]

제3장 손해배상

제10조 (손해배상책임)

-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시행일 99·7·1]]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시행일 99·7·1]]

제4장 보칙

제12조 (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99·7·1]]

제13조 (표시·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 등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제14조 (표시·광고의 자율규약)

- ① 사업자들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 ② 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3.30]]
- ③ 사업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3.30]][[시행일 99·7·1]]

제14조의2 (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 ① 사업자등의 표시·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을 심의(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표시·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대상을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행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피해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등(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위임 받은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를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3.30]]

제15조 (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99·7·1]]

제1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53조의2·제54조·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을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신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 및 시정권고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내지 제55조의7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과징금납부 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고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본조제목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제5장 벌칙

제1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9·7·1]]

제18조 (벌칙)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99·7·1]]

제19조 (양벌규정) 법인(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99·7·1]]

제20조 (과태료)

① 사업자들이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1.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3.30]]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3.30]]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3.30]]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6.3.30]]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시행일 2006.3.30]]

8.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 2006.3.30]]
- ②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99·7·1]]

부록 3.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1962년 5월 15일 법률 제134호)

개정 1972년 5월 30일 법률 제44호

1989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2000년 5월 19일 법률 제76호

2003년 5월 23일 법률 제45호

2005년 4월 27일 법률 제35호

(목 적)

제 1 조 이 법률은 상품 및 역무의 거래에 관련된 부당한 경품류 및 표시에 의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1947년 법률 제54호)의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 의)

제 2 조 이 법률에서 「경품류」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방법이 직접적·간접적인 지를 묻지 않고, 추첨의 방법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고,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상품 또는 무역 거래 (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 부수되고, 상대방에 제공한 물품·금전 그 밖의 경제상의 이익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표시」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상품 또는 무역의 내용 및 거래 조건, 또는 그 밖에 이러한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행한 광고 및 그 밖의 표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경품류의 제한 및 금지)

제 3 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경품류의 가액의 최고액 또는 총액, 종류 또는 제공의 방법 및 그 밖에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경품류의 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

(부당한 표시의 금지)

제 4 조 사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상품 또는 무역의 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언급한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 ① 상품 또는 무역의 품질, 규격 및 그 밖의 내용에 관해 일반 소비자에 대하여 실제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다라고 나타내거나, 또는 사실과 달리 해당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의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다라고 나타내는 것에 의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표시
- ② 상품 또는 무역의 가격 외의 거래 조건에 있어서, 실제의 것 또는 해당 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것보다도 거래가 상대방에 현저하게 유리하다면 일반 소비자가 오인하기 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표시
- ③ 전 2 호에 언급한 것 외에 상품 또는 무역의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 소비자에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것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표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표시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표시의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제 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 해당 표시는 동호에 해당하는 표시로 간주한다.

(공청회 및 고시)

제 5 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2 조 또는 전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를 하고, 또는 이러한 변경 또는 폐지를 하려고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사항에 의하여 공청회를 열고 관계 사업자 및 일반적인 의견을 구한다.

2 전항에 규정한 지정 및 제한 및 금지 및 이러한 변경 및 폐지는 고시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배제 명령)

제 6 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 또는 제 4 조 2 군 1 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러한 실시와 관련된 공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그 명령(이하 「배제 명령」이라고 한다.)은 해당 위반 행위가 이미 없어진 경우에도 할 수 있다.

2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법률 제8조의 2, 제20조, 제 25조, 제26조 및 제8장 제2절(제46조, 제 49조 제3항으로부터 제5항까지, 제 50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제2항, 제5항 및 제6항, 제59조 제2항, 제65조, 제67조, 제69조 제3항, 제70조의 2 제4항, 제70조의 9로부터 제70조의 11까지 및 제70조의 12 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전항에 규정한 위반 행위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서 위반행위(사업자 단체가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키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의 불공정거래 방법에 해당하는 행위)와 배제 명령은 배제 조치 명령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동법 제49조 제1항 중 「배제 조치 명령서」라고 있는 것은 「배제 명령서」라고, 「위반 행위를 배제하거나 위반 행위가 배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있는 것은 「그 행위의 금지 또는 그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이러한 실시와 관련된 공시 이 외의 필요한 사항」라고, 동조 제2항 중 「배제 조치 명령서」라고 있는 것은 「배제 명령서」라고, 동조 제 6항 중 「배제 조치 명령서」라고 있는 것은 「배제 명령서」라고, 동법 제70조의 15 중 「배제 조치 명령서」라고 있는 것은 「배제 명령서」라고, 동법 제70조의 21 중 「제 3장」라고 있는 것은 「제 3장(제13조 제1항 및 제 3 절을 제외한다.)」라고 한다.

3 배제 명령은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제90조 제3호, 제92조, 제9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95조의 2 및 제 95조의 3(각각 동법 제90조 제3호에 관계된 부분에 한한다.)및 제 97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배제 조치 명령으로 간주한다.

(행정구역 지사의 지시)

제7조 행정구역 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 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취소 또는 그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이의 실시와 관련된 공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그 지시는 해당 위반 행위가 이미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조치 청구)

제8조 행정구역 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그 밖에 동조에 규정한 위반 행위를 취소하게 하거나 동조에 규정한 위반 행위가 다

시 한번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위반 행위에 관하여 강구한 조치를 해당 행정구역 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고의 징수 및 출입 검사 등)

제9조 행정구역 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행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해당 사업자 또는 그 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관계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품류 또는 표시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해당 사업자 또는 그 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소 또는 그 밖에 그 사업을 행한 장소 출입, 장부 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시키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한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기술적인 조언 및 권고 및 자료의 제출의 요구)

제10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구역 지사에 대하여 전 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 지사가 처리한 사무의 운영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한 기술적인 조언 또는 권고를 하거나 또는 해당 조언 또는 권고를 하기 위해, 또는 해당 행정구역 지사의 사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행정구역 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전 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 지사가 처리한 사무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하여 기술적인 조언 또는 권고, 또는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의 요구)

제11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 7조로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구역 지사가 행한 사무의 처리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현저하게 적정 수준을 벗어나거나, 또한 분명히 공익을 해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행정구역 지사에 대하여 해당 행정구역 지사의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반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 두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구한 것을 할 수 있다.

2 행정구역 지사는 ,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는, 해당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반의 시정과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정경쟁 규약)

제12조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점에 의해 경품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협정 또는 규약을 체결하거나 설정할 수 있다.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동일하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의 협정 또는 규약(이하 「공정경쟁 규약」라고 한다.)이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면 전항의 인정을 해서는 안된다.

- ①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것.
- ② 일반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없는 것.
- ③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않은 것.
- ④ 공정경쟁 규약에 참가하거나 또는 공정경쟁 규약으로부터 탈퇴한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것.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인정을 받은 공정경쟁 규약이 전항 각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인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사항에 의하여 고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제8조의 2 제2항 및 제20조 제2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 8조의 2 제1항 및 제3항, 제20조 제 1항, 제 70조의 13 제1항 및 제7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정을 받은 공정경쟁 규약 및 이것에 근거하여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불복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판절차를 거쳐 심결로써 해당 신고를 각하하거나 또는 해당 처부능 취소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행정불복심사법의 적용 제외 등)

제13조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처분에 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1962년 법률 제 160호)에 의한 불복 신고를 할 수 없다.

2 전조 제6항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송은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벌 칙)

제14조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제62조에 있어서 준용한 형사 소송법(1948년 법률 제 131호) 제154조 또는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참고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할 때는 3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심판절차 종료 전이거나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할 때는 그 형을 경감하고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 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처분에 위반하여 출두하지 않고, 진술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②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에 대한 처분에 위반하여 출두하지 않거나, 감정을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감정을 한 자
- ③ 제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 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건의 소지자에 대한 처분에 위반하여 물건을 제출하지 않는 자.

④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2항 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하여 방해하고 또는 기피한 자.

제16조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제62조에서 준용한 형사 소송법 제154조 또는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명령에 위반하여 선서를 하지 않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8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2 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단체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위반 행위를 할 때는 행위자 외에 그 단체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3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대해 그 단체를 대표하지만, 한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형사 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하고 3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차항의 규정은 공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또는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계된 공청회는 이 법률의 시행의 일 전에 있어서도 행한 것을 할 수 있다.

3 사적독점의금지및공정거래의확보에관한법률 법률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과」 생략)

부 칙(1972년 법률 44호)(제1차 개정)

이 법률은 197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년 법률 제 89호)초

제1조 이 법률은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 88호)의 시행의 날(해) [1994년 10월 1일] 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년 법률 제 87호)초

이 법률은 지방 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의 날(해) [2000년 4월 1일] 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년 법률 제 76호)초

이 법률은 2001년 1월 6일부터 기산하고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0년 정령 제 512호에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 (후략)

부 칙(2003년 법률 제 45호)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하고 1월을 경과한 날 [2003년 6월 23일] 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의 개정 규정, 제5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및 제6조 제1항의 개정 규정 및 제9조의 2의 개정 규정(「제 4조」를 「제 4조 제1항」으로 고치는 부분에 한한다.) 및 다음조의 규정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하고 6월을 경과한 날 [2003년 11월 23일] 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2조 이 법률에 의한 개정후의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이하 「신법」라고 한다.) 제4조의 규정은 전조 단서에 규정한 시행후에 하는 표시에 관하여 적용하며 동조 단서에 규정한 규정의 시행전에 한 표시에 관해서도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신법 제6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배제 명령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법률의 시행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배제 명령에 관해서는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신법 제9조의 2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전에 이미 없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령에게의 위임)

제5조 부칙 제2조로부터 전조까지 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서도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2005년 법률 제 35호)초

(시행 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 [2006년 1월 4일] 로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언급한 규정은 해당 각호에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후략]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의 일부 개정)

제21조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음과」 생략)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한 경과조치)

제22조 시행일 전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위반 행위에 관하여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 88호)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구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개시결정서의 등본의 송달이 있던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 행위에 관계된 배제 명령의 절차 및 심판절차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후의 부당경품류 및부당표시방지법 및 신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종전의 예에 의한다.